

# 언론중재

Autumn 2016



vol. 140

**Focus On Media** 루머 탐하는 사회, 짜라시 권하는 SNS

-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본 루머와 가십의 탄생과 확산
- 루머가 SNS를 만나면 뉴스가 된다? – 루머 확산매체로서 SNS와 저널리즘
- 소셜미디어 루머로 인한 피해의 구제와 법적 쟁점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모두가 아는 검색, 아무도 모르는 검색 알고리즘

**정기세미나** 사이버공론장에서의 혐오와 모욕표현 이대로 관참은가?





인쇄 2016년 9월 27일  
발행 2016년 9월 30일  
등록 1981년 10월 14일  
등록번호 서울중.바 00002  
발행인 박용상  
편집인 권우동  
발행 언론중재위원회 (www.pac.or.kr)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화 02-397-3114

디자인 · 인쇄 ㈜희망공작소  
편집위원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이수영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최진순 한국경제신문 기자 /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 본지는 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 \* 이 책에 게재된 원고의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수록된 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언론중재

Autumn 2016 | vol.140



# contents

---

## 06 Focus on Media

루머 탐하는 사회, 짜라시 원하는 SNS

1.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본 루머의 탄생과 확산 – 주목 경쟁, 셀러브리티화, 가십의 창궐 | 전상진
2. 루머가 SNS를 만나면 뉴스가 된다? – 루머 확산매체로서 SNS와 저널리즘 | 홍주현
3. 소셜 미디어 루머로 인한 피해의 구제와 법적쟁점 | 정완

## 40 칼럼

기자를 위한 변명 | 한기봉

## 44 정기세미나 발제문 – 사이버공론장에서의 혐오와 모욕표현 이대로 괜찮은가?

세션1 :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법적 쟁점과 규제 방안 | 홍성수

세션2 : 판례로 본 인터넷 공간에서의 모욕과 의견표현 자유의 한계 | 오선희

## 78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이야기

모두가 아는 검색, 아무도 모르는 검색 알고리즘 | 강정수 · 김수철

- 검색서비스 중립성을 둘러싼 이론과 논점



88 Culture & Legal Mind

미르소를 위한 변론 | 임제혁

92 판례토크

고소당한 유명인사 관련 보도와 언론사의 명예훼손 책임 | 한위수

98 해외통신원

느리지만 꾸준히 진화하고 있는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 문혜정



#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본 루머와 가십의 탄생과 확산

– 주목 경쟁, 셀러브리티화, 가십의 창궐

—

전상진 ·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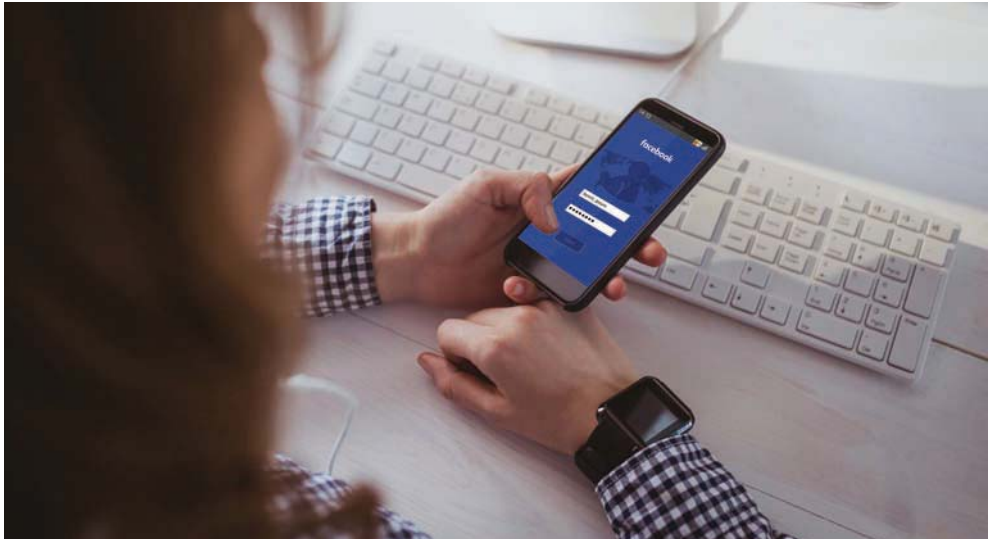
## 1. 왜 가십이 문제인가?

대체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민주공화국의 시민은 정부의 발표와 전문가의 판단, 사법부의 판결과 언론의 뉴스를 통해 사건, 사고, 스캔들에 대해 믿을만한 정보를 얻고 그에 기초해 서로 소통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권이 제공하는 발표와 판단, 판결과 뉴스를 믿을 수 없을 때, 그래서 생기는 정보의 공백으로 위협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불안과 공포가 커질 때, 우리는 소문과 가십 그리고 음모론에 의지한다. 그렇다. 우리는 소문과 가십과 『음모론의 시대』<sup>1)</sup>를 살고 있다.

필자는 여기서 가십에 집중할 것이다. 불신과 공포가 추가 되는 소문이나 음모론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가십은 최근 세 가지 변화를 겪었다. 첫째, 유포 경로가 확장되었다. 뒷담화는 면대면 대화보다 다양한 미디어(인터넷, SNS, 대중매체)를 통해 확산된다. 둘째, 표현 양식이 변화했다. 부정적 가십은 그 인물에 대한 나쁜 평판을 만들기에 주변 사람들로 부터 따돌림을 유발할 수 있다. 현대적 가십은 나름의 따돌림의 양식을 발전시켰다. 셋째, 대상이 확대되었다. 예전의 가십은 참여자들의 지인이나 누구나 아는 공적 인물을 먹이로 삼았다. 하지만 오늘날 가십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앞의 두 가지 변화도 중요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마지막 변화다. 공적 인물과 셀러브리티(이하 '셀럽')는 물론이고 일면식도 없는 일반인의 '더러운' 사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그에 분노하고 모욕주기(shaming)와 집단 괴롭힘을 서슴지 않게 된 사회적 이유는 무엇인가?

1) 전상진 (2014). <음모론의 시대>. 문학과지성사.



가십 대상이 무차별적으로 확대된 까닭을 기술결정론(미디어의 발달)이나 도덕의 쇠락(사악한 인간의 증가)에서 찾는 것은 게으른 진단이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선 가십과 소문의 정의를 살피고, 가십의 유통 경로와 표현의 변화 양상을 스케치한다. 가십이 대상을 가리지 않게 된 것은 무엇보다 '주목을 둘러싼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생존에 필요한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남의 주목이 필요한데, 넘치는 정보와 자극은 주목을 희소재로 만든다. 셀럽은 전문적으로 주목받는 능력을 함양하고 관리하는 집단이다. 공적 인물은 물론이고 일반인도 셀럽을 좇아야 한다. 즉 셀럽화가 대세이며, 셀럽은 단일 집단이 아니다. 속성과 위치에 따라 상이한 부류로 나뉘며, 각 부류마다 주목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 일반인은 비용이 적고 효과적인 온라인 자기연출을 선호한다. 다양한 온라인 자기연출법은 '사생활을 내주고 주목을 얻는 것'으로 수렴된다.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생활을 자발적으로 노출한 적은 없었다. 사생활 노출이 많아질수록, 즉 사생활이 공공화될수록 가십은 창궐한다.

## 2. 소문과 가십

소문이나 가십과 같은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합의된 개념 정의가 없다는 점이다. 연구자마다 나름의 정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시도하는 개념 정의 역시 임시방편일 뿐이다. 소문과 가십은 정부나 사법부 또는 언론과 같은 공식 제도가

제공하는 정보(공식적 커뮤니케이션)와 다르다. 그것들은 비공식적인 소식이다. 비공식적이란 정보의 원천과 채널이 공식적 제도의 외부에 있으며,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말하자면 소문과 가십은 공식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제도 바깥에서 떠도는 정보다.

소문과 가십은 내용 및 기능에서 다르다. 소문은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유용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떠돌아다니는 정보”, 가십은 대화 참여자들이 모두 아는 “개인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사교적 이야기”를 뜻한다.<sup>2)</sup> 그러니까 가십은 특정인의 사생활을 평가하는 ‘뒷담화’, 소문은 수단적 가치를 지닌 정보다. 모호하거나 위협이 되는 사건 또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정보의 공식적 채널이 막혀 답답한 사람들에게 소문은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더 정확히 말해서 소문은 모호한 상황을 인식하고 위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컨대 최근 부산 인근에서 발생했던 극심한 악취와 관련해 많은 소문, 이를테면 천재지변의 전조라는 소문이 돌았다. 악취의 원인에 대한 공식적 설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류로 판명되었지만 그 소문은 모호한 상황의 이유를 밝혀주었고 곧 있을지 모를 천재지변을 대비할 수 있게(적어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왔다. 익히 알려진 소문의 발생 공식은 두 기능의 결합이다. ‘Rumor = i(importance) × a(ambiguity)’, 즉 ‘사안의 중요성’과 ‘상황의 모호성’이 결합될 때 소문이 발생한다. 위협의 관리에 사안의 중요성(i), 모호한 상황 인식은 상황의 모호성(a)을 지칭한다.

가십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다. “재미, 사회적 정보 제공, 집단의 멤버십·집단의 권력 구조 및 집단의 규범을 수립하고 변화시키고 유지”하는 것이다.<sup>3)</sup> 가십은 재미를 주거나, 원활한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속된 집단의 규범을 강화하여 그 집단의 결속력을 다진다. 가십은 대화 참여자들이 모두 아는(사회적으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특정인의 사생활을 주 대상으로 삼는다. 그의 바르지 못한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재미를 얻고, 좋은 사회적 평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을 확인시키며, 일탈자에게 모욕을 줌으로써 그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가십과 소문의 차이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안의 속성이나 중요성에서 다르다. 가십은 개인의 사생활을 겨냥하고, 소문은 더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른다. 물론 특정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소문이 생길 수도 있다. 특정인이 “개나 소”와 같은 보통 사람 따위가 아닐 경우에 그렇다. 공적으로 중요한 사람의 사생활만이 공적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사람의 난잡한 사생활은 전형적인 가십거리다. 하지만 그가 조직 임원이며, 그의 상대가 같은

2) Nicholas Difonzo & Prashant Bordia (2007). *Rumor psychology : social and oranzizational approaches*. 신영환 (역) (2008). <루머심리학>. 한국산업훈련연구소. p.24,34.

3) 앞의 Nicholas Difonzo & Prashant Bordia (2007). 신영환(역) (2008). <루머심리학> p.26.

조직의 사람이고, 그로 인해 인사고과의 원칙이 훼손된다면 그것은 가십인 동시에 소문이 된다. 둘째, 소문과 가십은 확산 범위에서 다르다. 특정 개인의 사생활을 주로 겨냥하는 가십은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지인의 범위를 넘어서기 힘들지만, 소문은 더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기에 그 확산 범위가 넓다.

### 3. 가십의 복권

앞의 논의를 고려하면 가십은 소문의 하위 장르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다. 예를 들어 악셀 겔페르트(Axel Gelfert)는 “가십의 복권”을 주장한다.<sup>4)</sup>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집단 역학(dynamics)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십 참여는 소속원만 할 수 있다(집단 소속과 경계를 설정). 집단 내외부의 권력 관계와 연결된 ‘구별짓기’의 측면에서 가십은 “사회적 접착제(가십 교환으로 일체감 강화)”의 역할을, 때로는 특권과 차별을 정당화한다(외부자에 대한 험담으로 내부자들의 품격을 고양).

두 번째 이유는 여성의 지위 강화와 관련된다. 가십이라는 말에 여성 차별이 내장되어 있다. 남성은 과묵하며 신중하게 필요한 얘기만을 하지만, 여성은 수다스럽고 가볍게 불필요한 남의 사생활이나 들추는 가십을 좋아한다.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 가십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여 복권하는 일은 여성 차별에 저항하는 것과 같다.

마지막 이유는 가십의 비판적 잠재력이다. 가십은 위선에 도전한다. 공적 활동과 사생활, 연출된 이미지와 실제 행동의 불일치와 같은 위선을 폭로하고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가십은 결국 공적 영역에 대한 ‘정보의 자유’를 사적 영역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요구다. 특히 권력자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비판적 기능을 수행한다.

가십을 복권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가십의 유통 경로가 획기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관점은 가십이 보통 지인 사이나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달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터넷과 개인용 커뮤니케이션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가십의 성격이 획기적으로 변했다. 이메일, 메신저, 문자, SNS 등을 통해 생산, 유포, 소비되는 e-gossip(이하 ‘e-가십’)은 범위와 지속성, 익명성면에서 전통적 가십과 질적으로 다르다. 예전의 가십은 특정할 시점과 지역의 범위를 넘어서기 힘들고, 좁은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교환되기에 발설자가 폭로되기 십상(예컨대 대질 신문)이지만, e-가십의 확산 범위는 이론적으로 전 세계를 아우르며 영원

4) Gelfert, Axel. (2014). *A critical introduction to testimony*. A&C Black. p. 203. 이하 내용은 pp. 203-205.

히 지속될 수 있고 익명성의 보호 장치가 단단하다. 수년 전 한국에서 있었던 이른바 ‘개똥녀’ 사건은 전 세계 네티즌의 ‘즐거운 조롱거리’(당사자에게는 잔혹한 처벌)가 되었으며, 인터넷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다니엘 솔로브가 인용한 댓글은 이를 통렬히 표현한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인터넷은 잔인한 역사이다.”<sup>5)</sup>

더불어 가십이 교환되는 세상의 특성에 기인한 익명성이 가십 생산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커졌다. ‘사이버 불링’ 혹은 ‘사이버 왕따’가 그것이다.<sup>6)</sup> “이메일, 휴대전화, SNS 등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해 악성 가십(댓글이나 굴욕스러운 사진)을 전파하여 개인을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하는 사이버 불링은 직접 만나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의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확산이 빠르며, 가해자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처벌조차 어렵다”는 점에서 과거의 집단 따돌림과 차이가 있다. 요컨대 일반적인 집단 괴롭힘과 달리 사이버 불링은 “익명성, 상시성, 신속성, 확산성, 시각적 충격”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e-가십과 사이버 불링의 등장으로 가십이 새로운 단계에 도달한 것은 분명하다. 다만 그것만으로 가십 대상이 무차별하게 확대된 현실을 이해할 수는 없다. 오늘날 우리는 지인, 공적 인물, 셀럽은 물론이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관심을 가지기 힘든 일반인의 사생활을 뒷담화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대상의 무차별한 확대는 사회 전체적인 변화와 관계있다. 주목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 4. 주목 경쟁과 셀럽

한때 우리는 권력(국가나 기업)의 감시를 두려워했다. 절대 권력은 개인에게 한 톨의 자유나 한 치의 자율도 허락지 않았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서 알 수 있듯이 감시사회는 현재 진행 중인 디스토피아다. 그러나 알겠게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5) Daniel Solove. (2007). *The Future of Reputation*. 이승훈 (역) (2008). <인터넷 세상과 평판의 미래>. 비즈니스맵. p. 27.

6) 조희정 (2012). 사이버 불링의 현황과 과제. <KISO 저널>, 9호. URL: <http://journal.kiso.or.kr/?p=60>

않는 현실이다. 관심의 욕망이 감시에 대한 두려움을 압도하면서, 현재적 디스토피아는 'big brother is watching you'가 아니라, 'nobody is watching you'가 되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와 자극이 넘치는 시기에는 타인의 주목과 관심을 끄는 것이 문제가 된다. 아무도 나를 보아주지 않는 상황, 내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는 상황이 두렵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타인의 주목을 끌어야 한다. 불현듯 주목이 중요해진 것은 당연히 아니다. 주목은 생존에 필수적 요소다.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 환경을 관찰하는 것, 이것은 모든 동물이 생존을 위해 지녀야만 하는 성질이자 감각이며 자원이다. 다른 한편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자의식과 정체성은 주변 사람들이 그의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생성된다. 인정을 받기 위한 투쟁, 곧 "인정투쟁"<sup>7)</sup>에서 주목은 최우선 과제다.

주목과 관심은 인정의 필요조건이다. 누군가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존재에 주목해야 한다. 존재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 그 존재에 주목할 때 비로소 인정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 주목받으려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신분과 권력과 부를 과시함으로써 주목을 끄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효과적이다. 최근에 나타난 변화라 하면 과시 수단이 조금 달라졌다는 정도다. 가령 고가의 소비재(자동차나 시계나 가방), 학력(학교 로고가 선명한 야구잠바), 또는 과감한 노출이 과거보다 빈번해졌다.

호주머니 사정을 무시하고 고가 사치품을 왜 욕망할까. 고등학교 시절 교복에 진저리를 치던 대학생들은 왜 교복 같은 야구잠바를 걸칠까. 하의가 실종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타인의 주목과 관심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비록 고가의 가방이 '3초 백(bag)', 즉 도심에서 3초에 한 번은 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한 가방일망정, 아니 바로 그 때문에 나도 그 정도는 들어줘야 한다. 주목을 받을 수 있다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어떤 존재로나마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허버트 A. 사이먼이 30년 전에 예견한 바처럼 "주목의 희소성에 매우 예민해진 사회"<sup>8)</sup>가 도래했다. 매체는 발전과 확대를 거듭하지만, 주목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이다. 대중매체와 인터넷, 휴대폰이 엄청난 양의 정보와 자극을 쏟아 내면서, 주목할 수 있는 능력에 과부하가 걸렸다. '주의력 결핍장애'가 증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주목받기란 어려운 과업이다. 특히 "매체의 주목을 둘러싼 투쟁"<sup>9)</sup>이 치열해지면서 주목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예전의 방식으로 남의 주목을 끌기는 어렵다. 모든 주목의 값이 같지도 않다. 매체를 경유한 주목, '공적인 주목'이 가장 '핫'하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우리는 대중

7) Axel Honneth. (1992). *Kampf um Anerkennung*. 문성훈, 이현재(역) (2011). <인정투쟁 :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사월의책.

8) Herbert A. Simon. (1983). *Reason in human affairs*. Stanford University Press. p. 94.

9) Georg Franck. (1998). *Ökonomie der Aufmerksamkeit, Ein Entwurf*. Hanser. p. 52.

매체를 통해서”<sup>10)</sup>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매체의 주목을 끄는 사건만이 현실 구성에 참여한다. 달리 말해서 현실은 대중매체의 주목을 끄는 사건만으로 구성된다. 대중매체는 그래서 ‘집합적 주목의 기관’이다. 모든 행위자, 즉 개인, 단체, 조직은 대중매체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매력을 가꾸고 그것을 일정 기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대중매체의 주목 기제에 맞춰 스스로를 가꾸어야만 한다.

가장 성공적으로 대중매체의 주목을 끄는 집단은 셀럽이다.<sup>11)</sup> 가장 노골적이지만(또는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은 선정적 노출이다. 몸이건 사생활이건 화끈하게 노출하면 대중매체가 주목한다. 선정적 노출은 불편하다. 약 3년 전에 소설가 공지영은 다음과 같은 트윗을 날렸다. “솔직히 여자 연예인들의 경쟁적 노출, 성형 등을 보고 있으면 여자들의 구직난이 바로 떠오른다. 먹고 살 길이 정말 없는 듯하다. 이제는 연예인뿐 아니라 TV나 매체에 나오는 모든 여성들도 그 경쟁 대열에...” 여기에 당시 몸에 붙는 의상을 입고 시구를 하여 주목받았던 연기자 클라라는 멘션을 달았다. “뜨끔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게 관심은 직장인 월급과 같고, 무관심은 퇴직을 의미해요. 하지만 월급이 삶의 목표가 아니듯, 제 목표도 관심이 아니고 훌륭한 연기가 되는 것.” 영리한 이 멘션에 셀럽이 주목 투쟁의 선봉대인 이유가 담겨있다. 주목을 받아야 비로소 경기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 5. 공적 인물과 일반인의 셀럽화

셀럽이 구사하는 선진적인 주목의 기제가 각광받고 있다. 미디어 사회에서 주목을 끌어야 하는 것은 클라라와 같은 셀럽만의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목을 관리하는 기제, 즉 주목을 끌 만한 매력을 만들고 획득한 주목을 고착하는 기제는 애초의 발상지인 엔터테인먼트의 경계를 깨고 나와 다른 체계(경제, 정치, 과학)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경제인은 소비자·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정치인은 지지자를 동원하기 위해, 과학자는 펀딩을 받기 위해 주목의 기제를 능동적으로 채용한다. “주목은 미디어 사회의 사회적 조절 기제가 되었다. 말하자면, 주목 관리의 기제는 거의 모든 사회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sup>12)</sup> 경제인과 정치인과 과학자의 롤 모델은 더 이상 자기 분야의 존경받는 동료가 아니다. 우리 시대의 미디어 영웅,

10) Niklas Luhmann. (2004). *Die Realität der Massenmedien* (3rd ed). VS Verlag. p. 9.

11) 셀럽이 관장하는 주목의 기예(技藝)를 여기서 소개할 수는 없다. 몰락하거나 성공한 셀럽(스타가 더 정확한 말이겠다)의 그것을 소개한 것은 있지만 본격 연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12) Kristina Nolte. (2005). *Der Kampf um Aufmerksamkeit. Wie Medien, Wirtschaft und Politik um eine knappe Ressource ringen*. Campus Verlag. p. 13.

즉 셀럽이 본보기다.

다양한 사회 영역과 체계에서 주목을 생성, 조직, 관리하는 방식이 셀럽의 그것을 닮아가는 과정, 이를 사회학자들은 “셀럽화(celebrification)”<sup>13)</sup>라 부른다. 셀럽처럼 주목받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을 상품화하고 표현하고 연출해야 한다. 그것은 모든 삶의 영역을 시장으로 만들려는 네오리버럴리즘 문화가 개인에게 강요하는 정언명령이다. 우리는 노동시장, 결혼시장, 연애시장, 친구시장에서 팔리는 상품이므로 소비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 표현하고 연출해야만 한다.

삶의 셀럽화가 진행되면서 사생활의 위치가 모해진다. 정치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도 미디어의 주목이라는 “월급”이 필요하다.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정치인은 정치적 주장의 논리와 탁월한 정책, 그리고 뚜렷한 미래의 비전으로 매체와 시민의 주목을 끌어야 한다. 그러나 누가 그런 따분한 것에 눈길을 주겠는가. 매력과 이미지, 사생활이 먼저다. 예컨대 빌 클린턴은 대선을 앞두고 심야 토크쇼에서 색소폰 실력을 자랑했다. 대선광고에서 노무현 후보는 기타를 치면서 눈물을 보였고, 이명박 후보자는 국밥집 할매에게 욕을 들어가며 국밥을 먹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사생활로 설득한다(“저도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 논리적 주장,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 가능한 미래 비전 따위는 부차적이다. 개인적인 매력과 이미지와 사생활 말고 “뿔이 중헌디. 뿔이 중하냐고.”

자신을 셀럽화하면 사생활을 지키기 힘들게 된다. 외국의 경우 대통령이나 수상의 이혼에 대중매체가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관음증이라는 지적도 있다. 잘못된 비판이다. 오늘날 정치인은 모두 자신의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지를 과시하며, 배우자의 매력마저 선거전에 활용한다. 미셸 오바마나 도널드 트럼프의 부인을 보라. 경쟁을 위해 사생활을 사용했다면 비용을 치러야 한다. 지지를 얻기 위해 배우자와 함께 무대에 섰다면, 이혼은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정치적 사건이 된다.

정치인과 같은 엘리트만 주목 경쟁에 내던져진 것은 아니다. 일반인도 사정은 매한가지다. 취업 과정을 생각해 보자. 서류심사든 면접이든 짧은 시간동안 자신의 상품가치를 ‘그럴듯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삶의 다른 영역, 예를 들어 사랑, 결혼, 우정과 같은 친밀성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반인도 셀럽의 전범을 따라 주목받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주목이 희소해진 세계에서 셀럽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명령이다.

13) Olivier Driessens (2013). The Celebritization of Society and Culture: Understanding the Structural Dynamics of Celebrity 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 16(6). p. 642.

## 6. 셀럽의 유형

셀럽은 단일한 집단이 아니다. 거기에도 금수저와 흙수저가 있고, 노력과 재능을 통해 성공한 자들과 엔터테인먼트나 대중매체에 의해 산업적으로 생산된 부류가 있다. 셀럽의 유형은 대략 세 가지로 구분한다.<sup>14)</sup> 첫째, “귀속적(ascribed) 셀럽”이다. 부모(가족)가 유명하기 때문에 대중매체와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사람들이다. 둘째, 셀럽의 지위를 “성취(achieved)”한 자들이다. 자신의 능력(육체적 매력 포함)이나 성취를 통해 유명해진, 일종의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다. 셋째, 지위가 “부여된(attributed) 셀럽” 또는 미디어가 제작한 셀럽이다. 그들은 신분, 능력, 성취의 모든 면에서 특수하지 않지만 유명해진 사람들이다. 그들을 “셀러토이드(celetoid)”라 부른다. “특별한 재능은 없지만 미디어의 주목을 받으면서 또는 미디어에 집중적으로 노출되면서 반짝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란 뜻의 셀러토이드는 20세기 말 이후부터 대량 생산되었다.

일종의 보급형 셀럽이라 할 수 있는 셀러토이드는 리얼리티 TV 프로그램과 오디션 쇼의 특산품이다. 리얼리티 TV의 효시인 <빅브러더>는 일반인이 셀럽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폐쇄된 공간에서 일반 출연자들이 모여 생활하고, 이것이 시청자들에게 ‘리얼’하게(편집)중계되고, 매회마다 출연자들이 탈락자를 복수로 지명한 다음 시청자들이 최종 탈락자를 선택한다. 생존의 관건은 어떤 달란트(타고난 재능)가 아니다. 오로지 시청자의 동정, 연민, 공감이다.

주목받는 재능에서 세 가지 셀럽은 차이를 보인다. 성취 셀럽은 능력과 성취, 귀속 셀럽은 가족(사회 자본), 셀러토이드는 다음의 두 가지 재능(이것도 재능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이다. 첫째 평범함이다. 그들은 평범하다. 대중이 평범함에 매료되는 까닭은 ‘상상의 현



실화’와 ‘친밀함의 효과’ 때문이다. “나처럼 재능이 없는 사람도 유명해질 수 있어.”, “나에게도 희망은 있다구.”, 또는 “나와 비슷한 저 친구를 지지할 거야.”와 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다. 둘째 “선정주의(sensationalism)”다. 미디어 산업의 전문가들이 “뉴스가치가 있는 사건이나

14) Chris Rojek. (2001). *Celebrity*. Reaction Books. p. 17.

인물을 마련하여(arrange)” 공적 관심을 생산하는 방법이다. 가슴 시린 가정사는 동정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관심만 받을 수 있다면 치부의 노출도 감수한다. 사생활의 노출과 치욕은 단지 주목 경쟁의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 감내해야 할 손실일 뿐이다.

사생활 노출은 모든 셀럽이 “월급”받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노동일지도 모른다. 셀러토이드는 말할 것도 없고, 귀속 셀럽이나 성취 셀럽도 그 노동을 수행해야 한다. 전자는 부모와의 행복했던 또는 잔혹했던 기억이나 모습을 노출하고, 후자는 친근하고 인간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사생활을 판다. 세 부류의 셀럽 모두 사생활의 상품화 가능성을 이용한다. 하지만 사생활 노출의 위상은 크게 다르다. 성취 셀럽에게 사생활은 자신의 달란트를 돋보이게 만드는 보완재인 반면, 귀속 셀럽과 셀러토이드에게 그것은 거의 유일한 달란트다. 특히 셀러토이드는 사생활에 결정적으로 취약하다. 본인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사생활을 선정적으로 노출해야만 한다.

셀러토이드와 일반인의 차이는 작으면서도 크다. 달란트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미디어 산업의 주목 여부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 사생활의 선정적 노출(에서 비롯한 공적 치욕)을 감당해 낼 배경이나 담력의 차이도 작용할 것이다. 또한 운도 한 몫을 할 것이다. 그렇다고 아직 좌절할 필요는 없다. 공적 관심을 원하는 일반인에게 온라인이나 소셜 미디어는 기회의 땅이기 때문이다.

## 7. 온라인에서의 자기연출

주목받고 싶은, 아니 받아야만 하는 일반인에게 개방된 유일한 미디어는 온라인, 더 정확하게는 소셜 미디어다. 유튜브 스타, 즉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스타가 되거나 셀렘그램(celebgram), 곧 인스타그램에서 자작(自作) 셀러브리티(DIY celebrity in instagram)가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소셜 미디어는 진입 장벽도 낮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연출할 수 있는 장소다. 미니홈피,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야말로 자기연출(자기표현과 연출의 축약어)의 ‘민주주의’를 확립한 기술적·제도적 인프라인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온라인에서 어떻게 자기연출을 도모할까? 소셜 미디어와 셀렘의 관계를 연구하는 사회학자 앨리스 E. 매윅은 온라인에서의 자기연출의 기술(전략)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sup>15)</sup>

15) Alice E. Marwick. (2013). *Status update: Celebrity, publicity, and branding in the social media age*. Yale University Press. p. 21.

첫째, 마이크로-셀럽(micro-celebrities)이다. “친구”나 ‘팔로워’를 마치 자신의 팬인 것처럼 여기고, 지속적인 팬 관리를 통해 인기(popularity)를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팬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라인 자기연출을 사려 깊게 구축하고 변화”시킨다. 전통적인 셀럽과 비교한다면, 마이크로 셀럽들은 팬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자 애쓰며, 진심(authentic)을 보이기 위해 사적인 정보를 공개한다.

둘째, 자기 브랜딩(self-branding)이다.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생각하고 그것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다. 사실 이것은 쉽지 않다. 자기 브랜딩은 전문적 능력을 지닌 사람만 할 수 있다. 자기 브랜딩의 ‘기술자’들은 스스로를 “엄격하게 ‘편집된 자아(edited self)’로 만들고, 제시하고, 유지”한다.


셋째, 라이프스트리밍(lifestreaming)이다. “정서적 연대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타인과 사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기술”이다. 무엇을 먹고, 어디서 놀며, 어떤 가방을 들며, 어떤 영화를 보는지와 같은 사적인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며, 타인(팬)이 그것을 좇고(trackable)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자기를 연출하는 “자랑질”이나 “허세” 또는 “있어빌리티”<sup>16)</sup>는 특수한(이상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주변에도 식당에서 ‘포토 타임’을 갖느라 음식이 식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기록하고 중계하느라 눈앞의 절경을 만끽하지 못하거나 온라인의 편집된 자아에 맞춰 사느라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가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팬’들을 위한 ‘설정샷’을 만드느라 힘겨웠던 일이나 ‘핫한 플레이스’들을 순례하느라 고단했던 경험은 흔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위 기술들은 고단함 이상의 위험성을 내포한다. 자신을 상품화하고, 친구와 지인을 팬으로 대하는 과대망상, 사생활의 과도한 노출, “맥락의 붕괴” 등이 그것이다. 앞의 세 위험은 자명하기에 설명이 불필요하다. 마지막 위험, 즉 맥락의 붕괴는 ‘썩은 하계’ 편집한 자아를 온라인에 올렸는데, 그것이 실제 생활과 괴리를 보이게 될 위험이다. 무엇에 자신을 맞춰야 할까. 온라인 자아가 우선시되면 사회관계의 단절이나 고립은 필연이다.

16) ‘있어빌리티’는 ‘있다와 능력을 뜻하는 ‘ability’를 합성한 신조어다. 강지원. (2016. 9. 1.). SNS 허세샷? 요즘은 있어 보이게 찍는 것도 능력이죠. <한국일보>. URL: <http://www.hankookilbo.com/v/2afb8b091bdf46bd82a0e22980f212ab>

## 8. 사생활을 내주고 주목을 얻자!

자신을 셀럽으로 갱신해야 하는 우리 모두 e-가십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크다. 경쟁적으로 사생활을 내주고 주목을 구하기 때문이다.<sup>17)</sup> 자기를 상품화하고 관심을 받고자하기 때문이며, 주변 사람들을 팬으로 생각하기 때문이고, 미디어에 편집된 자아를 우선시하면서 그와 불일치하는 관계들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있어빌리티를 연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셀러토이드나 일반인은 특히 취약하다. 공적 인물이나 전통적 셀럽처럼 자기연출을 돕는 전문가(대 미디어 관계, 스케줄과 팬 관리, 화장·헤어·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선정적 폭로와 노출, 거짓되고 곧 들통 날 연출과 같은 최후의 수단에 의존할밖에.

선정주의, 사생활 노출, 연출된 진정성, 이들 모두 가십이 탐하는 먹잇감이다. 사생활의 선정적이며 연출된 노출을 장려하는 셀럽화는 그렇게 가십을 활성화시킨다. 가십, 특히 악의적인 가십은 공적 삶과 사생활의 불일치, 허세 어린 자랑질과 조출한 현실의 차이, 연출과 실제의 틈에서 움트고 번성한다. 소중한 재화를 얻기 위해서는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악의적 가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결국 주목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우리 현대인이 감내해야 할 부수적 피해다. 



17) 매우 중요한 사항이지만 자세히 다룰 여유가 없기에 지적만 하겠다. 가십퍼(gossiper)의 주목 경쟁 역시 가십 창궐에 기여한다. 너무 많은 가십 속에서 내 것이 주목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더 선정적이고 악의적인 가십을 '창조'해서라도 주목을 받아야 한다. 일베에서 벌어지는 가십퍼의 주목 경쟁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박권일 (2014). 공백을 들여다보는 어떤 방식: 넷우익이라는 '보편증상'. 박권일·김민하·김진호·남상욱·문순표·이택광(편). <지금, 여기의 극우주의>. 자음과모음.

# 루머가 SNS를 만나면 뉴스가 된다?

- 루머 확산매체로서 SNS와 저널리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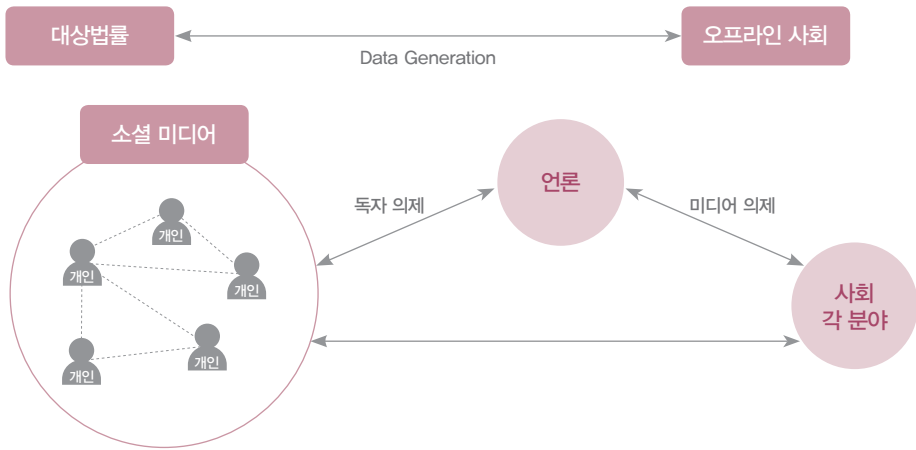
홍주현 ·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1. SNS의 등장과 순환적 의제설정과정을 통한 루머의 확산

사드(THADD) 배치 지역이 확정된 이후의 사드 괴담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메르스 괴담, 유행언 괴담, 세월호 루머, 방사능식품 논란, 한미 FTA 루머 등 우리 사회에서 루머나 괴담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건의 발생과 함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Social Network Site: 이하 'SNS')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순식간에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현상이 일상화된 것이다. '루머'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 '괴담'은 기이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확산된 루머는 괴담에 가깝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진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루머의 전파 속도가 느렸던 과거와 달리,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증가시켜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 메시지 확산 범위를 넓히고 시간을 단축시켰다.<sup>1)</sup> 사용자 측면에서는 과거보다 접근할 수 있는 정보량이 많아지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갖게 되었다.

1) Fawkes, J. & Gregory, A. (2000). Applying communication theories to the internet. *Journal of Communication Management*, 5(2), pp. 109-124.



〈그림 1〉 소셜 미디어를 통한 순환적 의제설정과정<sup>2)</sup>

SNS의 등장으로 매스미디어 중심의 의제설정과정은 좀 더 역동적으로 변화했다. 〈그림 1〉을 보면 가상공간인 소셜 미디어에서 이용자들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고,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한다. 소셜 미디어에서 생산된 정보는 언론의 주목을 받아 기사화되며 언론을 통해 사회 전체에 정보가 확산된다. 반대로 언론보도에 대해 이용자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시 의견을 공유하는 등 오늘날 의제설정과정은 순환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이슈가 확산되는 과정은 매스미디어가 중요한 이슈를 찾아내서 보도하면 이용자가 미디어에 의존해 정보를 접하고 확산시키는 순차적인 과정이 아니라, 발생한 이슈가 언론에 즉각 보도되기도 하고, 이용자들이 의제를 제기하기도 하는 등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SNS를 중심으로 한 순환적인 의제설정과정은 사회의 정책을 바꾸거나 정부를 비판, 감시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앞에 언급한 일련의 루머 확산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순환적 의제설정과정에서 잘못된 정보, 오보, 루머가 급속하게 확산된다. 이는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루머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확산되는 현상을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루머 확산 채널로서 SNS와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사드 관련 루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이 그림은 Trottier & Fucks (2015), *Social Media, Politics and the State: Protests, Revolutions, Riots, Crime and Policing in the Age of Facebook, Twitter and YouTube*, p.16의 Figure 1.2 The process of social media communication을 참조로 재구성한 것임.

## 2. 루머의 생산·확산채널로서 SNS의 특성과 루머의 확산



루머가 SNS를 통해 어떻게 확산되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루머가 형성되는 진원지인 SNS의 매체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SNS는 개인들이 단문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 가입자 간 즉각적인 정보 공유, 상호작용이 가능한 매체이다. 선거 때 SNS는 정치인들이 유권자와 소통하는 채널로 활용되며, 정치인의 홍보활동, 정책공지 등 정보 채널(information channel)의 역할도 한다. 이용자들은 관계형성을 위한 채널로 SNS를 활용하기도 한다. 가상공간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본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로서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SNS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이동성(mobility)을 들 수 있다. 이동성은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장소의 제약 없이 SNS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sup>3)</sup>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의 융합으로 개개인이 정보를 생산하는 지점(point)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동성은 이용자 간 연결성(connectivity)을 강화시켜 이용자들의 상호작용을 증가시켰다. 메시지의 송신과 수신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은 쉽게 집합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즉, SNS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여론 형성이 가능해졌고 이용자의 힘은 커졌다.

이와 같은 SNS의 매체적 특성은 유용한 정보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나 루머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미 간 사드 배치 논의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월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된 괴담이 SNS를 통해 확산되었는데, 사드 관련 루머를 근거 없는 것과 잘못된 정보로 구분해 봤다(〈표 1〉 참조). 분석 결과,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루머의 대부분은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루머 내용 중에는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것이 많았는데 잘못된 정보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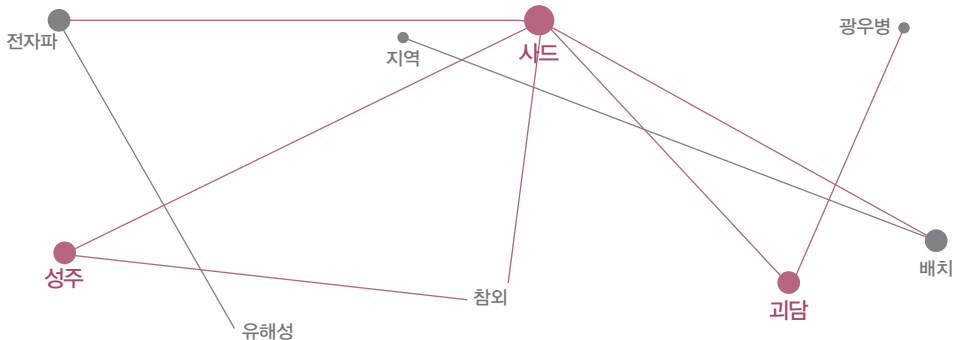
이와 같은 SNS의 매체적 특성은 유용한 정보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나 루머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미 간 사드 배치 논의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월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된 괴담이 SNS를 통해 확산되었는데, 사드 관련 루머를 근거 없는 것과 잘못된 정보로 구분해 봤다(〈표 1〉 참조). 분석 결과,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루머의 대부분은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루머 내용 중에는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것이 많았는데 잘못된 정보도 있었다.

3) Pick, Y. C. (2010). *Mobile strategies in political communication*.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in Public Communication, Retrieve from [www.american.edu/soc/communication/upload](http://www.american.edu/soc/communication/upload)

〈표 1〉 사드 관련 루머

루머의 속성	세부 내용
근거 없는 루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드 레이더가 지역 주민의 암을 유발한다, 아이들에게 전자파가 무분별하게 노출된다, 사드가 배치되면 전자파로 인해 불임이나 기형아 출산 우려가 있다, 치매환자가 속출한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노출되면 뇌종양과 백혈병에 걸린다, 내장 기관이 파열되고 몸이 녹아내린다</li> <li>• 성주 참외가 사드 참외가 될 것</li> <li>• 미군이 없는 지역에만 사드를 배치한다, 생체실험을 한다</li> <li>• 사드 배치는 중국 공격용이다, 주변 항공기 전파를 교란한다</li> <li>• 수질이 오염된다, 사드 발전기로 인하여 엄청난 소음이 발생(1km 이상까지 전달)한다</li> <li>• 중국 내륙 지역을 탐지할 수 있다</li> <li>• 국방부가 성주에 육군 50사단 병력 투입을 검토</li> </ul>
잘못된 정보(오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드 레이더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5km 범위까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것이다</li> </ul>

다음으로 사드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들이 SNS를 통해 확산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SNS에서 많이 언급된 주요 단어 간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그림 2〉를 보면, 사드-전자파-유해성, 사드-괴담-광우병으로 연결되어 사드로 인한 전자파의 위험성이 많이 언급된 것을 알 수 있다. 또, 사드 괴담을 광우병과 연결지어 광우병 사태 당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했던 상황과 연결시키고 있다. 사드-배치-지역의 연결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강조했다. 주목할 점은 사드-성주-참외의 연결인데 사드 배치로 인해 지역특산물로 유명한 성주 지역의 참외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 지역과 전자파 유해성에 관한 것을 제외하면 사드 참외, 사드 괴담 등 루머와 관련된 내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사드 관련 연관 검색어 네트워크 분석 : 위세 중심성<sup>4)</sup> 값

4) 위세 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노드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위세 중심성 값이 크다면, 위세 중심성 값이 큰 노드가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단어들의 중심성 값 분석을 통해 어떤 단어가 영향력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3>을 보면 ‘사드’의 매개 중심성이 24,000으로 가장 높아 ‘사드’가 제일 많이 언급되고 다른 단어와 직접 많이 연결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괴담’ 7,999, ‘전자파’와 ‘배치’가 7,000으로 높았다. 인접 중심성 값은 거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위세 중심성 값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사드’가 0.243으로 가장 높아 영향력이 제일 큰 단어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참외’가 0.151로 나타났다. 이밖에 ‘괴담’, ‘전자파’, ‘배치’가 0.109로 위세 중심성 값이 높았다.

<표 3> 사드 관련 연관 검색어 중심성 값

단어	연결성	매개 중심성	인접 중심성	위세 중심성
사드	5	24.000	0.091	0.243
괴담	2	7.999	0.063	0.109
광우병	1	0.000	0.043	0.042
참외	2	0.000	0.059	0.151
성주	2	0.000	0.059	0.151
전자파	2	7.000	0.063	0.109
유해성	1	0.000	0.043	0.042
배치	2	7.000	0.063	0.109
지역	1	0.000	0.043	0.042

사드 관련 주요 단어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SNS에서 사드로 인한 전자파 발생 우려와 더불어 사드 참외, 사드 괴담처럼 사드와 관련된 루머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부의 의견이나 국방부의 해명, 전자파에 대한 설명 등은 SNS에서 중요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언론은 사드 관련 루머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 3. 뉴스 취재원으로서 루머의 특성 및 루머 재확산 매체로서 언론의 역할

순환적 의제확산과정에서 루머는 순식간에 사회 전체로 전파된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속성을 가진 루머는 저널리즘 측면에서 보면 뉴스 가치가 있다. 사실이나 진위 여부를 떠나 독자들이 루머 자체에 관심을 보이기 쉽기 때문에 언론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취재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정부가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후 사드 배치와 관련된 루머가 언론에서 얼마나 많이,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양적인 측면과 내용 측면에서 분석해보았다. 결과를 보면, 사드 배치 논의가 시작된 2월부터 7월 29일까지 상당히 많은 양의 루머가 기사화되었다.

〈표 4〉를 보면 언론에서 사드 관련 괴담을 처음 다룬 2월 11일부터 미국 미사일방어청(MDA) 청장이 방한해 기자 간담회를 실시한 8월 11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8월 24일까지 언론 보도량을 매체별로 검색한 결과 총 1,69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인터넷 매체는 온라인에 기반한 매체를 의미하며, 오프라인 매체의 인터넷 사이트와는 구별된다. 사드 괴담 관련 보도량을 보면 오프라인 매체는 일간지 288건, 방송·통신 465건, 경제·IT지 349건, 지역지 183건이었으며, 인터넷 매체는 405건으로 나타났다.

〈표 4〉 사드 괴담 관련 매체종류별 보도량

매체종류	분석 기간	
	2016년 2월 11일 ~ 8월 24일	
오프라인 매체	일간지	288건
	방송 / 통신	465건
	경제 / IT지	349건
	지역지	183건
인터넷 매체	인터넷 신문	405건
합계		1,690건

보도량도 중요하지만 사드 괴담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여당이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중립, 국민의당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사드를 반대하는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반대로 정하라고 강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입장인지에 따라 사드 괴담을 보는 관점에도 차이가 생긴 것이다.

〈표 5〉는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사드 괴담을 다루는 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수 언론의 헤드라인을 보면 사드 괴담이 성주 군민들을 선동한다며 성주 군민이 자신들의 건강을 우려해서가 아니라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수 언론의 프레임을 ‘정부 반대 세력 프레임’으로 보았다. 반면, 진보 언론에서는 사드 괴담과 관련된 공영방송 또는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태도를 비판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드 괴담 관련 진보 언론의 보도를 ‘괴담 강조 프레임’과 ‘외부세력 부각 프레임’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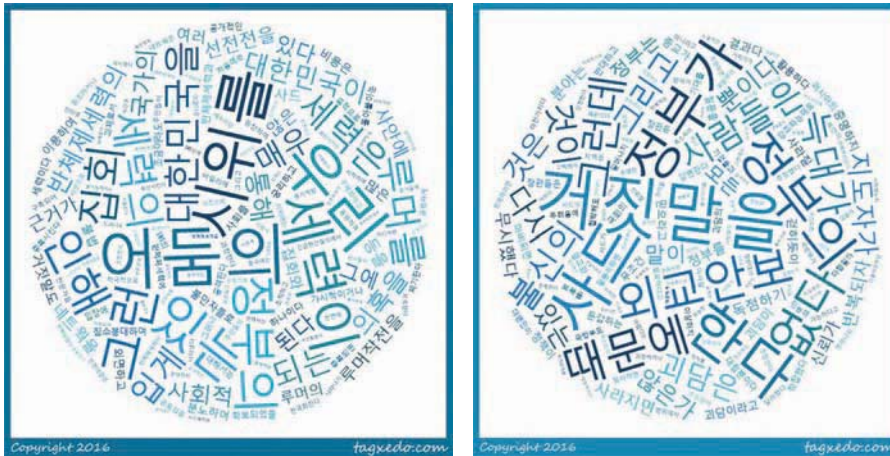
## Focus on Media 2

루머 탐하는 사회, 찌라시 권하는 SNS

〈표 5〉 사드 관련 과담에 대한 언론의 보도 프레임 비교 :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

	헤드라인	보도 프레임
보수 언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안함·사드…대한민국 붕괴 노린 어둠의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sup>5)</sup></li> <li>· “사드 과담 모두 거짓, 제2의 광우병 선동”<sup>6)</sup></li> </ul>	정부 반대 세력 프레임
진보 언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영방송부터 종편까지, ‘사드 검증’은 없었다<sup>7)</sup></li> <li>· 성주 군민 상경집회, 외부 세력 거부만 부각한 &lt;동아&gt;<sup>8)</sup></li> <li>· 사드 배치 반대하면 ‘외부 세력’, 전자파 유해성은 ‘과담’?… 성주 군민 고립시키는 언론 보도<sup>9)</sup></li> </ul>	과담 강조 프레임 외부세력 부각 프레임

〈표 5〉에 나타난 프레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기사 내용에 대한 구름단어 분석을 실시했다. 구름단어 분석은 Tagxedo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했는데 텍스트에 특정 단어가 많이 등장할수록 크고, 가운데 위치하게 된다. 〈그림 3〉을 보면 왼쪽 그래프는 보수 언론 기사에 대한 단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진보 언론 기사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그림 3〉 보수 언론<sup>10)</sup>과 진보 언론<sup>11)</sup>기사 구름단어 분석 결과

5) 양동안 (2016. 7. 26). 〈미디어펜〉. URL: <http://www.mediapen.com/news/view/171035>

6) 김희진 (2016. 7. 25). 〈뉴데일리〉. URL: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17587>

7) 이봉우 (2016. 7. 22). 〈오마이뉴스〉. UR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8980](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8980)

8) 배나은 (2016. 7. 22). 〈오마이뉴스〉. URL: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8981](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8981)

9) 배문규 (2016. 7. 21). 〈경향신문〉. UR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211740001&code=91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211740001&code=910100)

10) 양동안 (2016. 7. 26). 천안함·사드…대한민국 붕괴 노린 어둠의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 사드 배치 둘러싼 정부 대 성주 군민의 갈등은 빙산의 일각. 〈미디어펜〉. URL: <http://www.mediapen.com/news/view/171035> 참조.

11) 김연철 (2016. 7. 24). [세상읽기] 신뢰가 무너지면 늑대가 온다. 〈한겨레신문〉. URL: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53664.html> 참조.

보수 언론의 사드 괴담 보도에 대한 구름단어 분석 결과, ‘어둠의’, ‘시위를’, ‘세력이’, ‘우리’, ‘대한민국을’, ‘루머작전으로’, ‘반체제세력’ 순으로 많이 등장했다. 왼쪽 그래프를 보면, 가운데 ‘어둠의’, ‘시위를’이 크게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다. 오른쪽 진보 언론의 사드 괴담 관련 구름단어 분석 그래프를 보면, ‘거짓말을’, ‘정부가’, ‘외교안보’, ‘사드’, ‘한다’, ‘늑대가’, ‘불신의’, ‘괴담’ 순으로 나타나 정부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사드에 대한 우려를 괴담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SNS를 통해 급속하게 확산된 루머, 괴담이 언론의 쟁점화에 의해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이러한 언론 보도가 다시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순식간에 루머, 괴담이 반복해 퍼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언론이 루머를 보도함으로써 루머의 진위 여부를 떠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루머의 인지도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SNS에서 확산된 루머가 몇 백 개가 넘는 인터넷 언론과 주류 매체의 인터넷 사이트, 포털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다시 확산되는 등 순환적 의제설정과정을 통해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사드 괴담과 관련된 언론 보도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사드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보다는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외부 세력 개입설’, ‘괴담이 모두 거짓이라는 주장’,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감정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미 FTA 체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일본산 식품 방사능 논란,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루머, 괴담이 확산될 때마다 언론의 보도 태도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sup>12)</sup>

언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괴담, 루머에 접근하는 프레임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언론은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저널리즘 측면에서 정확한 정보를 깊이 있는 관점에서 전달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구나 루머를 급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갖고 있고 늘 루머에 접하는 사회에서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12) 홍주현·윤희진 (2014). 트위터를 통한 루머의 확산 과정 연구: 한미 FTA 관련 루머의 자극성에 따른 의견 확산 추이와 이용자의 상호작용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66호, 59-86면.; 홍주현 (2016). 핵심 정보와 주변 정보의 확산 과정 연구: 단어의 가시성(visibility)과 연결성(connectivity) 분석을 중심으로 본 언론의 프레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3), 269-287면.

#### 4. 루머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 : 과학적 분석을 통한 깊이 있는 보도

SNS 이용자가 증가하고, 대중화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루머는 일상적으로 접하는 정보의 한 종류가 되었다.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관련 루머가 실시간으로 확산된다. 언론은 루머를 중요한 취재원으로 다루기도 한다. SNS를 통해 루머가 형성되고 확산되는 것도 문제지만 언론이 루머를 어떻게 보도하는지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다. 루머의 진위 여부를 떠나 언론이 루머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도하는지에 따라 루머는 잘못된 정보가 되기도 하고 진실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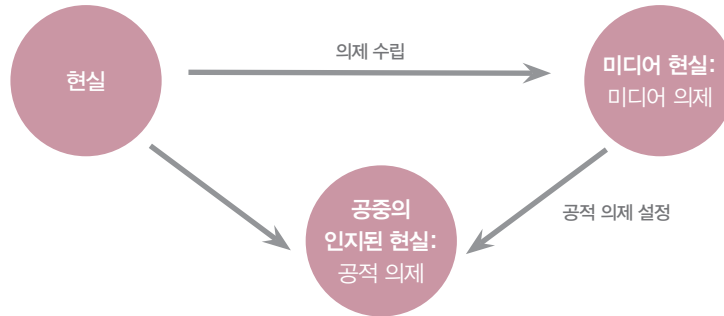
앞의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에 확산된 루머를 다루는 언론의 태도는 정부와의 정치적 성향 일치 여부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나타냈다. 루머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할 언론이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사설·칼럼에서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원하는 정보만 이용해 서로 다른 현실을 구성하기도 한다.

언론이 루머를 전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루머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루머를 인지하지 못했던 독자들이 루머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언론의 프레임에 따라 루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은 루머를 다룰 때 선정적 또는 흥미 위주로 보도할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중심의 깊이 있는 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언론이 어떤 시각에서 쟁점을 다루는지 프레임을 비교하고, 프레임이 독자들의 현실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학자들은 독자들의 현실 인식이 자신이 읽은 기사의 프레임과 거의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sup>13)</sup> 독자의 주관적 현실 구성에 미디어의 현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림 4〉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독자가 보수적 매체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사드 관련 루머를 정부 반대 세력의 음모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진보 성향 독자들의 경우에는 사드 관련 루머를 진실로 믿고 정부가 거짓말을 한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언론이 현실을 어떻게 틀 짓는지가 독자들의 현실 인식에 영향을 주는 만큼 언론은 루머를 다룰 때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사실 중심으로 보도해야 할 것이다.

13) Gamson, W. A. (1989) News as Framing Comments on Graber: Manifest and Latent Content the Picture Messages the Etiology of Content.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3(2), p. 157. ; An, S. K. & Gower, K. K. (2009) How do the news media frame crises? A content analysis of crisis news coverage. *Public Relations Review*, 35(2), pp. 107-112.

〈그림 4〉 미디어의 현실구성과 독자의 현실 구성의 관계<sup>14)</sup>



기자들은 루머를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루머를 취재하고 보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루머를 보도할 때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저널리즘을 접목시킬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 사용한 구름단어 분석<sup>15)</sup>을 활용해 정부의 루머 관련 보도자료를 분석하고, 정부의 루머 관련 대책을 비판할 수도 있다. 루머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석을 해보면 정부의 해명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네트워크 분석<sup>16)</sup>을 통해 SNS에서 루머와 관련해 어떤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지 분석하고, 시각화 그래프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데이터를 시각화하면 독자들에게 현상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를 전달할 수도 있다.

또 이 연구에서 활용한 것처럼 특정 주제와 관련해 어떤 단어가 많이 언급되었는지 등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시각화한다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전혀 다른 현실을 구성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빅데이터 환경에 놓인 기자들은 데이터 저널리즘에 기반해 사실 중심의 기사를 쓰기 위해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변화에 적응한 기자와 언론만이 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영향**

14) Berger, P.L. & Thomas, L. (1991.).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Penguin Books.

15) tagxedo.com 프로그램 참조.

16) NodeXL 프로그램 참조.

# 소셜 미디어 루머로 인한 피해의 구제와 법적 쟁점

정완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I. 서언

오늘날 소셜 미디어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통한 근거없는 루머의 확산으로 많은 명예훼손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어느 야구선수로부터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통해 “치어리더 A가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메시지를 받은 여자친구가 SNS에 이 내용을 올린 행위가 문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SNS에 게시한 여성뿐 아니라 메시지를 보낸 야구선수에게도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처럼 카카오톡 등 1:1 메시징 앱을 통해 루머를 유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아울러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메시지(속칭 ‘찌라시’)를 유포한 경우에도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악성루머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SNS를 통해 전파되는 루머는 그 출처를 찾기 쉽지 않고, 유포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으로는 루머에 의한 피해의 법적 구제 방법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형사처벌 중심이어서 이들 형사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을 경우 자칫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각종 루머로 야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주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법리적 쟁점, 예컨대 공연성, 비방할 목적, 위법성 등을 검토하여 루머의 전파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며, 아울러 악성루머로 인한 피해의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예컨대 피해정도의 객관적 측정을 바탕으로 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관련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 II. 루머 전파의 법적 책임

인터넷을 통해 전파된 루머는 사실이든 허위이든 민형사상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 특히 그 허위정보로 인해 누군가 크나큰 충격과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루머의 전파에 의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형사책임, 민사책임, 행정책임(행정규제)의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1. 형사책임

루머 전파의 형사책임에 관하여는 다양한 법률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형법상 모욕죄 규정이다. 현행 형법은 제311조에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루머 전파가 타인을 모욕하는 결과가 된다면 이러한 모욕행위는 이 모욕죄 규정에 의해 형사처벌된다. 이를 사이버모욕죄라고 하는데 이를 형법상의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다. 현실공간에서의 범죄와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는 그 무대가 다르므로 사이버모욕죄를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다.<sup>1)</sup>

둘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규정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제70조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는데,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거짓의 사실에 기초한 경우는 가중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루머의 전파가 이러한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명예훼손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해당하는 형벌을 부과받게 된다.<sup>2)</sup>

1)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사이버공간상 모욕행위는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현행법상 무죄가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이버공간상 모욕행위를 적절히 규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한다. 정완 (2009),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관한 고찰. <법과 정책연구>, 9집 1호.

2)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정완 (2008), 사이버명예훼손피해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방안. <피해자학연구>, 16권 2호 참조.

셋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와 관련하여 루머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중벌에 처해지는 것이다.

넷째, 자본시장법상의 부당권유죄와 시세조종죄이다. 거짓정보를 이용한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죄로 처벌되고, 시세조종을 위한 풍문의 유포 또한 동법에 의해 형사처벌된다. 루머가 이러한 거짓정보나 풍문의 유포에 해당될 경우 해당하는 형벌을 부과받게 된다.



다섯째,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통신죄 규정이다. 몇 년 전 허위사실 유포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허위통신죄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후 이 제1항은 삭제되었지만 나머지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다. 동조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항은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위통신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루머가 이 허위통신규정을 충족시킨다면 언제든지 이 조항을 적용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sup>3)</sup>

3) 상세한 내용은 정만 (2016), 인터넷상 허위사실유포의 규제필요성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51권 1호 참조.

## 2. 민사책임

다음은 루머 전파의 민사책임이다. 루머를 전파시켜 타인의 인격권 등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이른바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현행 민법은 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751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책임의 내용으로 비재산적 손해, 즉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성립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명예훼손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성립시키기 위한 요건은, 첫째, 가해행위로서 사이버명예훼손이 행해졌을 것, 둘째, 사이버명예훼손이 책임능력 있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야기되었을 것, 셋째, 사이버명예훼손이 법질서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것, 넷째,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행위와 손해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등이다. 명예훼손에 의한 정신적 손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로 입은 자신의 외부적 평판 손상인데 이를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명예훼손에 있어서는 일정한 가해행위가 있을 경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고 명예가 훼손되었음이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3. 행정적 규제

루머의 전파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책임을 존재한다. 행정책임은 행정적 규제를 받는 부분을 말하는데, 루머를 담은 인터넷 게시물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차단 또는 삭제 등의 규제대상이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불법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이들 정보가 실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으로 관련 게시물을 차단, 삭제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그 2호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열거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정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Ⅲ.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분석

루머의 전파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 가장 흔하므로 이하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죄 규정의 구성요건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이버 명예훼손행위는 우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해져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의 정의는 동법 제2조 제1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터넷 매체도 이 법이 정의하는 정보통신망의 범주에 포함되며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한 규제를 위해 본 규정이 마련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2.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든 기초가 되는 정보가 적시되어야 한다. 이 요건에 있어서의 ‘사실’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과 유사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 즉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이어야 한다. 다만 사실의 진위여부에 따라 제70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될 따름이다. 그러나 인터넷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 행위는 엄밀히 보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보다는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언행에 불과한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한편, 적시라는 것은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며, 사이버 명예훼손의 적시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문서, 그림, 사진, 동영상, 도메인주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런 적시방법의 다양성이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급증 요인이 되기도 한다.

대법원 판례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이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된 어떠한 표현행위가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지 혹은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한지의 구별은 당해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

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및 게시물의 전체적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당해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sup>4)</sup>

### 3. 공공연하게

사이버 명예훼손도 명예훼손이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론체계상 ‘공연성’의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판례는 현실세계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판단척도로서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 기준을 중심으로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판단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명예훼손은 대부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개방형 네트워크의 상호연결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항상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톡 등 SNS 대화방 내용에 대해서도 공연성이 인정되는가에 관해 최근 법원은 “채팅방의 대화내용이 언제든지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이 있다”며 “대화 내용의 전파가능성 등을 볼 때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결<sup>5)</sup>한 바 있고 2008년 대법원은 피고가 인터넷 블로그의 비밀 대화방에서 일대일로 타인을 비방한 사건에 대해 “일대일 대화라고 해서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sup>6)</sup>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사실상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대화가 공연성을 띠고 있어 언제든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4)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3 판결.

5) 김희래 (2016. 6. 23.), SNS 사적공간,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MK뉴스> 참조.

6)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 4. 비방할 목적

이 죄가 성립되려면 행위자의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같이 비방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비방의 목적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해하려는 가해의 의사”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비방의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언론기관이 갖는 사실 공개적 성격과 공공성 내지 공익성을 감안하면 출판물 등 언론매체는 그 성격상 타인의 명예에 관련된 사실을 보도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명예보호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조율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비방의 목적을 과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도 요건으로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다.<sup>7)</sup>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썼다가 형사처벌을 받자 ‘비방할 목적’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비방’이나 ‘목적’이라는 용어는 정보통신망법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고,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들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인터넷의 익명성과 비대면성, 빠른 전파 가능성으로 인해 진실한 사실이라도 반론과 토론을 통한 자정작용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가 적지 않고, 개인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명예훼손적 표현을 규제해 인격권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크다”며 동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sup>8)</sup>

본조의 ‘비방할 목적’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거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sup>9)</sup> 따라서 예컨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나 블로그에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지인에 대하여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것은 명예훼손이 되기 쉬우며, 식당이나 업체에 대한 각종 불만사항을 이용후기로 게시할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사적 보복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

7) 박상기 (2005). <형법각론>. 박영사, 199면.

8) 이에 대해 소수 재판관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는 위촉 효과를 야기한다. 반박문 게재나 게시글 삭제 요청, 민사상 손해배상 등 다른 규제 제도가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05, 2015헌바234(병합) 결정]

9)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야 한다. 만약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포함돼 있어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표현 방법과 동기는 무엇인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될 것이다.

## 5. 위법성

형법 제307조와 동법 제309조를 결합한 형태의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경우에 따라 형법이 규정하는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판례가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의 경우 공익을 위한 때에만 적용될 수 있는 형법 제31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도 같은 취지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sup>10)</sup>

## IV. 명예훼손 피해의 민사적 구제

### 1. 손해배상청구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가장 적절한 민사적 구제방법은 손해배상이다.<sup>11)</sup> 사이버명예훼손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원인이 된다. 아울러 정신적 고통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법한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형사법상의 사이버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비해 그 요건은 엄격하지 않다.<sup>12)</sup>

대법원은 민사상 명예훼손 성립에 있어 필요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여<sup>13)</sup> 손해배상의 성립범위를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비해 넓게 보고 있다.

10) 이재상 (2004). <형법각론>, 박영사, 192면.

11) 정완 (2010). 사이버명예훼손 피해의 민사적 구제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 27권 2호.

12) 이승호 (2002). 사이버명예훼손의 처리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과제. <인터넷법률>, 10호, 9면.

13)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민법은 손해배상원칙으로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명예훼손의 경우 그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이 곤란할 뿐 아니라, 금전배상을 하여도 훼손된 명예가 회복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원상회복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즉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원상회복처분에 의한 명예훼손의 해결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따라서 게재된 메시지의 내용을 취소 혹은 정정하게 하거나 동일 사이트에 가해자가 패소한 재판의 결과내용을 게시하게 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기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사죄광고, 특정보도 내지 기사를 취소 또는 정정하는 광고를 명할 수 있으나, 사죄광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 제19조가 정하는 양심의 자유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sup>14)</sup>이 있었으므로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포함될 수 없다.

아울러 게재된 메시지의 내용이 불법하다면 피해자가 법원에 메시지 삭제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는 제1항에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급박하게 증가하는 피해의 확산을 일단 막는 조치이므로 피해가 발생되면 돌이키기 힘들어지는 사이버명예훼손의 특성상 상당히 유용한 대처방법이라 할 수 있다.<sup>15)</sup>

## 2. 위자료의 산정

사이버명예훼손은 재산적 손해를 야기하는 일은 드물고 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입증과 구체적 산정이 매우 곤란하다. 입증이 곤란한 재산적 손해는 다른 사정과 함께 위자료 산정에 고려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1조에 의해 위자료 청구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sup>16)</sup>

14)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15) 앞의 이승호(2002), 10면.

16) 이봉림·이기용 (2007), 사이버공간의 명예훼손 -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제19권 제3호, 835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손해의 실제 규명, 참작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침해의 태양, 정도, 위법성의 강약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학력 및 연령이나 피



해자의 재산상태, 생활상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판례도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무형의 손해에 있어서는 본래 이를 금전으로 계량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감정 기타 증거방법에 의하여 그 금액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는 증거로 이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법원은 당사자의 자백 등에 기속되지 않고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자유재량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고,<sup>17)</sup> 판결이유에 위자료산정 근거를 명시할 필요도 없으며,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가해자의 고의·과실, 가해자의 사고 후 태도, 가해자의 재산상태,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직업·학력 등이다.

### 3. 금지청구권

현행 민법은 절대권인 물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물권 자체에 기한 절대적 청구권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인격권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법 규정에 근거한다면 인격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수단으로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통상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제751조)과 명예회복 처분의 청구권(민법 제764조)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 청구권은 모두 사후적인 구제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금전배상은 실제로 피해자가 느끼는 손해보다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격권은 성질상 한번 침해되면 사후적 구제로는 쉽게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들만 가지고는 인격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후구제수단의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실효성이 있는 것은 이른바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17) 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2민상12 판결; 1959. 10. 29 선고 4202민상204 판결; 1976. 2. 10 선고 75므33 판결.

금지청구권에 대하여, 판례는 “명예는 생명·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갖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외에,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sup>18)</sup>

사이버공간상에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행사요건으로는 명예를 비롯한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이미 침해가 있고 재발할 위험이 있어야 하며, 예정된 표현행위나 이미 행한 보도로 피해자의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되어야 하고, 침해된 후에 다른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여야 한다.<sup>19)</sup>

## V. 결론 및 제언

사이버명예훼손에 의한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1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제2항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의한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없이 삭제, 임시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명예훼손 행위의 해악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피해자의 권리 혹은 법익침해에 대해 사회가 일반적으로 참아내는 범위를 넘어 악의적이거나 심한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가해자를 응징하고 또 앞으로 그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 외에 특별히 더 부담시키는 손해배상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피해자

18)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19) 앞의 이봉림·이기용(2007), 869면.

의 손해를 전보할 목적을 가지는데 이를 넘어서 가해자에 대한 징벌 목적을 추가하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보상적 작용이지만,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해자가 동종의 행위를 되풀이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일반인에게 경고하는 훈계적 작용을 인정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훈계적 작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적극 인정되어야 한다는 긍정론이 있다. 한편,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의 목적은 발생한 손해의 전보에 있는데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혼재라고 할 수 있고 민형사책임의 분리라는 근대법 원리에 어긋나는 변칙적인 것이라는 부정론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문제는 구체적 사회정의 실현 및 피해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적극적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으로 귀착될 것이다. 하지만 명예훼손 당사자가 악의적이거나 심한 고의로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징벌목적의 추가가 명예훼손행위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현실적 필요성 차원에서 도입을 위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개인정보의 유출과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악의적인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도 긍정적 검토가 적극 요망된다. 



## 기자를 위한 변명

한기봉 · 언론중재위원,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



# 우리말에는 ‘질’자가 붙은 단어가 적지 않다. 명사 뒤에 붙는 접미사다. 삼질, 걸레질, 바느질은 괜찮지만, 다음 경우는 어감이 확연히 다르다. 선생질, 목수질, 도둑질, 노름질, 싸움질, 전화질, 고자질 같은 단어들이다. 욕을 듣는 기분이다.

국어사전은 이런 경우의 ‘질’은 ‘어떤 직업을 낮잡아 부르거나 옳지 않은 일을 이룰 때 붙는 접미사’라고 설명한다. ‘갑질’이란 신조어(아직 국어사전에는 미등재)도 이런 경우다.

나는 30년간 ‘기자질’을 했다. 그것도 한 신문사에서 한 우물만 폈다. 현역 시절 나도 곧잘 이리 말하곤 했다. 지치고 힘들 때 “이 놈의 기자질 정말 때려치워야지”라든지, 누가 직업을 물으면 “기자질하고 있습니다”라며 웃어넘기기도 했다.

‘선생질’도 그런 경우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직업에 왜 ‘질’자가 붙었을까. 그 직업에 특별히 요구되는 기대치를 배반하는 사람이 많아서일까. 글썸다. 그런데 선생질이나 기자질은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누가 “야, 선생질 똑바로 해”라고 말한다면 그건 모욕에 가깝지만, 대체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학개

그’이거나 겸양의 의미를 담아서 그리 말한다.

# 직업에는 ‘사’(士, 師, 事)자가 붙기도 하고 ‘가’(家), ‘자’(者), ‘인’(人), ‘원’(員), ‘부’(夫) 자가 붙기도 한다. 판검사(判檢事), 변호사(辯護士), 의사(醫師) 등에서 보듯 ‘사’자는 한자로는 제각기 달라도 대체로 소위 선망의 대상인 직업군이다. 작가, 화가, 기업가, 발명가처럼 ‘가’ 자도 대체로 전문 직종을 말할 때 쓴다. 그런데 기자(記者)란 직업에는 왜 ‘놈 자(者) 자’를 쓸까 아직도 의아하다.

기자는 기사를 잘 쓰든 못 쓰든 욕을 먹는 놈이라 해서 ‘놈 자’가 붙었다고 기자들은 우스갯소리로 말한다. 학자, 성직자, 과학자, 노동자처럼 자신을 낮추고 묵묵히 한길을 걸어야 하는 직업에 ‘자’가 붙는다는 독창적 해석도 있다.

아무튼 ‘자’가 기분 좋은 글자는 아니다. 국어사전에는 ‘그를 당할 자가 없다’처럼 ‘자가 의존 명사로 쓰일 때는 ‘사람을 얹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다. 간호원(員)도 간호사(師)로 승격해 선생 반열에 들었듯이, 기자도 기사로 불린다면 어떨까. 글썸, 운전기사와 구분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호칭을 바꾸자는 말은 아직 듣지 못했다.

# 올해 아카데미상에서 〈스포츠라이트〉라는 영화가 작품상과 각본상을 탔다. 레오나르도 디캐프리오가 주연을 맡은 〈레버넌트〉가 강력한 수상 후보였기에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

이 영화는 실화가 바탕이다. 미국의 전통 매체인 보스턴 글로브의 탐사보도팀이 가톨릭 사제들의 지속적 아동 성추행과 교단의 조직적 은폐를 6개월 동안 추적해 밝혀낸 과정을 그렸다. 이 보도는 2003년 풀리처상을 받았다. 국내에선 30만 명이 관람했으니 상 값에는 이르지 못했다.

나는 이 영화의 관람평이 궁금했다. 대다수가 정말 감동적이었다는 평이었는데 후련이 붙어 있었다. ‘그런데 한국 언론은?’이란 반문이다. ‘한국에선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기자가 없으니까’, ‘기레기들은 꼭 보세요’라는 글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영화가 그리는 언론의 모습은 대체로 세 부류로 나뉘는 것 같다. 〈스포츠라이트〉처럼 거대악이나 부당한 권력, 부정부패에 맞서 진실을 파헤치는 용기 있는 모습이 하나고, 거꾸로 그것과 결탁한 비도덕적 모습이 있고, 세 번째는 시청률과 특종에 매달려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미디어의 두 얼굴이다.

언론과 기자를 소재로 삼은 한국 영화들이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나왔다. 흥행에도 크게 성공했다. 2015년 한 해만 해도 〈내부자들〉, 〈특종: 량첸 살인기〉,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베테랑〉, 〈소수의견〉이 있었다. 그 이전에도 〈제보자〉(2014), 〈찌라시: 위험한 소문〉(2014), 〈더 테러 라이브〉(2013), 〈부당거래〉(2010) 등이 상영됐다.

〈베테랑〉은 1천만 관객을 돌파해 역대 흥행 3위 기록을 세웠다. 〈내부자들〉도 700만 명이 넘게 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는 최다 관객을 모았다. 이중 진실을 파헤치는 기자다운 기자가 등장하는 영화는 〈제보자〉와 〈소수의견〉 두 편인데 흥행 성적은 별로였다.

나머지 영화들 속 언론의 모습은 한결같았다. 예외 없이 권력과 야합하거나 재벌에 빌붙는 존재로 설정되었다. 등장하는 기자의 모습 또한 비루하기 짝이 없다. 논설주간 한 명이 재벌을 스폰서 삼아 정치깡패를 데리고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판을 설계하고(내부자들), 광고와 기사를 바꾸고(베테랑), 취재원에게 향응을 받는 생활에 만족하고(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특종과 시청률에 눈이 멀어 거짓말을 하거나 테러범과 거래한다(량첸살인기, 더 테러 라이브).

결말은 어떨까. 언론은 뒤늦게 반성하고 본연의 사명에 돌아갈까. 아니다. 선과 정의가 승리하는 결정적 계기나 반전은 결코 언론의 몫이 아니다. 영화들은 SNS를 통한 동영상 폭로로 악이 응징되는 공식을 예외 없이 추종했다.

# 나는 언론 현장을 떠난 후 언론중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보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언론사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일이다.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거나 비판의 근거가 빈약한 기사, 때론 저의가 의심스러운 기사를 많이 상대하게 된다.

피신청인으로 출석한 기자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방패삼아 정정보도나 반론 보도 요구에 대체로 인색하다. 그때 신청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언론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요즘 사람들은 대체로 언론 평가에 부정적이다. 친구를 만났을 때 언론을 칭찬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 언론 이야기가 나오면 입에 침을 튀긴다. 정치적, 이념적 사안에 대해서는 더 그런 편이지만 “요즘 언론은 말이야, 요새 기자들은…” 하며 싸잡아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 취업을 앞둔 아들이 나에게 불쑥 물은 적이 있다. “아빠는 직업에 보람을 느꼈나요?” 나는 이 질문에 딱 부러지게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보람을 느꼈던가? 아니, 보람을 느낄 여유도 없었다는 게 맞지 않을까? 30년간 칼퇴근이란 것을 해본 기억이 거의 없다. 어쩌다 해가 남아 있을 때 귀가하려 하면 웬지 어색해서 석양주를 마시곤 했다.

그런데도 직장 옮길 생각을 안 하고, 힘들어도 힘들다 생각 못하고, 대기업에 간 친구들보다 월급이 박해도 밤낮 없이 일한 것은 대체 무슨 동배짱이었을까. 이제 와서 가끔 유효기간이 지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 별 신통한 대답은 없다. “그냥 기자였으니까.” 내 대답은 이 정도뿐이다. 그래, 그 시절 기자는 품도 잡았고 위세도 좀 떨었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았고 보람도 있었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니, 신문에 낫다니까”라는 한 마디가 좌중의 논란을 평정했다. 술을 마시다 사실 여부를 놓고 싸움이 붙으면 무턱대고 밤늦게 신문사로 전화를 해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지금은 그 권위를 네이버 지식인에게 빼겼지만.

가슴에 도장처럼 찍힌 장면이 있다. 야근을 마친 새벽 4시, 운전기의 굉음, 잉크 냄새를 풀풀 풍기며 비닐에 콩콩 묶인 신문덩이들, 그걸 가득 싣고 전국 팔도로 힘차게 떠나는 배송 트럭의 행렬... 그 신문에는 나의 특종이 실려 있었고 그걸 바라보며 가슴 뿌듯했던 기억. 이 장면은 영화 <스포츠라이트>에도 그대로 재연됐다. 기자의 마음은 다 같은가 보다.

자, 이쯤에서 한번 묻고 싶다. 한국 언론의 현주소는 정말 대중의 손가락질을 감수해야 마땅한 지점까지 온 것일까. 언론의 존재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는 온당하고 객관적일까.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된 건 그렇다 쳐도 기자는 언제까지 ‘기레기’로 조롱당해야 하나.

물론 한국 언론과 기자는 반성문을 써야 할 게 많다. 하지만 작금의 사회적 분위기는 지나치다고 본다. 시중의 평판이 너무 피상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도 내가 몸담았던 신문의 후배들을 만나면 인간적으로 측은하다. 취재하는 모습은 내가 현직에 있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아직도 밤새 경찰서를 돌아다니고, 취재원 집 앞에서 허구한 날 뺨치기를 하고, 365일 24시간 좋은 기사, 특종 하나를 건지기 위해 개인적 삶의 질을 희생한다.

특히 영화에 대해선 유감이다. 사회의 거대악을 폭로하고 사회정의를 지키는 건 아직도 결기 있고 훈련된 기자들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SNS가 아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 해도 그런 시나리오엔 무책임하고 이젠 식상하다. 적어도 전통있는

한국 언론사의 편집국, 보도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 설정이다. 일간지 논설주간 한 명이 어찌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판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

금수저, 흙수저를 탄생시킨 사회적 분노가 ‘마케팅’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류의 영화 속에서 권력과 재벌은 거대악으로 포맷되고 언론은 그 공범으로 단순화되고 이용당한다. 그리고 함께 응징된다.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도 부인할 수 없는 권력임에는 분명하다. 권력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대리만족과 통쾌함을 느낀다.

나는 〈스포츠라이트〉에서와 같은 추문이 한국에서 발생한다면 어느 언론사든 바로 특별취재팀을 꾸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기자들은 발이 닳도록 땀 것이다. 그런 기자가 없어서 그런 영화가 못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신문이 맘에 안 든다고 말할 때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언론의 이념적 좌표는 언론사마다 확연히 다르다. 그게 개개인의 가치와 관점에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언론’이라고 손가락질한다면 공정하지 않다. 독립적 언론은 있어도 중립적 언론은 언론의 숙명상 존재하기 어렵다고 한다. 일본에도 미국에도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있다. 독자는 선택의 자유를 구사하면 된다.


보수정권에 정치적 타격을 안기거나 대기업을 경영위기로 몰고 간 이슈들이 보수언론의 특종으로 드러난 걸 많이 봤다.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려 한다면 그건 그들의 자유다. 경험으로 말하건대 기자는 특종 앞에선 이념과 물

불이었다.

한국 기자가 다 기레기는 아니다.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언론사의 수가 1만 7,210개로 발표됐다. 이중 신문사업자가 3,400개, 인터넷신문이 6,149개다. 나도 그 수에 놀랐다. 당연히 품질과 옥석의 차이가 있다. 권위지도 있고 ‘듣보잡’도 있을 것이다.

포털 안에서는 중앙일간지나 취재기자가 몇 안 되는 군소 인터넷 매체나 공평한 지위를 갖는다. 평등하게 노출되고 차별 없이 검색된다. 뉴스 소비자는 사실 매체명에는 별 관심이 없다. 오히려 클릭 수에 목숨 걸고 어부지(특정 기사를 약간만 수정해 반복 노출시키는 행위)를 일삼는 매체의 편집이 눈에 더 잘 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셈이다. 언론의 정도(正道)를 외면한 일부 매체를 보고 전체 언론을 평가절하한다면 옳지 않다.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다. 평소 신문과 뉴스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다분히 인상적인 느낌으로 “요즘 언론은…” 하면서 언론을 도매금으로 불신하는 분위기다. 언론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하지만 비판은 최소한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 ‘센’ 언론을 욕한다고 ‘개념’있게 보이는 건 아니다.

언론에 대한 불신, 기자에 대한 조롱이 사회 전반에 고정관념처럼 굳어지는 건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언론도 더 펜을 세워야 한다. 민주주의, 민주사회의 보루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언론뿐이다. 반평생 기꺼이 기자질을 해온 사람으로서 기자를 위한 ‘용감한’ 변명을 감히 해봤다. 

세션 1

#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법적 쟁점과 규제 방안

홍성수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 I. 들어가며

혐오표현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00년대 들어 몇몇 문헌들에 의해<sup>1)</sup> 미국의 혐오표현 문제가 소개된 바 있으나 본격적으로 사회문제화되고 관련 운동이나 연구가 시작된 것은 대략 2013년 이후부터이다. 2013년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게시판(이하 “일베”)을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 호남, 여성, 외국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게시물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특히 종합편성채널에서 5.18 관련 왜곡보도가 문제가 되면서 혐오표현 문제가 본격적으로 의제화된 것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베 폐쇄나 종편 제재를 거론하기 시작하고, 언론에서도 혐오표현 문제를 보도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sup>2)</sup> 그 이후에 시민사회와 학계에서의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했으며 관련 입법안도 제출된 바 있다.

1) 이재진 (1999). 혐오언론(hate speech) 현상에 대한 법제론적 고찰. <언론학보>, 19권, 99-125면; 이재진(2000). 가상공간에서의 혐오언론의 문제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6호, 104-146면; 조소영 (2002). 적의적 표현행위(hate speech)의 헌법적 좌표. <공법연구>, 제30권 제4호, 124-130면; 조소영 (2004).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방법론에 대한 헌법적 평가 - 대학내에서의 적의적 표현행위에 대한 제한학칙을 중심으로. <헌법판례연구>, 6권, 91-111면; 심경수 (2007). 증오언론과 십자가 조각에 관한 판례경향. <미국헌법연구>, 제18권 1호, 39-80면 등 참조.

2) 인권·시민사회의 대응 중에서는, <차별의 표현, 표현의 차별: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 토론회>(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 민주노총교육원, 2013. 7. 18.)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혐오표현의 개념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은 입법안들이 제출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발표문에서는 혐오표현에 관한 각종 쟁점들을 정리하고, 혐오표현의 사례와 적절한 규제방안을, 특히 사이버상 혐오표현을 중심으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 II. 혐오표현의 개념과 쟁점<sup>3)</sup>

### 1. 혐오표현의 의미

국제사회의 논의와 시민사회·학계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혐오표현(hate speech)’<sup>4)</sup>의 개념은 대략 다음과 같다. 먼저 혐오표현은 혐오를 표출하는 것인데, 혐오는 일시적이고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소수자집단에 대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관념이나 감정을 뜻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이데올로기, 예컨대 인종주의, 호모포비아, 제노포비아, 자민족중심주의, 반유대주의, 백인우월주의, 성차별주의 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 둘째, 혐오표현의 소수자(집단)에 대한 차별이다. 혐오표현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혐오감정과 구분되며, 부정적 의견표시부터 시작해서 소수자를 모욕·조롱·위협하는 것,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대·폭력을 정당화하거나 고취·선동하는 것 등이 혐오표현의 범주에 포함된다. 셋째, 혐오표현은 표적집단인 소수자를 향한 공격이기도 하지만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즉, 혐오표현은 선동(incitement)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서 일반 청중들을 향해 ‘소수자를 차별하라’고 하고, 실제로 그런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실제 법적 규제도 발달해있다. 국제적으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조항을 찾을 수 있으며, 몇몇 개별국가들에도 혐오표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다.<sup>5)</sup>

3) 이 장은 홍성수 (2015). 혐오표현의 규제 :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 사회>, 50호, 290-301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편의상 일일이 인용표시를 하지는 않았다.

4) 본고에서는 ‘혐오표현’이라고 통칭했다. ‘hate’를 차별적인 의견이나 신념부터 직접적인 선동까지 포괄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려면, ‘혐오’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증오’는 보다 격렬한 감정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격앙되고 불합리한 비난, 적의, 혐오의 감정”을 뜻하는 ‘hatred’의 번역어나 그런 격정적 상태에서의 범죄행위를 뜻하는 hate crime(증오범죄)의 번역어로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speech’는 의견이나 사상을 표출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출판, 유포, 예술, 상징물 게시 등)를 뜻하기 때문에, ‘언론’, ‘발언’, ‘언설’보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인다.

5)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나라로는 유럽의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불가리아, 프랑스,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체코, 덴마크,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슬로베니아, 미주지역의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멕시코, 우루과이, 그 외의 지역의 뉴질랜드,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호주(일부 주) 등이 있다. Article 19 “Responding to Hate Speech Against LGBTI People (Policy Brief)”, 2013;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FRA), “Hate Speech and Hate Crimes against LGBT Persons” 참조.

## 2. 혐오표현 규제 옹호론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무엇보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의 해악에 주목한다. 정치철학적 측면에서 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파괴한다는 지적도 있고,<sup>6)</sup> 혐오표현에 노출된 소수자들이 편견, 공포, 모욕감, 긴장, 자신감·자부심 상실, 자책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회심리학적·의학적 근거도 제시된다.<sup>7)</sup> 또한 편견과 혐오가 전염성이 강하고, 후대에 전승되기도 하며, 조직적 차원으로 확산된다는 문제도 있다. 실제로 혐오표현은 발화주체와 대상의 측면에서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에 비해) 파급효가 크고 광범위하다. 혐오표현은 소수자를 표적집단(target group)으로 삼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악의 범위가 소수자집단 전체로 확대되며, 청중들로 하여금 차별에 동참하게 만드는 선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혐오표현은 차별행위와 폭력, 심지어 제노사이드와 같은 대규모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sup>8)</sup> 따라서 표현단계에서의 예방적·선제적 조치가 정당화되는 것이며, 그래서 명예훼손이나 모욕보다 혐오표현의 해악을 더 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규범적으로는 혐오표현이 ‘인간존엄’, ‘평등’,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 민주적 법치 국가의 중요한 가치를 파괴한다는 점이 지적된다.<sup>9)</sup> 인권·기본권이론상으로 표현의 자유가 절대불가침은 아니며, UN <자유권규약> 19조 3항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 존중 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혐오표현도 가능하면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혐오표현을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혐오표현이 기본적으로 ‘소수자의 문제’인 이상, 혐오표현에 맞선 대항표현(counter-speech)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sup>10)</sup>

6) Waldron (2012). *The Harm in Hate Speech*. 4-5면. 홍성수·이소영 역 (2016 근간). <혐오표현의 해악>.

7) Dovidio et al. (2013).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in J. F. Dovidio et al. (ed). *The Sage Handbook of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3-28면 참조. 그 외에도 Ehrlich et al. (1995). *The Traumatic Impact of Ethnviolence*. in Lederer and Delgado (ed). *The Price We Pay*. 62-79면 참조; 한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의 해악을 조사·연구한 것으로 한국계이민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14). 2014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 조사.; 이호림 (2015). <소수자 스트레스가 한국 성소수자(LGB)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국가인권위원회 (2014).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도 연구용역보고서) 등 참조.

8) 대표적으로 Allport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특히 14-15면 참조.

9) Fariior (1996). *Molding the Matrix*. *Berkeley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4(1), 3-6면 참조.

10) Nielsen (2012). *Power in Public*. in Maitra and McGowan (ed). *Speech & Harm*. 148-173면 참조.

### 3. 혐오표현 규제 반대론

혐오표현 규제 반대론에서는 혐오표현이 부적절한 말일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 소수자 ‘집단’이 해악을 입는다는 것은 너무 막연하며, 그것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본다. 특정인에게 해악을 끼쳤다면 민사구제로 해결하면 되고, 차별이나 폭력으로 나아갔을 때 형사처벌이나 민사구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될 뿐, ‘표현’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설사 사회적 해악이 있다고 해도 표현 자체는 ‘사상의 자유시장’을 통해 그 해악을 치유하는 것이 규제 남용의 가능성 등의 부작용도 적고,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도 비껴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것이 발화된 혐오표현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 혐오표현의 확산을 막는 데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며, 소수자의 주체성 강화나 사회의 내성을 기르는 측면에서도 더욱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다.<sup>11)</sup>

혐오표현에 대한 법규제가 과연 규제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예컨대 ‘선동’만 처벌한다면, 선동조는 아니지만 내용상으로는 심각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sup>12)</sup> 혐오주의자들은 표현방법을 바꿔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표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나갈 수 있다. 또한 혐오표현의 금지로 인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법적 처벌에만 집중된다는 문제도 있다.<sup>13)</sup> 혐오표현이 ‘금지’되면 사회의 담론이 합법/불법표현으로 이분화되어 다양한 가치판단이 왜곡되고 다원적 해법들이 질식될 수 있으며, 혐오표현의 원인이 되는 정치·사회·경제적 배경을 도외시하고 혐오표현의 ‘발화자’ 처벌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문제도 있다.<sup>14)</sup>

---

11) Rosenfeld (2012). Hate Speech in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in Herz and Molnar (ed), *The Content and Context of Hate Speech*. 282면; Baker (2012). Hate Speech. in Herz and Molnar, 앞의 책, 73면 이하; Strossen (2012). Interview with Nadine Strossen. in Herz and Molnar, 앞의 책, 387면; Walker (1994). *Hate Speech*. 162-163면; 이재승 (2010). <국가범죄>. 575-576면 참조.

12) Sorial (2015). Hate Speech and Distorted Communication. *Law and Philosophy* 34, 300-301면.

13) Weinstein (1999). *Hate Speech, Pornography, And Radical Attacks On Free Speech Doctrine*, 155-156면; Baker (2010). 앞의 글("Autonomy and Hate Speech"), 150-151, 153면; Baker (2012). 앞의 글("Hate Speech"), 75면 등 참조.

14) 이것은 법(소송)을 통한 사회변동의 기본적인 한계이기도 하다. 홍성수 (2010). 소송을 통한 사회변동전략의 한계: 미국의 성희롱 소송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 38호, 218-220면; 홍성수 (2013). 제9장 법과 사회변동. 김명숙 외. <법사회학: 법과 사회의 대화>. 참조.

#### 4. 소결 : 혐오표현 규제의 정당성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국가가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혐오표현으로 인한 해악의 심각성은 엄연한 현실이다.<sup>15)</sup> 현실적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맞받아치기(speaking back)’나 사상의 자유시장의 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개입’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법적 규제는 혐오표현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도 있지만 공동체 차원의 상징적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실제로 혐오와 차별을 몰아내는 조치로도 연결될 수 있고, 소수자집단에게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국가’의 ‘법’에 의해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그 점에 대해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현실에서도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면, 그런 상징적인 조치들은 불필요할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이 연방 차원의 혐오표현 금지법을 굳이 두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혐오표현 단계를 넘어서는 차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혐오표현차별법을 제외한 다양한 반강제적·자율적인 조치들이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6)</sup> 만약 우리가 그런 사회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혐오표현금지법은 불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그렇게 ‘법적 강제 없이’ 맨 몸으로 이 사회에서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엔 혐오표현금지법을 반대하는 명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 혐오표현의 구체적인 규제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면서도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sup>17)</sup> 일단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단 하나의 선택지는 없다. 법적 규제부터 시작해서 사회 각 영역에서의 자율적인 조치들, 그리고 교육 등의 형성적 조치까지 모든 수단들이 적절히 배치될 때 효과적인 규제가 가능할 수 있다. 또한 반드시 ‘형사범죄화’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형사범죄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차별금지법 등을 통해 혐오표현을 분명하게 불법화하는 것만으로도 상징적인 차원의 조치는 충분하며, 차별시정 외에 민사구제나 인터넷상의 여러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15) Delgado and Stefancic (1999), *Must We Defend Nazis?*. 3장 참조.

16) 홍성수 (2015. 8. 19). ‘혐오할 자유’ 보장하는 미국? 멋모르는 소리!. <한겨레21> 제1075호 참조.

17) 이러한 문제의식은 앞의 홍성수 (2015). 301-319면 참조.

### Ⅲ. 사이버 혐오표현의 사례와 증오선동

#### 1. 주요 사례

##### 1) 외국인/인종/종교적 혐오표현

“한국 내 서열순위가 불체자 > 한국인인거 같습니다. 이게 다 KKK단 같은 인종청소주의자들이 없어서입니다.”<sup>18)</sup>

“외노 다문화 불법짱깨들 다 쫓아내라” (네이버 댓글)

“중소기업에 외노자 받지마라. 노동시장 왜곡하고 내수시장 망치고 치안악화된다. 다문화 결사반대!” (네이버 댓글)

##### 2) 성소수자 혐오표현

“힘냅시다 화이팅! 동성애 성문화축제(퀴어문화축제) 물러가라! 호모좀비들과 항문폭도들에 맞서 진리를 위해 싸웁시다!” (네이버 블로그, 성다수자 인권위원회)

“한국에서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에 걸리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미국대사관에서는 동성애를 더욱 조장하는 행동을 한국에서 계속 하고 있다” (오직예수사랑선교회)

##### 3) 5.18광주민중화운동 왜곡·부정 (호남 혐오)

“5.18폭도○○○들이 국민혈세 그만 처먹어라 유공자는 계엄군이 유공자지 ○○ 100명 남짓 뒤진 폭동인데 유공자가 몇천 명이나 ○○” (일베)

“(5.18희생자 유족 사진을 게시하며)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 착불이요” (일베)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 (지만원 시스템클럽)

##### 4) 여성 혐오<sup>19)</sup>

“여자를 합법적으로 강간하는 방법: 친구 한 명이랑 짜고 친구가 강간범 역할하고 여자 한 명 잡아서 강간하는데 내가 우연히 등장해 말리는 척하면서 친구한테 맞는 시늉을 하면 그 여자는 자기 살 길 찾아서 도망갈 것이다. 그럼 강간도 하고 빨간줄도 안그리고 이런식으로 돌아가면서 한 명씩 역할 바꾸면서 즐기면 된다” (일베)

18) 국가인권위원회 (2010). <인터넷에서의 인종적 표현 관련 모니터링> 사례 중 일부.

19) 한국여성단체연합 (2014).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모니터링 보고서.

## | 정기세미나 발제문 |

사이버공론장에서의 혐오와 모욕표현 이대로 괜찮은가?

“요즘 김치녀들은 취직이면 직장 그만두고 오전에 스타벅스 가서 시댁욕하거나 남편자랑하거나 오후엔 요가 쳐가고 저녁엔 남편와도 밥할 줄 몰라서 라면 준다면서요?... 그러니 하는 일이 맨날 설거지랑 흠서빙, 청소 이런거 하는거죠. ㅋㅋ” (네이버 댓글)

## 2. 혐오표현과 증오선동

현재 한국사회의 혐오표현은 대개 사이버상에서 공표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실공간보다 더 규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수많은 사이버상의 혐오표현을 어떻게 규제대상으로 삼을 것인지가 문제다.

이와 관련하여 혐오표현을 단순히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것과 의도적인 선동으로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 전자가 혐오의 감정이나 차별의 의견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후자는 타인에게 차별과 폭력을 함께하자고 목적의식적으로 선동하는 것이다. 편의상 전자를 ‘혐오공표’로 후자를 ‘증오선동(incitement to hatred)<sup>20)</sup>’이라고 칭하도록 하겠다. 국제인권조약에서도 차별·적의·폭력에 대한 “선동(incitement)”과 “고취·고무(advocacy)”를 혐오표현의 중요한 구성요건으로 보고 있으며, 독일, 캐나다, 영국 등 해외의 입법례에서도 이러한 구성요건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덴마크나 뉴질랜드는 의도적인 혐오표현의 공표 정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sup>21)</sup> 좀 더 구체적으로 혐오공표와 증오선동을 구획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 이주영 (2015).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 증오선동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통권 제138호, 199-201면. 이를 ‘차별선동(incitement to discrimination)’이라고 칭하는 견해[김지혜 (2015). 차별선동의 규제: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조>, 제64권 제9호, 40-43면]도 참조.

21) 영국 공공질서법 18(1) : “위협하거나, 모욕적이거나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사용한 사람 또는 그러한 글을 전시한 사람은, a) 종교적 혐오를 선동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b) 종교적 혐오가 선동될 수 있는 환경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범죄의 책임이 있다.”; 덴마크 형법 266b: “공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퍼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진술하거나 또는 다른 공표를 한 모든 사람은, 그것에 의해 사람들의 집단이 그들의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적 배경, 믿음 또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위협받거나 조롱되거나 비하를 당한 경우,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구금형으로 처벌된다.”

## 〈선동 테스트(Incitement Test)〉<sup>22)</sup>

### 테스트 1 맥락 (폭력, 차별에 관련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

- 폭력 등 사회적 충돌이 있었는지 여부
- 제도화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
- 청중과 소수자집단이 서로 충돌한 역사가 있는지 여부
- 차별금지법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이 있는지 여부
- 미디어가 얼마나 다원적이고 공정한지 여부

### 테스트 2 발화자

- 발화자의 공식적 지위
- 발화자의 권위와 영향력
- 특히 정치인, 공직자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다뤄져야 함

### 테스트 3 의도

- 혐오를 고취하는 데 관여하려는 의도적인 노력
- 소수자집단을 특정하려는 의도적인 노력
- 자신의 발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인지 여부
- 표현의 확대범위와 반복성

### 테스트 4 내용

- 무엇을 고취하고 있는지 여부 : 폭력 선동 여부 등
- 청중은 누구인가?
- 차별선동의 대상(소수자집단)은 누구인가?
- 표현의 자극성, 도발성, 직접성의 정도
- 배제사유 : 예술적 표현, 종교적 표현, 학술적 의견, 공적 담론에 기여하는 의견인 경우
- 명백한 허위인지, 가치판단의 문제인지 여부

### 테스트 5 표현의 범위와 크기

- 제한된 청중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
- 표현의 전파 수단
- 표현의 강도와 규모 : 반복성, 전파 범위 등

### 테스트 6 해악 발생의 가능성

- 차별, 폭력, 적대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요청인지 여부
- 화자가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
- 청자가 실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
- 소수자집단이 실제로 차별을 겪고 있는지 여부

22) Article 19, “Prohibiting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Policy Brief)”, 2012, 29–40면; “Rabat Plan of Action on the prohibition of advocacy of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that constitute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emanating from the four regional expert workshops organised by OHCHR, in 2011, and adopted by experts in Rabat, Morocco on 5 October 2012, 22단락;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General Recommendations No. 35: Combating Racist Hate Speech, 26 September 2013, Fortieth Session, Supplement No. 18 (A/40/18), 15단락; Guyton (2013). Tweeting ‘Fire’ in a Crowded Theater: Distinguishing between Advocacy and Incitement in the Social Media World. *Mississippi Law Journal* 82(3), 725–728면; Mendel (2006). Study on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ing to Incitement to Genocide or Racial Hatred, for the UN Special Advisor on the Prevention of Genocide. 44–61면; 김지혜 (2015). 앞의 글, 69–71면 등 참조.

이 테스트는 대체로 혐오표현의 '해악'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미 제도화된 차별이 존재하고 청자가 실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고려하여 특별히 해악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행위를 증오선동으로 구분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부주의하거나 의도성 없는 감정적 표현보다는 실제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악의적인 혐오표현을 규제하자는 것이기도 하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는 명백·현존 위험의 법칙 등 구체적인 해악이 외부에서 지각가능한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기준으로 삼은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그러한 경우에 해악이 더 크기도 하고, 또 법적으로 일관되게 규율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위의 테스트를 기준으로 하여 '증오선동'만을 법적 금지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혐오표현반대론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우려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것은 죄형법정주의 등 엄격한 법치주의 원칙이 지배하는 형사법 영역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때 혐오공표와 증오선동을 별도로 구분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비판도 간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선동이 아니라 단순 의견표명만으로도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즉, 실제로는 더 해악적인 혐오공표가 법적 규율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법적 규율이 '증오선동'에만 한정될 경우, 전략적 행위자들은 얼마든지 법적 규율을 피할 수도 있다. 예컨대, Ⅲ.1에서 제시한 사례들을 보면, 혐오공표인지 증오선동인지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동일한 표현을 누가 어떤 맥락에서 하는가에 따라 혐오공표와 증오선동의 구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법 구성요건에 최대한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도 있겠지만, 결국 구체적인 결정례와 판례에 의해서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차피 법으로 모든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없으며, 또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방법은 법뿐만이 아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법'의 취지와 효과를 적절한 수준에서 상정할 필요가 있다. 법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법적 규율 없는 자율적 해결을 기대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규제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규제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다면 강성형법적 접근보다는 차별시정 등 좀 더 유연하고 부작용이 적은 해법을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sup>23)</sup> 또한 법에 의해 '금지'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 예컨대, 위에서 설명한 증오선동 정도로 - 적절히 좁힘으로써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입법안들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최초의 혐오표현금지법인<sup>24)</sup>에서는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공연히 사람을 혐오한 자는 1년 이

23) 이러한 주장으로 홍성수 (2015), 앞의 글, 특히 310면 이하 참조.

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대 의원 대표발의, 2013. 6. 20.)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혐오표현금지법의 일종인 홀로코스트부정죄(law against Holocaust denial)의 한국판으로 도입된 5.18부정금지법<sup>25)</sup>에서는 “누구든지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들 입법은 혐오표현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개념규정하고 있는 셈인데, 남용을 막기 위한 어떠한 입법적 조치 없이 사법적 해석에 너무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다. 이런 조문들로는 혐오표현 규제 반대론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비껴가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sup>26)</sup>

## IV. 사이버상 혐오표현의 규제 방안

### 1. 사이버 혐오표현의 문제

그동안 일반적인 혐오표현 문제와는 별도로 ‘사이버상의 혐오표현’ 문제가 독립적인 주제로 다뤄져왔으며,<sup>27)</sup>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에서도 사이버 혐오표현을 별도로 의제화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sup>28)</sup> 유럽연합에서는 지난 2016년 6월에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25)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2016. 6. 1.). 이외에도 이번 국회에도 비슷한 취지의 두 법안이 제출되었고(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6. 7. 20.;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6. 6. 14.). 이전 국회에서도 5.18 외에 반인륜범죄 및 민주화운동, 일제 찬양 발언을 규제하는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3. 5. 27.); 일제강점하 민족차별 옹호행위자 처벌법안(원희룡 의원 대표발의, 2005. 8. 12.);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등을 부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4. 8. 14.);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4. 6. 20.) 등.

26) 게다가, 홀로코스트 부정죄는 소수자(유대인) 차별과 대량학살의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된 것인데, 과연 한국에서의 일제 찬양, 반인륜범죄, 민주화운동 부인 등이 그렇게 연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은 호남인 차별과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규제필요성을 주장하는 김재운(2015).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 방안. <법학논총>, 제35권 제2호, 244면 참조.

27) Foxman and Wolf(2013). *Viral Hate: Containing Its Spread on the Internet.*; Julian Baumrin(2011). Internet Hate Speech and the First Amendment, Revisited. *Rutgers Computer and Technology Law Journal.*; LaShel(2011). Hate Speech in Cyberspace: Bitterness without Boundaries. *Notre Dame Journal of Law, Ethics & Public Policy.*; Burnap and Williams (2015). Cyber Hate Speech on Twitter: An Application of Machine Classification and Statistical Modeling for Policy and Decision Making. *Policy & Internet* 7(2), 223–242면 등 참조. 국내 문헌 중에서는 김민정(2014).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언론과 법>, 제13권 제2호, 131–163면; 이재진(2000); 이상경(2015).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반사회적 혐오표현의 규제. <헌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197–239면;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여성혐오 문제에 대해서는 김수아(2015). 온라인상의 여성혐오표현. <페미니즘연구>, 제15권 제2호, 279–317면 등 참조.

28) Gagliardone et al (2015). *Countering Online Hate Speech*. UNESCO; 유럽의 경우에는 Council of Europe,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concerning the Criminalisation of Acts of a Racist and Xenophobic Nature Committed through Computer Systems, ETS No. 189, 2003.1.28.; ECRJ General Policy Recommendation No.6: Combating the dissemination of racist, xenophobic and antisemitic material via the Internet, Adopted by ECRJ on 15 December 2000; Blarcum (2005). Internet Hate Speech: The European Framework and the Emerging American Haven. *Washington and Lee Law Review* 62(2), 781–808면; Banks (2011). European Regulation of cross-border hate speech in cyberspace, *The Limits of legislation. European Journal of Crime, Criminal Law and Criminal Justice*, 19(1), 1–13면; Keen and Georgesc (2016). *BOOKMARKS: A manual for combating hate speech online through human rights education*. Council of Europe. Revised edition. 2등 참조.

브,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유럽에서 혐오표현 확산 금지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제정하기도 했다.<sup>29)</sup> 유럽이사회가 지원하는 혐오표현반대운동(No Hate Speech Movement) 캠페인에서도 사이버 혐오표현이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아예 온라인혐오표현(Hate Speech Online)을 사이버혐오(Cyberhate)<sup>30)</sup>라고 개념화하기도 한다. 유태인 혐오에 반대하는 반명예훼손연맹(Anti-Defamation League, ADL)에서는 아예 사이버 혐오를 “반유대주의적인, 인종차별적인, 편견적인, 극단주의의 또는 테러리스트의 메시지 또는 정보를 전자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사용하여 퍼뜨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그 기술로 인터넷(웹사이트, SNS, Web 2.0 사용자가 생산한 내용, 데이트 사이트, 블로그, 온라인게임, 인스턴트 메시지, 이메일 등)과 기타 컴퓨터와 휴대폰에 기반한 정보통신기술을 언급하고 있다.<sup>31)</sup>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사이버 혐오표현을 별도로 다루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사이버 혐오표현의 특수성 때문이다. 사이버 혐오표현은 단순히 특이해서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영역이며, 더 나아가 혐오표현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는 것이다. 사이버 혐오표현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전파되며, 출판물처럼 영구히 남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혐오표현 규제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논자인 월드론은 혐오표현은 “정상적인 지위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명예 또는 시민적 존엄의 기초”를 훼손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사인 간에 말로 하는 혐오표현(slander)보다는 문자나 방송에 의한 혐오표현(libel)이 문제가 되는 해악을 초래한다고 설명한다.<sup>32)</sup> 혐오표현이 지속적으로 게시됨으로써, 소수자에게 “너희들은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이 아니다”, “차별받을 것을 각오하라”고 하는 것이 혐오표현의 핵심적인 해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취지에서 문자나 방송뿐만 아니라 로고, 마스크트, 연방기, 기념물(대표적으로는 나치문양) 등의 게시도 중대한 해악을 낳게 되는 것이며, 사이버 혐오표현도 그런 ‘지속성’의 차원에서 더욱 특별한 해악을 낳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혐오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생각이 확산되고 강화되는 것, 소위 ‘집단 극화(group polarization)’는 사이버공간에서 특별히 더 문제가 된다.<sup>33)</sup> 실제로 해외에서 사이버공간은 혐오집단들의 주 무대이며, 한국에서도 혐오표현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가 문제되면서 부터였다. 일회성으로 그칠 수도 있는 혐오의 감정이 커뮤니티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조직적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29) 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 URL: [http://ec.europa.eu/justice/fundamental-rights/files/hate\\_speech\\_code\\_of\\_conduct\\_en.pdf](http://ec.europa.eu/justice/fundamental-rights/files/hate_speech_code_of_conduct_en.pdf)

30) Council of Europe (2012). Mapping study on projects against hate speech online. 9면 참조.

31) ADL(2010). *From Responding to Cyberhate*, Toolkit for Action. 1면.

32) 앞의 Waldron(2012). 제3장 참조.

33) 선스타인(2011).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 선스타인 (2009). <루머: 인터넷시대에 던지는 新명명비판> 참조.

그런데 거꾸로 사이버공간은 사상의 자유시장이 작동하기에 적합한 공간이기도 하다.<sup>34)</sup> 일례로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로 규정하면서,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sup>35)</sup> 앞에서 언급한 ‘대항표현’에 관한 논의를 적용하자면, 자력화한 소수자가 혐오표현에 ‘맞받아치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 역시 사이버공간인 것이다.<sup>36)</sup>

## 2. 사이버 혐오표현의 규제 문제

### 1) 인터넷 자율규제와 사이버 혐오표현 규제

위에서 언급한 사이버 공간의 개방적·참여적 특성은, 사이버 공간 규제의 ‘현실적’ 어려움과 연동되면서, ‘규제반대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금지와 처벌 위주의 전통적인 명령통제식 규제보다는 소위 ‘자율규제(self-regulation)’가 선호된다.<sup>37)</sup> 예컨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불법정보를 차단하게 하고, 정부는 그것을 간접적으로만 통제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자율규제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sup>38)</sup> 실제로, 유럽 차원에서 진행되어온 불법 인터넷정보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1999년 “더 안전한 인터넷 사용 증진을 위한 다년간의 공동체 행동계획 (Multiannual Community Action plan on promoting safer use of the Internet)”,<sup>39)</sup> 2기 행동계획(2003-2004),<sup>40)</sup> 2005년 “더 안전한 인터넷 플러스(Safer Internet Plus 2005-2008)” 프로그램,<sup>41)</sup> 2008년 새로운 안전한 인터넷 프로그램(New Safer Internet programme 2009-2013)을 지지하는 보고서<sup>42)</sup> 등으로 이어진 유럽의 인터넷 규제는 인터넷사업자의

34) 이와 관련된 여러 논의가 있지만, 한국 문헌으로는 이태희 (2010). <변화의 지향: 사상의 자유시장과 인터넷의 미래> 참조.

35) 헌재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36) 메갈리아를 일베의 남성혐오에 맞서서 여성들이 대항표현을 조직한 것이라고 보는 정희진 (2016. 7. 30.). 메갈리아는 일베에 조직적으로 대응한 유일한 당사자. <한겨레신문>, A3면 참조.

37) 전통적인 명령통제식 규제와 자율규제의 비교에 대해서는 홍성수 (2008). 규제학: 개념, 역사, 전망. <안암법학>, 26권, 5면 이하 및 12면 이하 참조.

38) 자율규제는 특히 인터넷에 대한 규제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Price and Verhulst (2000). 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and the Internet. in Watermann and Machill (ed),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3-27면 및 133-198면; 황승흠 외 (2004). <인터넷 자율규제>; 황승흠 (2014). <인터넷 자율 규제와 법>. 참조.

39) Decision No 276/199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January 1999.

40) Decision No 1151/200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June 2003.

41) Decision No 854/200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42)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self-regulation-better-internet-kids>; Proposal for a Decis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자율규제와 그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지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sup>43)</sup>

이러한 접근은 혐오표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유럽연합은 세계의 주요 IT회사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유튜브와 함께 결성한 EU 인터넷 포럼에서 “불법적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이 강령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인터넷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혐오표현<sup>44)</sup>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절차를 시행하겠다고 한 공적 약속의 성격을 갖는다.

## 2) 인터넷에 대한 현행 규제방법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행되고 있는 몇 가지 규제방법들이 있다. 여기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이용자의 삭제 요청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임의적 임시조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취급 거부·정지·제한 명령[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25조 1항],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에 대한 분쟁조정(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등이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제44조의4)도 규정되어 있다.

이 중 임시조치나 방심위의 행정심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문제가 있어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긴 하지만,<sup>4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방법 자체를 없앨 것이 아니라면, 혐오표현이야말로 다른 규제대상보다 사회적 해악이 더 크고 규제 필요성도 있다. 다만 임시조치나 행정심의 대상에 혐오표현을 무작정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특별)형법이나 차별금지법에서 혐오표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금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행정심의의 경우 명백한


43) 자세한 것은 Price and Verhulst (2005), *Self-Regulation and the Internet*. 19면; 김유승 (2005). 인터넷 콘텐츠 공동규제 연구: 유럽연합의 ‘더 안전한 인터넷 사용증진을 위한 행동계획’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16호, 83-118면; 김유승 (2006). 인터넷 공간의 자유와 규제: 공동규제 모델의 발전을 위한 모색.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20호, 85-118면; 장우영 (2005). EU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4호, 3-33면 참조. 이러한 자율규제는 효율성, 유연성, 비용 등의 측면에서 명령-통제식 규제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지만 [Baldwin et al. (1998). Introduction, in Baldwin et al. (ed), *A Reader on Regulation*, 28면]. 특정한 몇몇 분야에서만 일부 성공 사례가 있을 뿐. 전통적인 규제를 대체하는 일반적인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44) 이 행동강령에서의 혐오표현은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국적 또는 민족적 기원에 관련된 소수자 집단에 대한 폭력 또는 혐오의 공개적 선동으로 한정되어 있다.

45) 심우민(2014). 임시조치 합헌결정의 입법학적 검토.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1권 제1호; 박경신(2009). 인터넷임시조치제도의 위헌성. <중앙법학>, 통권 제33호; 박경신(2015). 인터넷 상 ‘불건전정보’ 시정요구제도와 표현의 자유: 현재 2012. 2. 2011헌가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합헌결정. <법학논총>, 제32권 제4호; 지성우 (2012). SMART미디어시대 인터넷 콘텐츠 심의의 규범적 문제점과 법제정비방안. <성균관법학>, 제24권 제3호; 이재진·이정기(2012). 인터넷 포털의 ‘임시차단’ 조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6권 제3호; 박경신(201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내용심의의 위헌성. <법학논총>, 제27권 제2호; 황성기(2005). 현행 인터넷 내용심의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법적 규제시스템과 자율규제시스템의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15호 등 참조.

불법이 아닌 것들까지 적용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그래서 더욱 엄밀한 법적 개념이 필요하다. 또한 혐오표현이 일종의 집단 명예훼손(group defamation)의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면,<sup>46)</sup>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각종 조치들은 혐오표현에도 적용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 때 언론 보도의 경우에는 임시조치보다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구제절차를 따르게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sup>47)</sup> 이 경우에도 혐오표현의 개념이 명확해야 일관성 있는 규율이 가능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 역시 구체적인 법적 개념 없이 혐오표현을 함부로 규제한다면 또 다른 검열과 감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떤 식으로든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V. 결론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찬반 논의가 있지만, 더 이상 ‘불개입’이 선택지가 되긴 어렵다. 더욱이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법 없이 혐오표현에 맞서자’는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혐오표현을 방치하겠다는 입장은 헌법상 평등과 차별금지원칙과도 부합하기 어렵다. 다만, 규제 반대론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우려는 의미가 있으며,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규제 대안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혐오표현의 규제에는 형사범죄화, 민사구제, 차별시정, 형성적 조치 등 다양한 조치들이 있고, 이것들을 단계별, 층위별, 분야별로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기본적으로 사이버 혐오표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사이버 공간에 특화된 여러 규제방법들, 예컨대, 자율규제나 행정규제, 분쟁조정 등이 - 개선의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 운용 중인데, 이들 방법을 통해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혐오표현의 개념을 적절히 법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혐오표현 중 ‘중요선동’에 해당하는 것을 일차적인 법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6) 앞의 Waldron(2012), 제3장 참조.

47) 이러한 취지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 (201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취지 및 해설. <언론중재>, 통권 제137호, 78쪽 이하 참조.

세션 2

# 판례로 본 인터넷 공간에서의 모욕과 의견표현 자유의 한계

오선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5중재부장

## I. 들어가는 말

### 1. 인터넷 공간에서의 의견표현의 특수성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1) 인터넷을 통하여 창출된 가상의 공간('인터넷 공간'<sup>1)</sup>이라고 한다)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다른 커뮤니케이션과 비교하여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쌍방향성, 탈중심성, 익명성, 시공간초월성, 전파성 등이 그것이다.<sup>2)</sup> 이렇게 몇 단어로 그 성격을 규정하지만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이러한 특징들은 기존의 매체들이 가지는 독점적인 지위를 무너뜨렸다. 개개인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이하 'SNS'라 한다)나 블로그, 인터넷 카페, 각종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뿐만 아니라 기존 언론 매체의 기사, 방송 등 보도나 타인의 소셜 미디어<sup>3)</sup> 글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하여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진다.

1) 통상 사이버공간[cyberspace, 미국의 소설가 윌리엄 깁슨(William Gibson, 1948~)의 소설 <불타는 크롬(Burning Chrome)>, <뉴로맨서(Neuromancer)>등을 통하여 알려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김보라미 (2009), 네트워크화된 공론장인 인터넷의 특성에 따른 명예훼손성립에 관한 검토, <Law & Technology>, 제5권 제4호, 46면 이하.

3) 소셜 미디어의 개념 정의에 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SNS 및 포털사이트와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2)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및 비대면성은 의견표현의 장(場)에 다양한 사람들의 폭발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한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지만, 한편으로는 진실되지 못하거나 과장되거나 공격적인 표현이 난무하는 무책임성도 초래하였다. 그로 인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생산되고 모욕적인 언사에 의한 인격적 침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침해는 매우 손쉽게 거의 공짜로 만들어지고, 무분별한 '퍼나르기'에 의하여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소셜 미디어 글 및 댓글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의견표현의 조잡성과 그 피해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sup>4)</sup>

(3) 소셜 미디어 글 또는 댓글에 의한 피해사례 중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아마도 2008년 유명 연예인인 최진실이 자살한 사건<sup>5)</sup>일 것이다. 당시 그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법론이 등장하였고<sup>6)</sup> 자정 노력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러나 그 피해는 날로 커져 유명인 등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으로도 확산되고 있다.<sup>7)</sup> 최근에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악성 댓글 및 SNS상의 모욕성 글로 인해 세월호참사 피해자 유족들이 여전히 정신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고,<sup>8)</sup>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여고사 성폭행 사건의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조롱당하기도 하였으며,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후 이를 추모하는 여성들에 대한 각종 성희롱 표현이 난무하기도 하였다.

## 2. 논의의 전개방향

(1) 종전에는 언론 보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에서 조화를 찾는 것이 언론분쟁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지만, 이제는 소셜 미디어 글 또는 댓글 등에서 충돌하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에 조화로운 해결을 모색하는 것 또한 중요하게 되었다.

4)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의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이견 중.

5) 그 무렵 최진실이 그 전에 자살한 배우 안재환의 고리사채업자였으며 그를 자살로 내몰았다는 루머가 인터넷 공간에서 확산되었고, 그것이 그녀의 자살원인 중 하나라고 추정되었다.

6) 최진실 자살 사건을 계기로 2008년 나경원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모욕죄를 신설하자는 위 법률 개정 법률안을, 장윤석 의원은 형법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여 일반 모욕죄보다 가중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발의하여 많은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결국 위 각 개정법률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7) 2015. 5.경 실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78%의 국민이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해당 응답자의 82%는 현재 사이버 폭력이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별로 또는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5% 뿐이었다고 한다. [출처: 연합뉴스 (2015. 6. 10.), 국민 78%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강화해야.]

8) 구민정 (2016. 7. 27.), 세월호 관련 악성댓글 넘쳐나는데...피해자 명예훼손·모욕 관련 재판은 45건뿐. <헤럴드경제>. URL: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727000581>.

## | 정기세미나 발제문 |

사이버공론장에서의 혐오와 모욕표현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 공간을 현실의 공간과는 별도의 극도로 자유로운 공간으로 상정하거나, 가상 공간 인지 현실 공간인지를 불문하고 의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없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 공간에도 규제가 미쳐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다만 표현의 자유 범주에서 허용되는 의견표현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위법한 표현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2) 이 글에서는 소셜 미디어 글이나 댓글에서 이루어진 개인의 의견표현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고 어떻게 통제되어야 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하는바, 인터넷 공간의 특수성을 직시 하되, 그 특성 자체로부터 일반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그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판례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법리에 의하여 개개의 표현행위가 위법한 것 또는 적법한 것으로 평가되었는지,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과연 그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인터넷 공간에서의 위법한 의견표현에 대한 통제 내지 침해 법익의 구제가 어떤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간단히 개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명예가치의 보호 사이에 보다 조화로운 해결방법에 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3) 한편 소셜 미디어 글이나 댓글 등에 의하여 사람의 명예는 물론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사생활의 비밀, 신용 등 재산적인 법익까지 다양하게 침해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명예가치의 침해 부분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 II. 인터넷 공간에서의 의견표현에 관한 위법성 판단

### 1. 쌍방향적 인터넷 공간에서의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현의 구분

(1) 형법은 의견표현이라도 그로 인하여 타인의 사회적 가치가 저하되고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및 모욕죄(형법 제311조)<sup>9)</sup>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고, 이러한 형법 규정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사실상 가중처벌된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참조).

9) 우리 형법은 모욕죄를 처벌하는 독일의 법을 이어받은 일본의 법을 다시 이어받아 모욕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모욕죄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더 많다. 한편 미국에서는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1964) 사건에서 정치적 표현과 명예훼손이 논란이 된 후 많은 주에서 명예훼손 처벌조항이 사법부에 의해 위헌판단이 내려지거나 입법부에 의해 표현의 자유침해를 이유로 폐지되고 있고, 명예가치의 보호는 민사적인 구제가 기본이 된다(이종광 (2010),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구제*, <우리법연구회 논문집>, 6집, 93면 이하).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임에는 대부분 견해가 일치한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에 관해서도 명예훼손죄와 달리 ‘명예감정’이라고 보는 소수의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다수의 견해 및 판례는 ‘외부적 명예’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가들은 표현행위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모욕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논리 구조는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고,<sup>10)</sup> 판례도 사실의 적시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법리를 형성해 왔다.

(2) 그런데 우리가 문제 삼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권리침해적 의견표현은 그것이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현에 지나지 않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오히려 아무런 사실관계도 전제하지 않고 욕설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쌍방향성’이라는 인터넷 공간 내 의사소통의 특성상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적시된 사실을 전제로 의견만 표현하는 경우도 많고, 대표적으로 댓글이 그러하다. 때때로 언론사의 보도는 어떤 사실에 대한 의혹제기에 불과한데, 댓글에서는 그 사실이 확인된 것임을 전제로 한 의견이 분분하다. 그렇다면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은 과연 전제되는 사실에 관한 사실적 주장인가, 아닌가? 소셜 미디어 글이나 댓글 작성자들은 이러한 구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의견표현 행위가 적법한지 위법한지만 관심사일 것이다. 또 뒤에서 보듯이 ‘모욕’의 개념을 워낙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표현이 명예가치를 훼손한다면 적어도 모욕에 해당하게 되므로 그 구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법정형이 다를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sup>11)</sup>는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되므로 소셜 미디어 글이나 댓글에서 사실을 적시하였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실익이 있다. 다만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현의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진위의 입증 가능한 사실적 주장이 아닌 표현의 자유가 보다 보장되는 의견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10) 사실의 적시 여부와 관련하여, 경향신문이 경제위기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목되던 청와대 경제수석이 다른 책임자들과 함께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내용의 풍자만화를 게재하였다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위 풍자만화는 의견의 표현일 뿐이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고 한 예가 흔히 언급된다.

11) 공직선거법 제251조, 관련하여, 컴퓨터 통신 천리안에서 제15대 국회의원 출마자인 “박지원이 과거 전두환 정권에 붙어 이부했다. -(중략)- 사팔뜨기가 부천 어디에서 출마한다는데”라는 표현 등을 포함한 통신문을 쓴 행위가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부분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을 나열하였다기보다는 그 평가의 표현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 | 정기세미나 발제문 |

사이버공론장에서의 혐오와 모욕표현 이대로 괜찮은가?

(3) 실제로 소셜 미디어 글이나 댓글에 대한 형사처벌 과정에서, 처음에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다가 모욕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주위적으로 명예훼손, 예비적으로 모욕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많은 것도 그러한 구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① 인터넷 법률저널사이트 게시판에 ‘사시로에서 스터디 자주 모집하던 사람 아는 사람 있는지...’라는 제목으로 “이 사람 아는 사람 있어요? 영삼,<sup>12)</sup> 여자 만날 목적으로 스터디를 모집해서 안 좋은 일이었던가, 아는데로...”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에 대한 댓글란에 “또 사고쳤구나 그 얼굴에”, “저런 녀에게 당하는 여자가 바보조. 하여튼 별 거지같은 녀 많아. 저런 것들 날느라고 지 부모도 미역국 먹었겠지”라는 글을 추가로 게시한 사안에서 당초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모욕으로 공소장 변경된 후 유죄가 인정되었고,<sup>13)</sup> ② 무안군청 홈페이지의 ‘참여마당 자유발언대’란에 무안군수를 “악질 친일분자의 직계자손”, “악질 친일분자의 후손”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비방한 글 등을 게재한 사안에서 제1심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가 인정되었다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거쳐 모욕죄가 인정<sup>14)</sup>된 것도 그러한 경우이다.

## 2. 위법 표현의 정도

### 가. 위법한 표현으로서의 모욕의 개념

소셜 미디어 글이나 댓글에서 사용된 어휘 자체 및 표현된 내용이 비평, 풍자와 같은 허용된 범위 내의 것인지, 모욕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인지 등 그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대법원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뒤에서 보는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에서, 대법원의 위 판시를 원용하면서, ‘모욕’은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분리된 개별적 언사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고, 그러한 표현이 상대방을 경멸할 의도로 행해졌는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소 과장된 표현인지 여부, 대화나 토론의 장이 열리게 된 경위와 그 성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법원의 통상적인 법률 해석·적용의 문제라고 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한편 위 결정의

12) 이 사건은 위 이름이 흔히 쓰이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다.

13)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99 판결[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48),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71)].

14)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210 판결[제1심(광주지방법원 2006고단89),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06노998)].

반대의견<sup>15)</sup>은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으로서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 외에 현실 사태를 빗대어 우스꽝스럽게 비판하는 풍자·해학을 담은 문학적 표현,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정중한 표현으로 비꼬아서 하는 말,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을 제시한 바 있다.

#### 나.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위헌 시비

2009년 대학교수 진중권이 진보신당 인터넷 당원 게시판과 자신의 다음 블로그에 조선일보가 피해자 변희재의 글을 심는 이유에 대한 강력한 비판글을 게재하면서, 그 내용 중에 “들보잡(또는 드보르잡)”,<sup>16)</sup> “똥파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으로 기소되었고, 위 표현이 ‘경멸’하고 ‘조롱’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모욕죄가 유죄로 확정되었다.<sup>17)</sup> 그는 상고심 계속 중에 형법상의 모욕죄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위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형법상의 모욕죄 규정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sup>18)</sup>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심사기준 중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최근 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모욕적 행위가 쉽게 전파될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가 과거에 비하여 극심하며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위 결정 반대의견에서는, ‘모욕죄 처벌규정은 제한되는 표현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인 단순히 부정적, 비판적 내용이 담긴 판단과 감정표현까지 규제할 수 있게 되어 규제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sup>19)</sup>를 초래하며, 형사처벌의 적정성에 반하고,<sup>20)</sup> 국제인권기준에도 반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고, 학계를 중심으로 모욕죄는 위헌이라는 주장이 여전히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sup>21)</sup>

15) 아울러 위 반대의견에서는 “성별·종교·장애·출신국가 등에 대한 혐오적 표현(미국 US Code Title 18 Part 1 Section 245(b)(2), 프랑스 언론법 제33조 제3항, 제4항 참조)”, “집단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독일 형법 제130조 참조)”, “오로지 모멸감을 줄 목적으로 상대방을 인신공격하고 비하하는 직설적·노골적 표현 중에서 상대방의 즉각적인 폭력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행위(미국 fighting words law 참조)” 등을 들어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표현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16) 들도 보도 못한 잡놈.

17)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18)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19) 위축효과(chilling effect)는 미국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어 온 법리이다. 법률이 내재하고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억제효과(deterrent effect)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벌칙 부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표현이나 행동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을 말한다[한상규 (2015), ‘일베충’과 ‘들보잡’은 처벌되어야 하는가. <언론중재>, 통권 제137호, 65면].

20) 특히 이 부분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당수의 악의적 표현행위는 주로 청소년들에 의하여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이를 모두 형벌로 규제하는 것은 청소년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범죄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21) 박경신·김가연 (2011). 모욕죄의 보호범위 및 범형의 현행 적용방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44면 이하.

### 다. 모욕 인정례 및 부정례

(1) 판례의 취지를 종합하면,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모멸적인 언사의 사용’이나 ‘경멸하는 표현’에 중점을 두면서도 반드시 ‘통상의 욕설에 해당하는 언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에 의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판단의 표현’의 경우 설령 의견의 개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우선 특정인에 대한 욕설<sup>22)</sup>이나 성적 비하가 담긴 표현,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예를 들면 “씨발 새끼”, “개 같은 년”, “돼지 같은 것” 등의 표현은 별 의문 없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실제 대부분의 모욕죄 처벌사례가 이에 해당하며 인터넷 공간이라 하여 별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비판적 의견이 반어적 또는 풍자적으로 언급된 경우 여기에는 성질상 역설과 과장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보다 폭넓게 허용되는 의견표현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어떠한 표현이 풍자에 해당하는지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행위자와 그 상대방의 입장이 상반될 수 있어 그 구분이 쉽지 않다.

① 교회 신도가 다수의 신도들이 이용하는 다음(DAUM)의 ‘목동제자들’이라는 카페 게시판에 목사님과 반대파 소속 신도들을 지칭하여 소설 속 등장인물의 형식을 사용하여 “쌘쥐” 내지 “3G”, “똥배, 우죄수, 나창녀(나주차), 만고기” 등으로 지칭한 사안에서, 위 표현이 목사님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리 내지 허위를 풍자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였고,<sup>23)</sup> ② 국회의원 선거 시 후보자의 비서관이 트위터에 상대 후보자에 대하여 “아빠가 국회의원 나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아빠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다. 떨어지면 혼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글을 게시한 사안에서는 해당 후보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여 독자적인 정치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다소 비꼬아 표현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풍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24)</sup>

최근 인터넷 공간에서 자주 언급되는 ① “일베충(우익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서 활동하는 회원에 대하여 별레라는 뜻을 덧붙인 말로 쓰임)”이라는 표현,<sup>25)</sup> ② “된장녀(명품과 최신 유행에 민감한 일부 허영심 많은 여성을 비하하는 말로 쓰임)” 라는 표현<sup>26)</sup>도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다.

개인의 가치판단이나 의견이 담긴 표현으로서 모욕으로 인정된 경우로는 다음 사례들이 있다.

22) 댓글에서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인 강용석 변호사에 대하여 한 욕설들이 처벌된 판결례가 다수 있다.

23)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4317 판결(제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2342),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1908)).

24)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774 판결(제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정2135)은 모욕 유죄,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3노832)은 무죄].

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고정3586 판결(확정) 등 다수.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 3. 17. 선고 2009고정79 판결(확정).

① 인터넷신문 조선닷컴 '통일의 꽃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 댓글에서 임수경에 대하여 "...통일에 책임지도 못할 빨갱이...", "인과응보, 사필귀정"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안에서 모욕죄를 인정하였고,<sup>27)</sup> ② 시사평론가 변희재가 자신의 트위터에 성남시장 이재명에 대한 비판글을 게시하면서 "매국노"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정치적 논쟁 또는 비판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sup>28)</sup>

(3) 그 밖에도 논란이 많이 된 사례로 ① 대학교 전자결재시스템 전체 공용 게시판에 게시한 글 중 특정 교수에 대해 "막무가내로 학교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거나 "추태를 부렸다"고 표현한 부분,<sup>29)</sup> ② MBC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란에 출연자에 대해 "학교 선생님이 불법주차에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두고 내리시더니...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가지 더 견인을 우려해 아이를 두고 내리신건 아닌지..."라는 글,<sup>30)</sup> ③ 다음(DAUM)의 '캐디세상'이라는 카페의 게시판에 골프클럽 조장을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고 한 표현,<sup>31)</sup> ④ 태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태안군수에 대하여 "소문대로 역시 젊은 여자분들을 너무 좋아하십니다"라고 한 표현<sup>32)</sup> 등이 있는데 위 사례들에서는 표현 자체로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현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었다.

(4) 한편 소셜 미디어 글이나 댓글에 의한 표현은 아니지만 다음 사례를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다.

① 조선일보가 한겨레신문에 대하여 "처첩신문"이라고 표현한 것이나<sup>33)</sup> 조선일보가 오마이뉴스를 열린우리당이 만든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표현한 것은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되었고,<sup>34)</sup> ② TV(MBC) 뉴스 프로그램에서 특정 변호사가 소송수행을 잘못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람답게 살지 못한 사람"이라거나 "한심하다 못해 본통이 터진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견을 표명한 것은,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으며,<sup>35)</sup> ③ 월간잡지 한국노동단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불법단체", "불법, 불순세력", 그 투쟁을 "정권타도투쟁",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으로 표현한 부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8. 선고 2006노799 판결(확정)[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정885 판결)].

28) 다만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6도11044) 계속 중이다[제1심(인천지방법원 2015고단4324),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5노4696) 모두 유죄 인정].

29)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996 판결[제1심(청주지방법원 2009고정255),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09노409)].

30)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제1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2고단1352), 항소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03노136)].

3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제1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고정223),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07노4403)].

32)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6462 판결[제1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고단643),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09노3200)].

33)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8262 판결.

34)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한편 원심(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나102241 판결)은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다].

35)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다84480 판결.

분은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과장표현에 불과하여 표현의 자유 한계 내에 있는 것인 반면 그 투쟁방법을 “공산계릴라식 빨치산 전투”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바,<sup>36)</sup> 어떤 표현을 개인이 한 것인지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이 한 것인지, 언론에 의한 것이라도 개인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모욕적인 언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동일하게 평가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서 개인에 의한 개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은 그 해당성 자체는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하여 위법성을 배제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 ‘3. 다.’에서 본다.

### 3. 위법성 판단 척도로서의 위법성 조각

#### 가. 판단기준의 차이 여부

(1) 소셜 미디어 글이나 댓글에서 이루어진 의견표현과 현실 공간에서 말이나 글로써 이루어진 의견표현 사이에 그 위법성 판단에 다른 기준 내지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나? 이에 대하여 이른바 ‘적극설’과 ‘소극설’로 구분하는 논의가 있는데, ‘적극설’은 인터넷 공간이 가지는 ‘쌍방향성’이라는 특성상 반박이 용이하기 때문에 공개토론의 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야 하고 기존의 명예훼손 등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이고, ‘소극설’은 기존의 명예훼손 등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나아가 무한 복제 및 신속한 전파에 의하여 피해의 정도가 오히려 크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견해라고 설명된다.<sup>37)</sup> 그러나 이러한 구분의 실질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가치의 충돌이 발생하는 영역에서 형사적 처벌의 필요성 여부를 비롯한 통제의 강도를 논한 것일 뿐이고, 적극설 역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2) 이론적으로 법률이나 민·형사 재판에서 소셜 미디어 글이나 댓글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현실 공간에서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거나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특별한 근거가 없다 (정보통신망법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행위를 가중처벌한다고 하여 판단 기준을 달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형사 사건에서 형을 정하거나 손해배상 사건에서 배상액을 정할 때, 표현 자체나 표현된 내용 외에도 그것이 표현된 장소, 표현 방식,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있어 인터넷 공간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으나 이는 다른 차원의

36)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여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37) 김희준 (2010).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형사법과 헌법이념>, 제3권. 556면.

문제이다.

판례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의견표현과 관련해서도 현실 공간에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의 적시 여부에 관한 구분에서 출발하여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및 모욕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다음에서 보기로 한다.

#### 나. 명예훼손과 관련된 위법성 조각사유

(1) 이 부분은 표현의 정도 문제라기보다는 위법성이 조각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대법원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음을 전제로,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원칙을 천명(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참조)한 이래, ①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②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③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고 함으로써 위법성 평가에 있어 의견표현의 대상이 공적 인물 내지 공적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장 뚜렷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공적 인물 내지 공적 사안에 관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동기에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진실한 사실' 여부는 그 내용 전체의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며(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등),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그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된다 하더라도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공직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이러한 판단기준은 소셜 미디어 글이나 댓글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러한 법리는 다음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한 블로그 운영자가 대통령(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작한 동영상을 자신이 개설한 블로그 글에 게시한 사안에서 검찰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자, 그 블로그 작성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위 기소유예처분은 평등권과 행복

## | 정기세미나 발제문 |

사이버공론장에서 혐오와 모욕표현 이대로 괜찮은가?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다.<sup>38)</sup>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직자 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업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 내지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전과’와 ‘토지소유현황’에 관한 사실은 폭넓은 비판이 허용되는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sup>39)</sup>

(3)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사안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성형수술 불만으로 네이버 지식인 질문, 답변란에 “아.. ○○○가 가슴전문이라.. 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 몰랐네..”, “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 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생 망쳤음... π.π”이라는 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글의 전체적 내용상 성형수술을 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sup>40)</sup>고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4) 한편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볼 때, 소셜 미디어 글이나 댓글의 경우 그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숙고하지 않은 채 함부로 쓰이거나 ‘퍼나르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다음 판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법원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66806 판결 등 참조).

### 다. 모욕과 관련된 위법성 조각사유

(1) 모욕의 위법성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이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

38)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09헌마747 전원재판부 결정.

39) 아울러 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제3자의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그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부정되고, 제3자의 표현물을 실질적으로 이용·지배함으로써 제3자의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이미 널리 유포되어 있는 동영상을 단순히 ‘퍼나르기’를 통하여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비방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40)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위 판결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을 파기하였다.

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고 판시함으로써 사회상규 위반 여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고 하고 있다.

(2) 소셜 미디어 글이나 댓글의 의견표현 중 표현 자체는 모욕에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앞의 사례들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사정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엠비씨(MBC)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란에 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하여 모욕적 언사("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가지 더 견인을 우려해 아이를 두고 내리신건 아닌지..." 등)가 포함된 비판글을 올린 사안에서, 모욕적 언사가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전체적 내용에서 벗어난 표현이 아니며, 의견 또는 판단이 방송 내용상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고,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고,<sup>41)</sup> ② 다음(DAUM)의 '캐디세상'이라는 카페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 조장에 대한 모욕적 언사("한심하고 불쌍한 인간" 등)가 포함된 골프클럽 비판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자신이 실제 근무했던 골프클럽에서 운영된 근무제도에 관한 비판이고, 의견이나 판단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며, 모욕적 표현이 경미하고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특정인보다는 골프클럽 자체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받아들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sup>42)</sup> ③ 태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군수의 TV광고 등에 대하여 비판글을 올리면서 여자 두 명과 관광 홍보를 한 사진과 관련한 모욕적 언사("소문대로 역시 젊은 여자들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등)를 사용한 사안에서 방송에 보도된 광고에 기초하였고,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

41)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상고기각, 제1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2고단1352) 무죄, 항소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03노136) 항소기각].

4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상고기각, 제1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고정223) 유죄,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07노4403) 제1심 파기 무죄].

## | 정기세미나 발제문 |

사이버공론장에서의 혐오와 모욕표현 이대로 괜찮은가?

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43)</sup>

한편 한 목사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 홈페이지의 ‘소식과 나눔 자유게시판’에 전도사와의 간통으로 기소된 다른 목사와 그 지지자인 비대위 장로들에 대하여 “...거짓과 악한 음모로 가득 채우며 하나님을 진실을 농락한”, “거짓과 위선으로 뚝뚝 뭉쳐진 뽀뽀이와 그를 비호하는 비대위 당신들이”, “...뽀뽀이의 주구 노릇을...”, “뽀뽀이와 그 추종세력과...그 거짓된 악한 무리들과” 등의 표현이 포함된 비판글을 게시한 사안에서는, 기독교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그에 관한 논란도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이성적으로 품위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피해자들의 신앙을 직설적으로 심히 비하하는 표현을 계속 사용한 것은 모욕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44)</sup>

(3) 이러한 사례들에서 모욕적 표현이 담긴 소셜 미디어 글이나 댓글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 즉 모욕적인 언사가 담긴 의견표현이라도 허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는 일종의 기준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 가치판단에 사실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이다. 충분한 기본적 사실관계가 전제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가치판단이 반드시 합리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의견표현으로서 존중된다. 둘째, 모욕적 표현의 정도를 감안하되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 내지 의견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면 비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셋째, 모욕적 표현이 전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모욕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의견표현으로서 보다 존중되어야 한다. 넷째, 모욕적 표현이 담긴 글을 쓰게 된 동기와 경위가 어떠한지 고려하고, 특히 공인이나 공적 사안에 관련된 것일 경우 의견표현으로 더욱 존중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요소들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43)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6462 판결[상고이력, 제1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고단643) 유죄,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09노3200) 무죄].

44)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정528)은 모욕의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노3573)은 교회 내 공적 관심사안으로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다시 이를 파기하였다].

### Ⅲ. 인터넷 공간에서의 피해자 특정 문제

#### 1.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일반적으로 명예가치의 침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

한편 인터넷 공간은 '익명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익명성은 위법한 의견표현의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명예가치를 훼손당하는 피해자에게도 나타난다. 별명이나 ID로만 표시된 소셜 미디어 글이나 댓글의 작성자가 다른 댓글 등의 위법한 표현에 의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그러하다. 인터넷 ID는 인터넷 공간 밖에서 사용되는 성명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공간 안에서 그 ID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인터넷 공간에서 별명, ID 등에 의하여 명예가치 보호의 주체로서의 인격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2. 피해자 특정의 필요

(1) 이러한 문제가 쟁점이 된 헌법소원 사례를 보면, 청구인이 네이버의 뉴스 기사에 관한 네티즌 의견 게시판에 자신의 ID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는 무죄찬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의견을 게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ID를 지칭하며 '내가 당신 부모를 강간한 다음 주○진인 척하면 무죄 판결 받아야 한다는 뜻 같습니다.'는 등의 모욕적인 감정표현을 담은 댓글을 달자 이들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내려지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하였다.<sup>45)</sup>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적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위 결정에서 재판관 조대현은 반대의견을 통하여 피해자는 '그 ID를 고유명칭으로 사용하는 청구인으로 특정된다'고 보았고, 아울러 피해자 불특정을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은 인터넷 댓글의 난폭성과 그 피해의 심각성을 외면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45)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결정.

## | 정기세미나 발제문 |

사이버공론장에서의 혐오와 모욕표현 이대로 괜찮은가?

(2) 인터넷 공간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 공간의 중요성이 현실 세계와 다르지 않고, 심지어 현실 세계보다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에의 명예가치 침해는 더욱 심각한 피해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별명 또는 ID에 의해서만 특정된 사람 역시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무조건 법적 보호의 대상인 인격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실제 재판에서도 피해자 특정 여부가 종종 문제되는데, 네이버 카페 '싱글즈 라이프'에서 '키리히'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한량'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피해자를 비판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안<sup>46)</sup>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 IV. 인터넷 공간에서의 의견표현에 대한 통제 개관

소셜 미디어 글이나 댓글에 의한 의견표현에 대한 통제는 위와 같은 글을 쓰는 작성자에 대한 통제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라 한다)에 대한 통제로 구분할 수 있고, 통제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적 통제와 사후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적 통제와 관련해서는 소셜 미디어 글이나 댓글의 유해성 여부가 문제될 때마다 인터넷 실명제가 논의되었고, 법률에서는 주로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을 사용한 인터넷 댓글 쪽으로 규제가 집중되어, 2004년도의 공직선거법 개정 규정<sup>47)</sup> 및 2007년도의 정보통신망법 개정 규정<sup>48)</sup>으로 제도화되었는바, 이는 별론으로 하고 이하에서는 사후적 통제에 대하여만 간단히 보기로 한다.

### 1. ISP의 임시조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제

(1)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의 명예침해가 심해짐에 따라 ISP에 의한 임시조치 제도가 정보통신망법에 도입되었고,<sup>49)</sup> 이는 미국의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상의 'Notice

46)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노2636 판결(확정)[제1심(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정1619)].

47)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48)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2007. 1. 26. 법률 제8289호에 의하여 신설되었다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의무 관련 조항은 2012. 8. 23.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2014. 5. 28. 개정 법률 제12681호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49) 정보통신망법 2001. 1. 16. 개정 법률 제6360호에 의하여 정보의 삭제요청에 관한 근거규정이 도입된 이후 동법 2007. 1. 26. 개정 법률 제8289호에 의하여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and Takedown'제도에서 유래되었다.<sup>50)</sup> 이에 따라 소셜 미디어 글이나 댓글의 위법한 의견표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은 해당 게시물을 호스팅하는 ISP에게 삭제 차단 등 임시조치를 구할 수 있다. ISP는 1차적으로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여기서 구제가 거부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고 한다)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sup>51)</sup> 방심위는 조정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방심위 산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회부하여 그에 관한 조정절차가 진행되며, 한편 방심위 산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통신심의절차에 따라 ISP에게 삭제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방심위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ISP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법정보 취급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sup>52)</sup>

(2) 이러한 임시조치나 방심위의 통제 절차는 보다 신속한 불법 정보의 차단 효과를 가져오지만 그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 글이나 댓글 작성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작성자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sup>53)</sup> 같은 견지에서 ISP에 의한 임시조치는 위헌이므로 폐지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작성자의 삭제정보 복원이나 접근차단해제신청 보장규정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sup>54)</sup>

## 2. 작성자 개인에 대한 사법적 통제

(1) 소셜 미디어 글이나 댓글 작성자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따른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우선 형사 책임에 관하여 보면, 우리 법률이 명예훼손행위뿐만 아니라 모욕행위까지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 절차 중 형사고소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위법 표현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가장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모욕죄의 고소 건수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55)</sup> 한편 위법한 표현의 피해자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에 필요한 삭제 등 어떠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소송절차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어 시의성이

50) 송백현 (2010).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및 행정규제에 관한 연구. <정보법학>, 제16권 제1호, 25면 이하.

51)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통신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1조.

5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방송통신위원회법 제15조.

53)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의4의 위헌성이 문제 된다 있다. 즉 다음(DAUM)에 개설된 블로그에 국내산 시멘트에 대하여 "발암 시멘트"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 유독성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한국양회공업협회 등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심의신청 사건에서, 방심위가 다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블로그 운영자가 방심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방심위가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방심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5924호로 이 사건 시정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은 2010. 2. 11. 시정요구처분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방심위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계기로 서울고등법원이 그 중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

54) 앞의 송백현 (2010), 42면 이하.

55) 신동화 (2016. 8. 3.). 모욕죄 고발 10년간 15배 증가. <내일신문>. URL: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05559](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05559)

## | 정기세미나 발제문 |

사이버공론장에서의 혐오와 모욕표현 이대로 괜찮은가?

떨어지기 때문에 통상 삭제 등 청구보다는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주가 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 글이나 댓글 등 작성자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그 작성자가 별명이나 ID에 의하여 활동할 경우 개인이 이를 알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단계로 피해자는 방심위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ISP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글 작성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도 있고<sup>56)</sup>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형사고소가 될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 부터 ISP가 보관하고 있는 가입자 인적사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특정한다. 그 결과 당해 사건이 나중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로 판단되는 한이 있더라도 소셜 미디어 글이나 댓글상의 익명성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게 된다.<sup>57)</sup>

(2) 앞서 본 ISP나 방심위 등에 의한 통제와 비교하여 소셜 미디어 글이나 댓글 작성자 개인을 상대로 한 형사소송, 민사소송은 종국적이고도 가장 강력한 통제가 될 수 있으면서도 해당 절차 내에서 작성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절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고, 최근에는 법률전문가에 의하여 다수의 작성자를 형사고소하고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연이어 소액재판절차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기회소송 및 기회소송이라는 현상까지 생겨나고 있다. 특히 형사처벌에 의한 전과자가 양산되는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음에 비추어 그와 같은 방식의 통제가 바람직한지는 다소 의문이다. 일응 형사처벌 방식에 의하는 것보다 민사적으로 명예가치의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지만 자력(資力)도 알 수 없는 댓글 등의 작성자 개인에 대한 민사소송도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 3. ISP에 대한 사법적 통제

(1) 앞서 본 방심위에 의한 행정규제뿐만 아니라 ISP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논의는 ISP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지로부터 출발한다.

ISP를 전송망 보유자로서의 배급자와 유사하게 보는 미국의 경우에는 ISP가 저자나 최초 출판자로 게시한 표현물로 볼 수 없는 이상 ISP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수렴되어 왔다.<sup>58)</sup>

56)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57) 다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이 그 서버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사실상의 한계가 있다.

58)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미국 법원의 판례에 관하여는 설민수 (2009), 익명으로 이루어진 인터넷상 글쓰기에 대한 규제와 그 문제점, <사법논집>, 제48집, 259면 이하 참조.

대법원은 당초 피해자의 실질적인 삭제요구가 있을 때까지는 ISP의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정하는 입장이었으나,<sup>59)</sup> 2009년도에 ISP를 출판자(Publisher)와 유사하게 보는<sup>60)</sup> 획기적인 판결을 하였는바, 싸이월드닷컴에 게재된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글이 퍼나르기에 의하여 무차별적으로 전파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기사가 네이버, 다음, 야후코리아와 같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포털서비스 업체의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다시 게재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모욕적인 댓글이 달리자 피해자가 삭제 요구를 하였는데, 포털서비스 업체들이 이를 거부하다가 10일 정도 지나 게시물에 대한 차단 조치를 취한 사안에서, 포털서비스 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것이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하였다.<sup>61)62)</sup>

(2) 한편 소셜 미디어 글이나 댓글에 의한 피해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경향이 있는데, 가처분 신청사건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있다.

59)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청도군 홈페이지 방명록에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금품수수 및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게재되었고, 이를 해명하는 글이 게재되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삭제요청을 받고 삭제한 사안에서 청도군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60) 한편 이러한 경향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2항, 제44조의2, 제44조의3 규정에서도 나타난다.

61) 다만 별개의건은 ISP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삭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나아가 그 게시물에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현존'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였으며, 그러한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62)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는 논란이 없지 않았으나 2015. 6. 16.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내려진 판결(CASE OF DELFI AS v. ESTONIA(Application no. 64569/09))도 ISP의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견해와 거의 일치하는 입장을 취하였는바,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박용상 (2015). 위법한 기사댓글에 대한 뉴스포털의 책임 - Delfi 판결 평석. <언론중재>, 통권 제137호, 98면 이하].

에스토니아에 등록된 주식회사 소유 포털인 델피는 "SLK 페리운송회사가 계획된 빙도를 파괴하였다"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게재 후 이틀간 그 기사에 달린 185개의 댓글 중 20개에 SLK 페리회사의 이사이며 과점주인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위협과 공격적 언어가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델피 소유회사를 상대로 댓글 삭제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그 후 델피가 댓글은 자신 삭제하였다), 에스토니아 법원은 최종적으로 댓글에 대하여도 델피의 발행인 지위를 인정하여 델피의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델피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에스토니아 정부를 상대로 에스토니아 법원 판결이 유럽인권협약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원을 제기하였고, 유럽인권재판소 대재판부는 포털 운영자인 델피에 대하여 기사에 포함된 댓글에 대하여도 발행인으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인정하고, 기사 자체에는 아무 위법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댓글이 위법할 경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포털사업자가 자동화된 검색어 기준 필터링 시스템이나 신고에 의한 즉시 삭제 시스템을 취한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댓글의 위법성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없는 경우에도 제반 사정에 의해 알아야 할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 | 정기세미나 발제문 |

사이버공론장에서의 혐오와 모욕표현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모욕적인 댓글<sup>63)</sup>이 게시되자 그 사람이 사이트 운영자인 유비에이치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게재 및 모욕 게시물 방치금지 가처분 신청으로써 명예훼손 및 모욕 게시글이 올라왔을 경우 삭제 또는 블라인드 처리 및 1분 이상 노출방치 금지 등을 청구한 데 대하여, '신청인이 게시글 또는 댓글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응하라'는 취지의 결정과 아울러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진 예<sup>64)</sup>가 그것인데, 본안소송이 아닌 보다 신속하고 간이한 신청절차에 의하여 장래의 위법 표현물에 대하여도 삭제, 차단 효과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 V. 결론

현재 위법한 소셜 미디어 글이나 댓글에 의하여 개인의 명예가치가 훼손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이를 통제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인터넷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규제와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점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개인의 의견표현 행위인 경우 그것이 댓글 한 줄에 불과한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와 명예가치의 충돌이 생길 수 있다.

우리 형법이 인터넷 공간, 현실 공간을 불문하고 개인의 의견표현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 외에 모욕죄를 처벌하고 있는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이 외부적 명예임에도 불구하고 명예감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표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성 조각의 법리에 의하여 그 한계를 설정함이 일반적이다. 나아가 인터넷 공간이라 하여 현실 공간에서와 다른 어떤 원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다만 위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 인터넷 공간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는 있을 것이다.

사례에서 볼 때,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적 인물 또는 공적 사안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보장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모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의 훼손을 중시하여 '모욕' 해당 여부는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다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상규 위배 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조각시키고 허용 범위 내의 표현으로 인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보호와 조화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모욕은 그 개념 및 위법성 조각의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이루어질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

63) 피해자의 형사고소에 의하여 수많은 개별 댓글 작성자(그들은 실제로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가 모욕죄로 기소되기도 하였다.

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6.자 2013카합 결정. 이와 관련하여는 이봉민 (2014).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구체적 방법 및 주문에 관한 고찰. <민사집행법연구>, 제10권, 532면 이하도 참조.

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악성 댓글에 대해 더욱 강력한 통제외지를 밝히고 있는바, 이는 그만큼 인터넷 공간에서의 위법한 표현행위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결국 구체적 사안에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인터넷 공간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할지, 명예가치의 보호를 우선시할지의 문제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고, 위법한 표현에 의한 개인의 명예가치 침해가 점점 커지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인터넷 공간에서의 위법한 의견표현을 통제함에 있어 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의적인 판단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위법한 표현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통제를 하여야 하는지도 중요하다. 소셜 미디어 글이나 댓글 작성자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소송에 의한 통제는 근본적이기는 하나 앞서 보았듯이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ISP에 대한 통제가 보다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 소셜 미디어 글이나 댓글 작성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소셜 미디어 글이나 댓글 작성자의 절차 참여가 보장되어 그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전제가 충족된다면 ISP를 통하여 위법한 표현에 대한 차단, 삭제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절차가 보다 효과적이고 이를 통하여 소셜 미디어 글이나 댓글 작성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sup>65)</sup> 

---

65) 이러한 측면에서 언론의 기사 등에 달린 위법한 댓글에 대하여 언론사를 상대로 일괄하여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언론 중재법에 추가하고자 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 모두가 아는 검색, 아무도 모르는 검색 알고리즘

– 검색서비스 중립성을 둘러싼 이론과 논점

강정수 · 디지털사회연구소 소장, 김수철 ·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 검색엔진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

검색엔진이란 어떤 기술인가? 검색엔진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검색서비스 중립성은 왜 논란이 되는가? 검색엔진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학계 연구자들과 기술 전문가, 시장 행위자들의 논의를 통해 많은 부분 밝혀진 상태다. 전부는 아니지만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검색 알고리즘도 일부 공개되어 공공의 지식이 되었다.

검색서비스는 크게 3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sup>1)</sup> 첫째는 색인에 기초한 검색서비스다. 색인 검색서비스는 크롤러(crawler), 로봇(robots) 또는 스파이더(spider)로 불리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을 조사한다. 발견된 웹페이지는 검색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에 간략한 형태로 저장되며 이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검색질의(search query)가 던져지면, 검색 알고리즘은 정해진 매개변수에 따라 검색질의에 대한 결과의 순서를 정한다. 검색결과는 개별결과를 목록형식으로 노출한다. 이때 개별결과는 하이퍼링크 값을 가지며 개별결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이른바 웹카탈로그라 불리는 것으로 색인화 작업과 편집 과정을 거치는 검색서비스다. 웹페이지 수집과 저장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자동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나, 검색질의에 대한 결과 목록은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편집 행위를 통해 생산된다. 여기에는 인간 지능의 도움을 받은 분류가 검색결과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메타 검색서비스는 복수의 색인에 기초한 검색서비스에 검색질의를 보내 각 검색서비스로부터 받은 검색결과를 종합하여 빈도 등 정해진 매개변수에 따라 검색결과 목록을 작성한다.

1) Levene, M. (2010). *An Introduction to Search Engines and Web Navigation* (2nd ed). Hoboken, New Jersey: John Wiley & Sons. p. 150.

색인에 기초한 검색서비스가 작동하는 방식은 다시 세 단계로 구별할 수 있다.<sup>2)</sup> 첫째는 크롤링(crawling)이다. 크롤링이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웹페이지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서나 정보들을 읽어 들이고 다운로드하는 과정을 말한다. 둘째는 색인화(indexing)다. 색인화는 앞의 크롤링을 통해 수집된 수많은 웹페이지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다양한 범주(카테고리)로 나누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랭킹(ranking)이다. 랭킹이란 사용자가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을 실행했을 때 검색엔진에 의한 검색결과들의 순위를 매기는 과정을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검색엔진은 사용자가 검색을 실행할 때마다 작동해 실시간으로 웹페이지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알고리즘을 통해 정기적으로 이미 크롤링되고 색인화된 콘텐츠를 검색한 결과들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즉, 검색결과들이 랜덤하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검색엔진의 알고리즘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웹페이지의 상대적인 노출 정도와 검색결과들의 순서 배치를 결정하는 랭킹의 과정은 검색엔진 설계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이는 검색엔진의 종류에 따라 검색결과가 제시되는 방식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검색엔진이 하는 기본적인 일은 두 가지이다. 우선 관련성(relevance)이 있는 콘텐츠를 구별해내고, 관련성의 정도에 따라 웹페이지 검색결과들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다.

검색엔진 및 검색서비스를 둘러싼 논란들은 검색엔진을 어떤 종류의 기술로 보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첫 번째 시각은 검색엔진을 기술 그 자체의 작동으로서 바라보는 것이다. 여기서 기술로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는 검색 알고리즘의 작동방식에 집중하여 검색엔진이 매우 기계적



이고 자동화되어 객관적인, 과학적인, 혹은 가치중립적인 과정들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검색엔진을 기존의 미디어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인식이 강하게 깔려있다. 그러나 검색엔진 및 검색서비스를 ‘객관적인 자동랭킹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까?

2) Brin, S. & Page, L. (1998). The anatomy of a large-scale hypertextual Web search engine. *Computer Networks and Isdn Systems*, 30(1-7), pp.107-117.

만약에 그렇다면 이른바 구글폭탄(Google Bomb)<sup>3)</sup>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구글 검색엔진에 최적화된 웹사이트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마케팅 전문 회사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검색엔진을 객관적인 자동 랭킹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검색엔진 및 검색 알고리즘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검색엔진과 검색서비스에서 인간의 지속적인 편집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난다.<sup>4)</sup> 특히 랭킹을 부여하거나 어떤 웹페이지에 가중치를 두거나 하는 편집, 개입 과정이 모두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글 검색 알고리즘의 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는 페이지랭크(PageRank) 알고리즘이 대표적인데, 구글의 페이지랭크는 링크가 많이 걸려 있는 웹페이지가 더 중요한 페이지라는 대중성 원리에 바탕을 두고 외부로부터 더 많은 링크(inbound link)를 가지고 있는 웹페이지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웹페이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체계로 알려져 있다.<sup>5)</sup> 이러한 구글의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은 가치중립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일정한 편향성(bias)을 갖고 있다. 또한 구글의 검색엔진은 더 오래된 사이트들, 상업적 사이트들, 그리고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이트들을 과잉 대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sup>6)</sup>

두 번째 시각은 검색엔진, 보다 정확하게는 검색서비스를 순수하게 하나의 상업적인 성격의 서비스로만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에 따르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광고회사로, 이들이 가진 검색엔진은 일종의 광고엔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들이 만들어내는 상품(검색결과)

3) 구글 검색엔진은 특정 웹페이지의 내용을 수집할 뿐 아니라, 특정 웹페이지로 향하는 링크-이른바 인링크(Inlink)-와 그 링크와 연결된 텍스트를 함께 수집한다. 만약 '청와대'의 특정 웹페이지로 향하는 링크들의 텍스트에 '실패'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할 경우, 청와대의 해당 웹페이지에는 '실패'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도 구글 검색서비스는 '실패'라는 검색어의 결과 값에 청와대의 해당 웹페이지를 보여준다. 1999년 마이크로소프트의 특정 웹페이지가 "more evil than satan himself" 검색어와 연결된 사건. 2003년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가 "miserable failure"와 연결된 사건 등이 '구글 폭탄' 사례다. '구글 폭탄'은 이용자의 활동이 검색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근거로 평가받는다[Zeller, T. Jr. (2006, Oct 26). A New Campaign Tactic: Manipulating Google Data, *The New York Times*, URL: [http://www.nytimes.com/2006/10/26/us/politics/26googlebomb.html?\\_r=0](http://www.nytimes.com/2006/10/26/us/politics/26googlebomb.html?_r=0)]

4) Van Couring, E. (2009). Search Engine Bias: the structuration of traffic on the World-Wide Web. Dissertation,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5) 가장 많은 링크, 즉 대중성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페이지랭크의 특징은 평판(reputation)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동경제(affective economy) 혹은 인자본주의의 특성을 가장 잘 실현한 기술이라는 지적도 있다[이항우 (2014). 구글의 정동경제: 사용자 정동 노동의 동원과 전용. <경제와 사회>, 제102권, 208-236면].

6) 이러한 비판들은 구글 검색엔진에 의해 제시된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에 주목하면서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지적한다. 구글 검색서비스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소수 거대 사이트들이 링크 패턴을 지배하면서 사용자들 대부분이 그 사이트들로 연결되는 "구글위계체제(Googlearchy)"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Hindman, M. Tsioutsouliklis, K. & Johnson, J. A. (2003, July 28). "Googlearchy": How a few heavily-linked sites dominate politics on the web. Retrieved from <http://www.princeton.edu/~mhindman/googlearchy--hindman.pdf>]. 이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실제로 아주 단순하고 그리 세밀하지 않은 검색 단어들을 사용하며 검색결과의 첫 페이지를 넘어서는 잘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Inrona, D. L. & Nissenbaum, H. (2000). Shaping the Web: Why the politics of search engines matter, *The information Society*, 16, pp. 169-185.; Lawrence, S., & Giles, C. L. (1999).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on the World Wide Web. *Nature*, 400, pp. 107-109.; Mowshowitz, A. & Kawaguchi, A. (2002). Assessing bias in search engines.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38, pp. 141-156.; Vaughan, L. & Thelwall, M. (2004). Search engine coverage bias: evidence and possible causes.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40(4), pp. 693-707.

을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쿠키를 이용해 사용자의 웹 활동을 추적하여 생성되는 다양한 사용자 정보를 광고주들에게 판매해 이윤을 얻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광고회사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검색엔진 기술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의 일부일 뿐이며 검색엔진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장에서의 성공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검색엔진 기술 및 기술의 변화와 발전을 시장의 성공이라는 기준만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 시장에서의 성공이 만들어내는 검색엔진의 편향성은 없을까? 특히 순수하게 검색엔진에 의해서만 제공된 검색결과 콘텐츠(organic results)와 광고 콘텐츠(스폰서링크, 프로모션링크 등)가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아 불공정거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고객, 더 높은 매출액, 더 많은 점유율 등 시장의 성공이 검색엔진의 더 높은 품질을 의미한다는 설명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만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 번째는 검색엔진을 미디어로 바라보는 시각<sup>7)</sup>이다. 이는 TV, 종이신문 대신 인터넷이 정보와 문화 그리고 광고의 주요 원천이 되면서 전통적 미디어에 대한 공공적 규제 기준이 온라인 공간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시각과 연결되어 있다. 검색엔진이 지식정보시대에서 핵심적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으므로 검색서비스 시장에 대한 공적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통적 미디어 연구에서 미디어를 민주주의 작동에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미디어에 대한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 것처럼 검색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같은 맥락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색엔진, 검색서비스를 전통적인 미디어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민주주의, 시민의 알권리, 공공성, 공정성을 앞세워 검색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서비스의 알고리즘을 공적지식화하는 것이 가능할까? 또 이는 바람직한 것인가?

구글의 영업 비밀을 공적 규제 혹은 지식의 다양성 보장, 검색 독점에 의한 지식 독점에 대한 규제라는 명목으로 완전히 공개할 경우, 다른 수많은 검색서비스들은 시장의 성공을 위해 구글

---

7)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순위 알고리즘은 핵심 경쟁요소로, 검색 순위 알고리즘은 그 기본 원칙을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용자 개인은 검색서비스에서 보이는 결과물에 대한 중요도 또는 현실 관련성 등에 대한 평가 또는 피드백을 수행할 수 없고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검색 순위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특정 정보 및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거나 회피시킬 수 있다[Moffat, R. V. (2009). *Regulating Search*,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22(2), p. 476.]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검색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고 정보 및 콘텐츠를 매개로 이용자와 공급자를 중재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로서 기능한다[앞의 Levene (2010), p. 64; Vogl, P. & Barrett, M. (2010). *Regulating the Information Gatekeepers*, *Communications of the ACM*, 53(11), p. 67]. 결과적으로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수집, 평가 및 처리, 가공 그리고 표현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정보 및 콘텐츠의 이용자와 공급자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다. 여기서 아날로그 시대에서 정보 및 콘텐츠 공급자가 게이트키퍼로서 가졌던 여론 형성의 힘이 검색서비스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검색서비스는 디지털사회 또는 정보사회에서 정보중개의 역할뿐 아니라 자유로운 정보교환과 표현의 자유에 '잠재적인' 위협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

의 검색 알고리즘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검색 다양성이 아닌 검색서비스의 획일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sup>8)</sup> 이처럼 검색서비스를 전통 미디어와 동일시하여 공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각은 자칫 무분별한 규제와 개입으로 인해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 검색엔진은 어떤 기술인가?

검색엔진과 서비스 기술의 민주화는 검색서비스 기술을 작동하게 하는 조건들과 이 기술의 사용방식에 대해 더욱 세밀한 성찰과 토론을 요구한다. 검색엔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는 이론적 분석틀로는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과 ‘기술 실천론’을 들 수 있다.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은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기술이 사회적 과정과 사회적 행위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즉, 어떻게 기술이 갈등적 상황을 극복하고 닫힘(closure), 또는 안정화(stabilization)를 성취하게 되는지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자전거나 전등과 같은 고정된 기술적 발명품이나 제품이 시장에서 사용(채택) 또는 퇴출을 거쳐, 상업적 성공 혹은 실패로 기술 발전이 마무리되는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검색엔진은 정보기술 서비스(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이자 미디어 기술로서 자전거나 전등 기술의 발전과정과는 다른 시각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기술 실천론’은 현대 기술들이 인공물이 아닌 IT 서비스와 같은 미디어 기술인 경우가 많다는 특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즉, 현대 정보기술은 기술적 논쟁의 종결을 의미하는 기술적 닫힘이나 안정화의 문제가 언제나 변화 가능성을 갖고 열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기술 실천론적 관점에서 보면 검색엔진 기술은 이 기술을 통해 다양한 행위자들(예를 들어 이용자들, 개발자들, 기획자들 등)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집단에 따라 검색엔진을 이해하는 관점에 차이가 존재하며 검색엔진을 정의하는 방식이나 운영방식 및 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도 모두 상이하다. 따라서 검색서비스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을 다양한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8) Granka, A. L. (2010). The politics of search: a decade retrospective. *The Information Society*, pp. 364-374.

## 검색서비스와 사회적 상호작용

### 1) 시장 및 비즈니스 측면

검색서비스 시장은 간접 네트워크 효과<sup>9)</sup>로 복수의 시장주체가 결합된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s)으로 정의할 수 있다.<sup>10)</sup> 특정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웹페이지나 웹사이트를 검색서비스의 수집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보·콘텐츠 사업자가 증가한다. 또 검색서비스에 색인된 정보와 콘텐츠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욱 더 많은 이용자가 해당 검색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광고주에게 해당 검색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고, 늘어난 검색서비스의 광고매출은 검색사업자가 서비스를 진화시키고 확장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간접 네트워크 효과는 검색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한 구조적 특성이다. 검색서비스의 광고매출 전망은 이용자 및 정보·콘텐츠 규모에 종속되는 반면 이용자와 정보·콘텐츠 규모는 광고매출 전망에 종속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대칭성으로 인해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광고주에게만 수수료를 요구한다. 즉, 검색서비스의 간접 네트워크 효과는 소비자 집단에 기초한 규모의 경제(demand-side economies of scale)를 가능케 하고, 소비자측면에서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는 중개자인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독점화 경향을 유발한다.<sup>11)</sup>

또한 검색서비스는 경험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개별 이용자가 검색서비스를 소비한 이후에야 그 유익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용자는 검색결과의 정확성과 품질을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검색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ies)이 나타날 수 있다.

인터넷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수집, 분류, 평가, 표현하는 과정과 (순위)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데에는 많은 경제적·기술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시장진입의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소수의 검색사업자가 시장 우위를 선점하면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9) 동일 소비자 집단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해당 집단에 포함된 개인의 유익이 증가하는 것을 직접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른다. 전화, 이메일 등에서 직접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난다. 반면 간접 네트워크 효과는, 이종 소비자 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소비자 집단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신용카드 가맹점의 유익이 증가한다. 역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규모가 늘어날 때 신용카드 소지자의 유익이 커진다. 신용카드 소지자와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는 이종 소비자 집단 사이에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한다. 그리고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이종 소비자 집단을 연결하는 시장주체를 플랫폼 사업자라고 부른다.

10) Evans, S. D. (2003). The Antitrust Economics of Multi-Sided Platform Markets, *Yale Journal on Regulation*, 20(2), p. 325.

11) Evans, S. D. & Schmalensee, R. (2013). The Antitrust Analysis of Multi-Sided Platform Businesses, in Blair, R. & Sokol, D. (eds.), *Oxford Handbook on International Antitrust Economics*, URL: <http://ssrn.com/abstract=2185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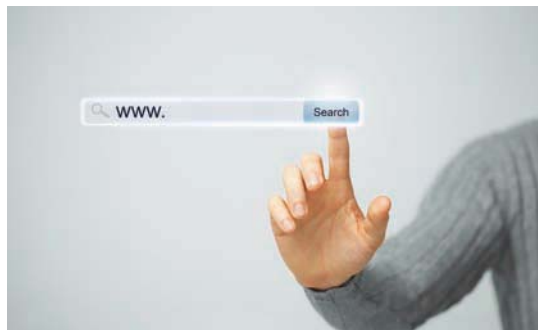
한편, 네이버와 구글 등은 검색서비스 외에도 지도, 블로그, 커뮤니티, 쇼핑 등 검색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색사업자는 이러한 정보·콘텐츠 서비스가 자사 검색서비스의 검색(순위)알고리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검색엔진을 최적화할 수 있다.<sup>12)</sup> 이 경우 검색서비스 외의 영역에서도 신규 사업자에게 심각한 경쟁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 2) 법적·정치적 측면

검색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강화는 정치적 갈등 및 법적 규제 논란과도 연결된다. 2012년 이후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색 중립성’ 논쟁이 대표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10월 4일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이하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의 내용은 ① 검색원칙 공개, ② 광고와 검색결과와의 명확한 구분, ③ 검색결과에서 이용자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사 서비스를 구분하여 표기, ④ 미래창조과학부, 검색서비스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설치해 권고안의 이행 및 개선 등의 방안 연구 등이다. 또한 권고안은 검색서비스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이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검색서비스는 정보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정보망에서 정보를 발견할 가능성을 결정하는 정보중개서비스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물리적 망과 가상 플랫폼의 맥락에서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립성이라는 개념의 정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sup>13)</sup>

검색중립성은 정보 및 콘텐츠에 대한 검색결과가 순수하게 중요도(relevance)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며 검색결과에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편집 정책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sup>14)</sup>



12) Dakanalis, D. & van Rooijen, A. (2011). EU: Google Under Antitrust Scrutiny, *Computer Law Review International*, 1, p. 29.

13) 김보라미 (2012). 국내 망중립성 정책의 문제점.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을 중심으로. 망중립성이용자포럼 편, 121-155면. <망중립성을 말하다>. 서울: 블로터앤미디어. 검색서비스가 정보사회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비해, 검색중립성이라는 개념이 법률적 및 기술적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국내의 경우, 2012년 9월 민주당 신경민 의원실에서 주최한 “포털의 검색중립성 토론회”와 2013년 4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에서 개최한 “대형포털의 불공정거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등에서 검색중립성이 처음으로 정치권 및 학계의 논의대상으로 등장했다.

14) Raff, A. (2009. Dec. 28.). Search, but You May Find, *The New York Times*, URL: [http://www.nytimes.com/2009/12/28/opinion/28raff.html?\\_r=0](http://www.nytimes.com/2009/12/28/opinion/28raff.html?_r=0)

여기서 검색결과를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는 검색 (순위)알고리즘은 검색결과에 차별성을 부여하여 다양한 검색서비스 사업자를 구별하는 기술이다. 차별화된 검색결과는 이용자들이 특정 검색서비스를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검색서비스 사업자별로 정보 및 콘텐츠 중요도를 평가하고 종합하는 기술의 차이<sup>15)</sup>는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검색중립성은 망중립성과 달리 절대적 객관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① 검색최적화 등 검색오용(abusing)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② 검색결과에서 음란물, 허위정보 등의 삭제 및 접근제한 요청에<sup>16)</sup> 대한 대응의 적절성, ③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연관 검색어 등을 둘러싼 검색결과 편집 가능성, ④ 검색광고 등 유료 검색어의 검색결과 상위노출의 적절성, ⑤ 검색결과에서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수직 서비스(vertical services, 이른바 '자사 서비스') 우대의 타당성 문제<sup>17)</sup> 등 검색중립성과 관련한 내외부적 관여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 3) 사회문화적 측면

검색서비스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이유로 힌만(Hinman)은 네 가지를 제시한다.<sup>18)</sup> 첫째, 검색서비스는 정보 접근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다. 검색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웹에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고, 웹의 유용성 또한 상실된다. 둘째, 정보 접근은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있을 때 숙의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검색서비스는 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학생들이 도서관을 방문하기보다 검색서비스를 통해 정보와 지식에 접근하고 있다. 넷째, 검색서비스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사기업에 의해 운영된다. 따라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목표와 검색서비스가 가지는 공공의 이해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의 이해 간의 조화 가능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은 끊임 없는 논란의 대상이다.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시간 증가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정보 소비는 여

15) 구글(Google)의 검색 순위알고리즘인 페이지랭크(PageRank)는 최적의 검색결과를 첫 3개에 표현하는데 그 우수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 우수성은 다른 경쟁 검색서비스보다 구글을 우위에 위치시킨 결정적 요인이다. 구글의 페이지랭크는 검색결과에 색인되는 정보 및 콘텐츠를 명백하게 '차별'하고 있다.

16)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인터넷 게시물에 노출이나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조치는 외부로부터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가해지는 편집 압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보 및 콘텐츠 공급자에 의해 이뤄지는 검색최적화는 검색서비스에 대한 외부 간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처럼 검색서비스 외부에서 검색결과에 가해지는 영향을 '외부 영향력 또는 외부 간섭(external interference)'이라 부른다[Kühling, J. & Gauß, N. (2007). Suchmaschinen - eine Gefahr für den Informationszugang und die Informationsvielfalt?, *Zeitschrift für Urheber- und Medienrecht: ZUM*, 51(12), pp. 881-889.].

17) ①과 ②를 제외하고 ③부터 ⑤까지 검색결과에 대한 검색서비스 사업자 영향력 행사를 '내부 영향력 또는 내부 간섭(internal interference)'이라 부른다[앞의 Kühling & Gauß, 2007, p. 883].

18) Hinman, M. L. (2005). Esse est indicato in Google: Ethical and Political Issues in Search Engines, *International Review of Information Ethics*, 3, pp. 21-22.

론 형성과 관련해 더욱 큰 의미를 얻고 있다.<sup>19)</sup> 검색서비스는 전통 미디어와 같이 스스로 정보나 여론을 생산하고 전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검색서비스 및 이와 연결된 제2시장, 제3시장<sup>20)</sup>은 다양한 정보 및 콘텐츠에 이용자의 관심을 배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의 관심을 검색결과 상위에 위치한 정보 또는 콘텐츠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결과 첫 페이지라는 제한된 공간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강화될수록 검색서비스의 이용자 관심 배분 결정력은 강화된다.

검색서비스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갈등의 또 다른 측면은 검색결과에 대한 사회적 간섭과 그 타당성이다. 사회적 간섭은 내부간섭(internal interference)과 외부간섭(external interference)으로 구분된다. 내부간섭에는 검색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자체적인 유해 콘텐츠 필터링 등이 있다. 외부간섭의 대표적 사례는 검색엔진 최적화(Search Engine Optimization)<sup>21)</sup>, 검색엔진 마케팅(Search Engine Marketing) 등 정보제공자에 의한 것과, 임시조치나 정부의 권고안과 같이 공적기관에 의한 것이 있다.<sup>22)</sup>

검색엔진 최적화 수단은 웹페이지 또는 웹사이트가 크롤러 등 수집 프로그램에 효과적으로 파악되고 분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크로킹(Cloaking, 검색 크롤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웹페이지와 이용자가 방문하는 웹페이지를 다르게 만드는 방법), 도어웨이-페이지(Doorway-Pages, 검색순위만을 위해 존재하는 웹페이지로서 이용자가 방문하였을 경우 재전송을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연결하는 방법), 키워드 스테핑(Keyword-Stuffing, 웹페이지와 관련 없는 키워드를 나열하는 방법) 등처럼 부적절하게 검색서비스와 이용자를 현혹하는 기법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검색결과를 교란하는 부정적 의미의 검색엔진 최적화에 대해 일반적으로 검색사업자는 해당 웹페이지 등을 검색결과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부정적 검색엔진 최적화 기법(외부 간섭)에 대응하기 위한 검색서비스의 방법론(내부 간섭)이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19) Pasquale, F. (2010). Beyond Innovation and competition: The need for qualified transparency in internet intermediaries,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104(1), p. 110.

20) 네이버, 다음, 구글의 뉴스 서비스 및 블로그, 지도 서비스 등이 제2시장 또는 제3시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


21) 검색(엔진)최적화는, 정보 및 콘텐츠를 담은 웹페이지 또는 웹사이트가 검색(순위)알고리즘에 높게 평가받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해당 웹페이지 및 웹사이트가 검색결과에서 상위에 위치하는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수단을 말한다.

22) 최근 정부 여당에 의한 포털의 뉴스 검색서비스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 정보기술 거버넌스의 조건들

이렇게 검색서비스를 둘러싼 시장경제적 문제, 법적·정치적 충돌, 사회문화적 갈등은 검색서비스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구조, 작동방식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기술 실천 행위자들에 의해 검색서비스 기술의 성격과 시장의 특성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검색엔진이나 검색서비스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 사이의 경쟁과 갈등, 미디어 및 문화 콘텐츠 제공자, 검색광고 제공자, 입법부 및 행정부 등 다양한 시장 주체들의 협상과 합의를 내포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검색엔진, 검색서비스는 단순히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가 아닌 기술 거버넌스의 대상이자 산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넷플릭스, 구글, 유튜브 등과 같은 해외 서비스들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정보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IT 서비스의 발전과 시장 상황의 변화, 국가와 시민사회(이용자)의 적절한 대응방식 등에 대한 깊은 토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검색서비스 기술에 대한 이론적 틀과 방법들이 향후 검색중립성 문제에 대한 상호 협력적 논의에 활용되기를 바란다. 





---

## 피르소를 위한 변론

임제혁 ·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

---

피르소를 위한 변론이나 변명이 모두 부질없는 것은 어느 것이든 피르소의 자의식에 대한 각성을 설명할 방법이 없고, 설명을 한다 한들 우리가 속한 사회의 법과 도덕, 윤리의식의 잣대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카뮈(알베르 카뮈)의 작품 중에 「이방인(L'étranger)」이라는 작품이 있다. 너무도 유명한 작품이지만, 이 작품을 읽은 많은 사람들은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아니 오히려 “뭐 이런 작품이 있냐”며 화를 내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소설의 첫 문장부터 공감하기가 힘들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인지도, 나도 모르겠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를 먹여주고 키워준 엄마의 죽음에 대한 1인칭 시점의 소설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도 아닌 “엄마가 죽었다(Maman est morte)”로 시작한다. 어머니에 대한 존경, 존중은커녕 그 죽음에 대한 일말의 공감도 느껴지지 않는다. 심지어 돌아가신 날조차 그에게는 희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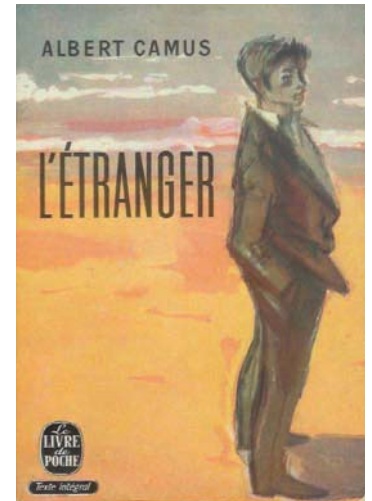
주인공은 어머니의 죽음에 관계없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가운데 이튿날 한 여인과 육체적 관계를 나눈다. 이즈음에서 책을 덮는 독자들도 생긴다. 좀 더 참고 소설을 읽어내려 가다 보면 며칠 뒤, 해가 눈을 멀게 할 정도로 강렬하게 내리쬐는 오후 그는 권총으로 아랍인을 죽인다.

“나는 권총 손잡이의 매끈한 배를 느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날카롭고 귀청이 터질 듯한 소음과 함께 그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나는 땀과 햇볕을 떨쳐 버렸다. 나는 내가 한 낮의 균형을,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던 해변의 그 예외적인 침묵을 깨뜨려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고는 미동도 않는 몸뚱이에 네발을 더 쏘아댔고 탄환은 흔적도 없이 박혀버렸다. 그것은 불행의 문턱을 두드리는 네 번의 짧은 노크 같은 것이었다.”

이후 소설은 영혼 없고 무료한, 의식을 상실한 자의 인생에 대한 무미건조한 서술에서 적극적인 서술로 전환한다. 그는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도,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도 ‘이방인’이었다. 그는 자신이 타인의 손에 의해 맞이하게 되는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이방인’으로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반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가 느낀 감정은 도덕적인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그 행동의 주체가 되는 순간에 느껴지는 깨달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주인공이 ‘반성’을 했다면 3류 통속소설이 되었을 텐데 카뮈는 미시적으로 그의 의식에 집중한다. 남들이 만들어낸 ‘도덕’, ‘윤리’ 그리고 ‘법’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주인공 ‘뫼르소’의 의식이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것이다. 그리고 그 의식은 ‘사형’이라는 타자적 법집행을 주인공이 스스로 선택하는 마지막 순간으로 변화시킨다.

다행히도 아직 뫼르소 같은, 필자가 형법에서 배운 ‘고의성’,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반성’이라는 관념으로부터 완벽한 이방인을 만나지는 못했다. 그런데 오히려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늘 뫼르소를 의뢰인으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소설 「이방인」의 후반부에는 ‘내세’를 강조하며 참회를 기도하는 신부와 주인공 사이에 격한 감정이 오간다. 카뮈의 무미건조한 문체가 격한 폭발을 보이는 대목이다. 뫼르소에게 내세가 무슨 중요성이 있겠는가? 사형을 선고받고 죽음을 앞 둔 주인공에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카뮈가 1942년에 발표한 소설 《이방인》.

[출처 : 나무위키(<https://namu.wiki/w/이방인>) (소설)]

게 중요한 것은 내세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고, 자신이 의식 없이 보낸 시간이 그를 규정하고 있다. 지금의 표현으로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증오를 사고 있는 주인공은 오히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증오에 찬 절규로부터, 신부가 제안하는 구원으로부터 자유롭다. 신부는 결국 눈물을 가득 껴 채 떠난다. 그 눈물은 아마도 신부로서 느낀 연민일 것이다,

“신부가 나가버린 뒤에 내 마음은 다시 가라앉았다. 나는 기운이 없어 자리 위에 몸을 던졌다. 그러고는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왜냐하면 눈을 뜨자 별들이 보였으니 말이다. 들판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내가 있는 곳까지 들려왔다. 밤 냄새, 흙 냄새, 소금 냄새가 관자놀이를 시원하게 해주었다. 잠든 여름의 그 희한한 평화가 조수처럼 내 속으로 흘러들었다. 그 때 한 밤의 끝에서 사이렌이 울렸다. 그것은 이제 나에게 영원히 관계없는 세계로의 출발을 알리고 있는 것이었다.”

어느 소설에서도 죽음을 앞둔 자가 이토록 명료한 의식을 보인 적은 없을 것이다. 나는 다시 생각해본다. 이 사람을 어떻게 변호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이 사람을 세상에 알려야 할 것인가? 그는 몰염치한, 한 사람에게 수차례 권총을 쏘아서 죽인 극악한 살인범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은커녕 제대로 된 이유조차 제시하지 않는, 그러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책임 감경을 논해볼 구석조차 없다. 그에게 변호사가 있었다면 그는 '변호인의 조력'이라는 미명하에 형식적으로 존재했을 따름일 것이며, 검사에게 그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하기 가장 편한 대상이었을 것이고, 판사에게는 고민 없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죄질이 불량한 피고인이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카뮈에게 존경을 표한다. 그는 피고인 피르소를 혐오스러운 '이방인'에서 '자유로운 인간'으로 만들어냈으며, 모든 도덕과 윤리 그리고 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아주 오랜만에 다시, 나는 엄마를 생각했다. 그녀가 왜 말년에 '약혼자'를 갖게 되었는지, 왜 그녀가 새로운 시작을 시도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거기, 거기에서도, 삶이 점차 희미해져가는 양로원에서, 저녁은 쓸쓸한 휴식같은 것이었다. 죽음에 인접해서야 엄마는 해방감을 느끼고,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준비가 됐다고 느꼈음에 틀림없었다. 누구도, 그 누구도 그녀의 죽음에 울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나 역시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다.”

20여 년 전 대학 시절 이 대목에서 연민을 느꼈다는 친구에게 교수는 다시 살아볼 준비가 되었


는데 사형을 당해서 그런 것인지를 물었다. 그리고 교수는 방금 읽은 대목을 다시 읽어보라고 했다.

“누구도, 그 누구도 그녀의 죽음에 올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 주인공에게 연민을 느껴야 할 부분은 그의 각성이 아니라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못한 채 엄마의 죽음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조차도 건조한 문체로 서술할 수밖에 없는, 네 번의 노력을 하기 전의 삶이다.

기자 출신이기도 했던 카뮈는 소설에서 이 엄청난 살인사건을 두고 감옥 밖에서 동요하는 여론을 간간히 보여준다. 살인사건이 있기 전까지 뫼르소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다. 살인 사건으로 인해 그는 유명인이 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조차 슬픔을 느끼지 않았던 모습이 알려지면서 지탄의 대상이 된다. 그에 대한 외부적인 ‘인간’으로서의 평가가 추락하는 것과 반비례하여 뫼르소의 의식은 명료해져만 간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달게 받을 것이다. 아니 뫼르소는 그 책임을 달게 선택한다.

“마치 그 커다란 분노가 내 괴로움을 씻어주고 희망을 안겨 준 것처럼, 나는 이 징후와 별들이 드리운 밤 앞에서 처음으로 세계의 다정스러운 무관심에 마음을 열었다. 그처럼 세계가 나와 다름없고 형제 같음을 느끼며 나는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성취되고 내가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위하여 나에게 남은 소원은, 다만 내가 사형집행을 받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증오와 함성을 울리며 나를 맞아주었으면 하는 것뿐이다.”

뫼르소를 위한 변론이나 변명이 모두 부질없는 것은 어느 것이든 뫼르소의 자의식에 대한 각성을 설명할 방법이 없고, 설명을 한다 한들 우리가 속한 사회의 법과 도덕, 윤리의식의 잣대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 점이 카뮈를 위대한 작가의 반열에 올린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알베르 카뮈(Albert Camus, 1913년 11월 7일 ~ 1960년 1월 4일)는 프랑스의 피에 누아르 작가, 저널리스트 그리고 철학자였다.

[출처 :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알베르\\_카뮈](https://ko.wikipedia.org/wiki/알베르_카뮈))]



## 고소당한 유명인사 관련 보도와 언론사의 명예훼손 책임

-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한위수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요즘 유명 연예인이 성추행 등으로 주점 종업원에게 고소를 당했다거나 연예기획사로부터 탈세 등으로 고발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종종 보게 된다. 물론 고소내용이나 고발내용이 진실임이 밝혀져 해당 연예인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별문제 없겠지만, 만일 고소내용이나 고발내용이 진실이 아닐 경우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책임이 없을까?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형법 제309조 제1항 참조), 또한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민법 제750조 참조). 그러나 그 경우에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형법 제310조 참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태도이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그렇다면 설령 주점 종업원이 유명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고소하였더라도 그 유명인이 고소를 당한 것 및 고소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진실한 사실이므로 그 보도에 위법성이 없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코 그렇지 않다.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표현은 진술자가 직접 체험한 것으로 표시되든 타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표시되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그래서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은 “○○○가 처자식이 있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데 아느냐”고 한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였다), 고소 고발에 관한 보도가 진실한 사실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고소를 당한 사실뿐만 아니라 보도된 고소의 내용(즉,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고소인의 범죄사실)까지 진실한 사실이라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 인사가 ...라고 폭로했다” 또는 “...라는 소문이 인터넷에 돌고 있다”라는 식의 보도를 해놓고는, 모 인사의 발언 녹취록이나 인터넷 댓글 캡처 화면을 그 증거로 내밀어 폭로사실이나 소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진실하다는 증명을 함으로써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카더라’ 형식의 무책임한 보도로부터 명예를 보호받을 방법이 없게 될 것이다.

영미(英美)의 명예훼손법에서도 ‘재공표원칙(republication rule)’이라 하여,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그 소문을 지어내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쁘다(tale bearers are as bad as tale makers)’는 법언에 따라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전달하는 사람은 처음 그 말을 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진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



이는 앞서 본 우리나라의 법리와도 궤를 같이 한다고 할 것이며 특히 그 전달자가 마스크이라면 일반인보다 파급력이 크며 마스크에서 보도하였다는 그 자체로 신빙성이 높아져 피해자의 피해가 훨씬 더 커진다는 점에서 오히려 소문을 만들어낸 일반인보다 이를 전한 언론사에 대해 더 큰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올 수도 있다. 흔히 어떤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는 상대방에게 ‘신문에 났다’, ‘뉴스에도 나왔다’ 등의 말을 덧붙여 진실임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언어습관도 마스크의 영향력과 책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B언론사는 청소년 성범죄를 소재로 한 사회고발영화를 연출하여 유명해진 A영화 감독이 아내로부터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하고 동시에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식칼로 위협하였으며 아들을 감금 납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 보도는 아내와의 인터뷰,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전달하면서 A감독의 행동을 비판하는 논조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A감독은 아내를 폭행하였다는 고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었을 뿐 나머지 폭행 부분과 식칼로 위협하였다는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가 확정되었고, 이에 A감독은 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B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과 항소심은 모두 B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고, 대법원(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B언론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먼저 대법원은 어떤 사람이 고소를 당하여 수사 중인 사실을 언론사가 함부로 보도하여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는데, 누구나 고개를 끄떡이게 할 만큼 적확하고 설득력이 있다.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 아니라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있고, 신문 보도 및 인터넷이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 등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언론사가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 또한 언론사의 기자들이라면 누구나 새겨두고

명심해야 할 사항들이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등의 조사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 그 보도에 앞서 조사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인용하여 부각시키거나 주변 사정을 무리하게 연결시켜 마치 고소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내용 구성을 하는 등으로 그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사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취지의 판시는 위 판결이 처음은 아니다. 한 언론사는 다단계 판매업자들의 공제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조합원예정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과장인 원고가 조합 설립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개인명의 계좌에 거액을 입금하도록 강요하였다며 검찰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해 감사원이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대법원(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은 해당 보도가 원고가 부정한 돈을 수수한 것 같은 인상을 준 데 대하여, 언론사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돈을 수수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언론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 바 있다.

또한 일찍이 서울민사지법(1989. 1. 18. 선고 88가합20604)은, 미스코리아 출신의 여성이 당시 정권 실세와 부도덕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을 보도한 사안에서 어떠한 소문이 있다고 기사화한 경우에는 실제 그 소문이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소문의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물론, 고위 공직자처럼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소 등으로 비리가 없는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어 재판 받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뉴스 가치가 있으므로 오히려 신속히 보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단서를 가지고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와 달리 고소에 의한 수사나 민사소송은 고소인이나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수사나 재판이 시작된다. 또한 고소나 민사소송의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고소인 등이 모두 믿을만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며, 그들은 피고소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입장에 있으므로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그 주장의 신빙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또한 고위 공직자나 유명 연예인의 경우, 고소장이나 소장 기재된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고소 등을 당하였다고 보도되는 것 그 자체로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보도를 막기 위해 허위내용인 경우에도 고소인에게 상당한 돈을 주고 무리하게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유명 연예인이 성폭행 등으로 고소당하였다는 사실에 뒤이어 고소인과 합의해 고소가 취하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비슷한 취지의 고소가 줄을 잇는 것도 그러한 현상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고소인 등이 처음부터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민사소송의 재판결과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당한 사실의 보도 자체 또는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이 보도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유명인으로부터 합의금조로 돈을 받아내거나 최소한 망신이라도 줘서 양값음하겠다는 부정한 의도로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언론사는 이를 보도하는 것 자체로써 고소인 등의 계약에 이용당하는 셈이 된다.

이처럼 유명인은 일반인보다 오히려 더 근거 없는 사실로 고소당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기 쉬우므로, 유명인이 고소당하였다거나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뉴스 가치가 있다거나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유명인을 상대로 한 고소나 민사소송 제기 사실을 보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취재를 하여 고소장이나 소장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러한 진실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어도 수사기관의 결과발표나 법원의 판결 선고를 기다려 보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취재결과 고소인 등의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아직 고소인이나 원고의 주장이 진실로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고소인이나 원고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부각시키거나, 주변 사정을 무리하게 연결시켜 마치 고소 내용이나 소장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유명인을 상대로 한 고소나 고발사실 등이 함부로 보도되는 작금의 상황에 경종을 울리고 언론사의 현명한 대처를 촉구하는 시의 적절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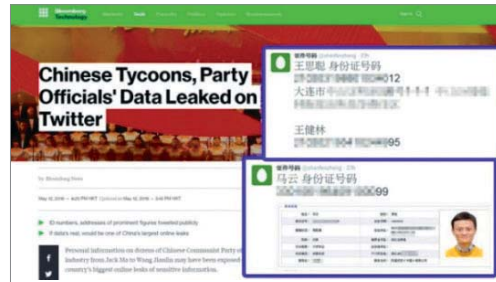
# 느리지만 꾸준히 진화하고 있는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문혜정 ·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박사과정



## 들어가며

최근 중국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의 급속한 발달로 인터넷과 실생활이 더욱 긴밀하게 결합하면서 개인정보 매매, 누설 등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와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sup>1)</sup> 올해 5월에는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 등 중국 재계 거물들과 공산당 고위 간부들의 개인정보 수집 건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에 대량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 사회적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马云) 회장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IT매체 「왕이과학」의 보도 (출처: 「网易科技」, 2016. 5. 24. “马云马化腾个人信息被曝光 截图来自公安系统”, <http://tech.163.com/16/0524/09/BNQPUVV000915BF.html>)

1) 2011년 12월 21일 중국 유명 소프트웨어 개발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CSDN(중국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에서 5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메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이어 중국 내 인터넷 토론 사이트인 “천애”에서도 4천만 사용자의 패스워드가 유출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울러 복수의 결제 사이트의 사용자 계정 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건의 주요 원인은 사이트를 관리하는 패스워드가 암호화되지 않은 데 있었다. 또한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패스워드가 지나치게 단순하여 개인 정보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것도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경우 아직까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sup>2)</sup> 다만, 헌법 이하 민법, 형법, 행정법 및 성령 혹은 지방성 규칙 등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이 산재제정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체계를 이해하려면 각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와 내용, 벌칙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동향과 입법 현황, 지금까지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령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 1) 헌법

중국헌법 제38조는 “중국 국민은 인격의 존엄성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국민들을 모욕, 비방, 무고, 모함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상술한 권리 보호를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현실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중국 사회과학연구원 법학연구소가 국무원 관련 부문의 위탁을 받아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전문가 의견판) 및 입법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08년에 국무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헌법 제40조는 “통신의 자유와 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의 안전이나 범죄수사상의 이유로公安기관이나 검찰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에 대한 검사를 할 경우 외에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떠한 이유로든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sup>3)</sup> 동조는 국가의 안전이나 범죄 수사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프라이버시(통신의 비밀)를 원칙적으로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 조항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프라이버시권을 바탕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의 헌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 2) 민법

중국 민법상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권(隱私權)으로서 일정 수준의 보호를 받는다. 민법총칙 제101조는 “국민, 법인은 명예권을 향유하며 국민의 인격 존엄은 법률의 보호를 받고 모욕, 비방 등의 방식으로 국민, 법인의 명예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금지한다.”고 되어있다. 또 제120조는 “국민의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영예권에 침해를 받은 경우, 침해정지, 명예회복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 전기통신조례에서도 헌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에 관한 규정이 있다. 전기통신조례 제66조 통신가입자의 통신사용 자유와 통신 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보안 또는 형사범죄조사를 위해 公安기관, 국가안전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이 법률규정 절차에 따라 통신내용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것 이외에 조직이나 개인은 그 어떤 이유로도 통신내용에 대해 검사해서는 안 된다. 통신사업자 및 직원은 타인에게 통신가입자가 통신망을 사용하여 전송하는 정보 내용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sup>4)</sup> 위 조항들은 헌법 제38조가 규정하는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민법 영역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개인정보의 침해행위와 관련한 민법상 구제조치의 발동은 소송의 형식을 취해야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중국 권리침해책임법<sup>5)</sup>은 “민사권익을 침해한 자는 법률에 의거해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사권익에 프라이버시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sup>6)</su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법통

칙 및 권리침해책임법은 개인정보를 프라이버시권(隱私權)으로서 보호하고 있지만, 프라이버시권(隱私權)의 개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권리침해책임법 제36조는 네트워크 사용자,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네트워크를 이용해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했을 경우, 네트워크 사용자 및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트워크 사용자가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정보의 삭제, 은폐, 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특히,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요구를 접수한 이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손해의 확대 및 해당 네트워크 사용자의 피해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권리침해책임법은 행위자가 과실로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했을 경우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법률에 근거하여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위자 자신이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권리 침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점과<sup>7)</sup>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타인의 민사상 권익을 침해한 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sup>8)</sup>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988년 4월 2일 ‘중국 민법통칙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문제에 대

4)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가 1993년 8월 7일 공표한 ‘명예권사건을 심리하는데 필요한 문제와 해답(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名誉权案件若干问题的解答)’에 따르면 공인 또는 법인이 명예권을 침해당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해자는 해당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 공인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가해자의 과실의 정도,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금액을 책정할 수 있다. 이처럼 최고인민법원은 민법통칙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이 재산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다.

5) 권리침해책임법은 민법전 전 9편중 1편으로서 2002년 12월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회 회의에 초안이 제출되었다. 그 후, 약 1,200조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민법전에 대한 심의가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물권법과 함께 개별 입법이 진행되었다. 2008년 12월부터 새롭게 심의가 개시되어 2009년 11월부터 한 달간 공개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09년 12월 26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6) 권리침해책임법 제2조 이 법에서 의미하는 민사권익이라 함은 생명권, 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영예권, 초상권, 프라이버시의 권리, 혼인자유권, 후견권, 소유권, 용역물권, 담보물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발견권(發現權), 주주권, 상속권 등 인신에 관한 권리 및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포함한다.

동법 제3조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권리침해인에게 권리침해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7)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6조

8) 중국 권리침해책임법 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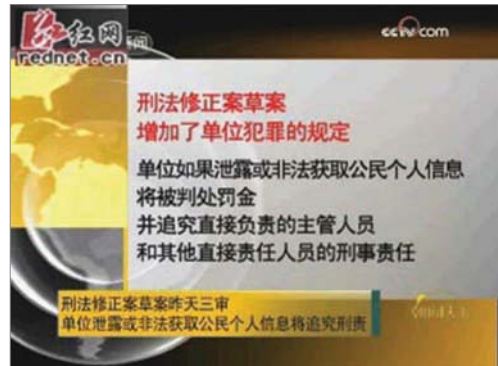
한 의견(시행)의 통지<sup>9)</sup>를 공표하였다. 통지의 내용에는 “서면, 구두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공개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모욕, 비방 등의 수단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공민의 명예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 3) 형법

종래의 중국형법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단지, 제252조에 “타인의 서신을 은닉, 폐기, 또는 불법으로 개봉하여, 공민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위가 중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하여, 우편물 및 이메일을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었다.

중국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2009년 2월 28일 제7차 형법개정<sup>10)</sup>을, 2015년 8월 29일 제9차 형법개정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먼저 형법 제7차 개정에서는 국가

기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여 판매 및 제공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비밀 준수를 의무화하고 관공서, 금융기관, 통신기관, 전화, 교육 및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그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혹은 위법하게 제공하는 경우,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했다.<sup>11)</sup>



▲ 중국 정부가 형법 7차 개정을 통해 국가기관 등의 직원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판매·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중국 공영 채널 CCTV의 보도내용 (출처: 「湖南红网」, 2009. 2. 26. 「视频」单位泄露或非法获取公民个人信息将追究刑责”, <http://health.rednet.cn/c/2009/02/26/1715331.htm>)

2015년 형법 제9차 개정에서는 국가의 법규를 위반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 혹은 불법으로 제공하는

9) 1988年 1月 26日 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讨论通过. 最高人民法院印发《关于贯彻执行〈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若干问题的意见(试行)》的通知

10) 중화인민공화국형법수정안(7)의 공포 및 시행 2009년 2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형법수정안(7)이 중화인민공화국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10호를 통하여 공포되어 동일자로 시행되었다.

11) 중국의 개정 형법 제253조 1항

국가기관 또는 금융·통신·교통·교육·의료 등 단위(기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공민의 개인정보를 국가 규정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이나 구금, 벌금형에 처한다.

경우 처벌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sup>12)</sup> 형법 제 9차 개정 내용 중 주목되는 부분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거부 혐의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점인데, 동 조항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① 불법 정보가 대량으로 확산되거나 ②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되어 중대한 사고를 초래하였거나 ③ 범죄 증거가 훼손되었거나 ④ 그 외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유기 징역, 구금에 처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sup>13)</sup>

형법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은 개인정보의 누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민간단체뿐 아니라 공적 기관 등의 직원도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앞서 본 형법 조항들은 중국 정부가 개인정보와 관련해 처음으로 형사 처벌규정을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형법에 신설한 개인정보 보호조항들이 조문 자체가 매우 간단하고 법 적용 대상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아우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sup>14)</sup> 나아가 형법상 규정은 개인정보 침해를 형벌로써 규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12) 中华人民共和国刑法修正案(九)제17조

13) 中华人民共和国刑法修正案(九) 제28조

14) 예컨대, 중국정부가 형법 제7차 개정을 통해서 신설한 제253조 1항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국가기관 또는 금융·통신·교통·교육·의료 등 단위(기관·기업)에 한정된다.

#### 4) 행정법

중국 정부는 1993년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후 20년만에 처음으로 대폭 개정하였고, 2013년 10월 2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안을 심의가결하였다.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은 2014년 3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sup>15)</sup> 소비자권익보호법에 신설한 개인정보 보호조항들은 법률단계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도모한 첫 시도이며, 개인정보 사용의 규범화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 정부가 소비자권익보호법에 개인정보 보호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사업자들이 불법적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 2013년 10월 2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정 20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자권익보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출처 : CCTV, 2013. 10. 25. “中国近20年来首次修改消费者权益保护法”, <http://yueyu.cntv.cn/2013/10/25/ARTI1382687031114966.shtml>)

15)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2013 修正) (主席令第七号)

소비자권익보호법은 ①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 ② 사업자는 법 규정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사용해야 한다는 점, ③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엄격한 비밀유지를 해야 한다는 점, ④ 사업자는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상업적 전자정보를 송부해야 한다는 점, ⑤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한 경우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등을 명확히 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도입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법률에 근거해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개정 소비자보호법 제29조 1항은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합법·정당·필요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② 소비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의 목적, 방법 및 범위를 명시해야 하며, ③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할 때에는 소비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④ 수집한 자료의 사용에 관한 규칙을 공표할 의무가 있으며, ⑤ 법률, 법규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규정에 위반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할 경우 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제29조 2항). 구체적으로 ① 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수집한 소비자의 개인정보의 비밀을 엄격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판매 또는 제3자에게 불법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사업자는 개인정보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 누설이나 분실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된 경우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개정법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 전자 정보를 송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제29조 3항). 사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나 청구가 없는 경우, 또는 소비자가 분명히 거절을 표시한 경우에는 상업적인 정보를 송부해서는 안 된다.

넷째,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제50조). 사업자가 소비자의 인격적 존엄을 침해하거나 소비자의 인신적 자유 또는 법적보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그 침해를 중지한 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

다섯째,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조항이 신설되었다(제56조 9항). 개인정보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위법소득의 1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위법소득이 없는 경우는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나 사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등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소비자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은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행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중 가장 실용성 높은 법률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관련 기업들은 소비자정보의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적법성심사를 강화하고, 이메일 등 상업적 전자정보를 송부를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 통신 및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012년 12월 28일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공표한 '인터넷 정보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에 근거해 총 6장 25

개 조문으로 구성된 전신 및 인터넷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규정(이하 '보호규정')을 제정하였다. 동 규정은 2013년 7월 16일 공표되어 같은 해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위 보호규정은 중국에서 전신업무경영자 및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전신 서비스 및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호규정은 통신 및 인터넷 사용자가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규정에서 보호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란, 전신업무 경영자 및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사용자의 이름, 출생년도, 신분증명서 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정 이름, 패스워드 등 단독 또는 기타 정보와 결합하여 사용자의 정보 및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시간, 장소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제8조).

보호규정은 전신업무경영자 및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 기업이 서비스 제공 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기업은 사용자 개인정보의 수집·사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공표하여야 하며(제9조 제1항), ② 기업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9조 제2항), ③ 기업은 사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하는 목적, 방법, 범위,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사용자가 정보제공을 거부했을 경우 발생하는 결과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도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제9조 3항), ④ 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

이외에 필요 이상으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되며, ⑤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종료한 즉시 기업은 사용자의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을 중지해야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제9조 제4항). ⑥ 사용자의 민원신청 처리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유효한 연락방법을 공시하여야 한다(제10조).


아울러 전신업무경영자 및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 등이 동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도 두고 있다. 전신기구관리는 위반행위의 개선명령,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1만 위안 이하 또는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위반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 나가며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각종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독특한 입법방식에 있다.

예컨대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민법통칙, 상속법, 계약법, 물권법, 권리침해 책임법 등 개별 법률을 제정하였지만, 아직까지 통합된 민

법전은 제정되지 않았다. 그 원인으로는 충분한 자료조사와 연구를 거듭한 후에야 최종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중국 정부의 입법방식이 꼽힌다. 중국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만큼이나 발생 가능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포괄적으로 고려한다. 즉, 관련 개별 법률을 우선 정비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검증 과정을 거친 후 본격적인 입법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입법방식을 고려할 때 중국 내 포괄적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기존 개별 법률의 개정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스마트기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언론보도를 접할 수 있는 요즘  
만약 언론보도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센터 개설로 이제 서울뿐 아니라 부산, 광주에서도  
내방교육이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 언론통재 아카데미

- 대상 언론사, 대학, 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 시간 2시간(1~3시간 내 조정가능)
- 장소 위원회 또는 교육 요청기관의 강의실
- 내용 언론분쟁 해결방안, 언론조정 중재절차 및 사례 등
- 신청 조정중재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s://edu.pac.or.kr>
- 문의 교육운영팀 02) 397-3092~5

